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1993. 10.

諸 成 鎬 (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북한은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 선포의 후속조치로써 1992년 10월~1993년 1월간 「외국인투자법」 등 6개 외자유치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령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엔개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法令整備過程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 간 신뢰조성 미비와 한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북한의 보호에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本研究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대북투자 본격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內容과 問題點을 고찰하고 북한법령의 개선방향 및 對北投資 保護方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북투자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인바, 남북한 당사자간 투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아울러 검토·제시하기로 한다.

第 II 章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分析

1. 法令分析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으로서는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基本으로 하여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8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합영법시행세칙,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세칙 등 3개의 細則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이로써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合營法 등 既制定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신설된 법령을 포함,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투자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基本法 내지 一般法의 성격을 갖는다. 합영법과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下位法이라 할 수 있다.

2. 主要内容 및 문제점

가. 外國人投資法

첫째,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細部的인 基準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둘째, 投資財産의 評價時 現물재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셋째,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賃貸받은 土地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相續이라는 개념이 분명치 않다. 또한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해당기관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넷째, 근로자의 고용이나 해고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外國人投資法은 원칙적으로 國有化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國有化를 허용하고 있는 바, 그 判斷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 해당한 보상이란 용어도 막연한 개념이다.

여섯째,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외국투자기업의 産業財産權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차 이러한 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 合作法

첫째, 북한식 合作의 概念에 의하면 외국투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북한측이 경영 전담)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의 합작기업의 경

우 중국에 비해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둘째, 合作法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배분이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물자구입 및 판매 등 자유로운 物資調達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셋째, 합작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경영활동에 관한 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원칙적으로 合作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측이 그 販賣에 따른 危險을 부담해야 한다.

넷째, 합작법 제14조는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쓸 수 있다’(may)는 任意規定의 形式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을 가능케 한다. 또한 使用의 主體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다섯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당국의 干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나, 每月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는 非常設的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외국투자가가 經營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合作法은 북한당국의 承認下에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일곱째, 合作企業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첫째, '북한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주체가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인지 불확실하다. 또한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 존중원칙」과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방침관철 규정」은 체제개방 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삽입된 것인데,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解釋權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違反與否의 判斷權이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恣意的 解釋·適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주로 북한이 출자하는 토지·건물 등 出資目的物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보장에 있어서도 出資持分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債權的 水準의 보호에 그치고 있다.

셋째,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매우 경직적이다.

넷째, 종업원의 고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 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노동조합과 북한 직업동맹과의 관

계 등 관련 규정에 欠缺이 있다. 또한 합영회사 해산시 투자 회수분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外國人企業法

첫째, 外國人企業法은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概念 및 判斷基準이 모호하다.

둘째, 기업창설에 필요한 문서인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심의·비준에 필요한 문건’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셋째, 外國人企業은 기업을 등록한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도 北韓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법은 “외국인기업은 ...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의 後續措置로서 會計關聯 法制의 보완·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법의 경우에도 고용의 경직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職業同盟組織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외국인기업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여, 외국투자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일곱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개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行爲主體가 모호하다. 또한 '인민경제 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므로 북한당국이 언제라도 이와 같은 不確定概念을 악용하여 恣意的으로 외국인기업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도 북한의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만 인력을 채용·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勞務管理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앞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장래를 내다볼 때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 조선「원」화만을 유통화폐로 하는 한편, 모든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 화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이다.

넷째,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合意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

여 市場形成의 可能性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 기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사는 확실하지 않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對外經濟開放의 창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中國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價格自由化, 즉 자원배분을 시장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바. 紛爭解決關聯 法令 및 制度

첫째,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基本法인 外國人投資法에 는 분쟁발생시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合作法에는 '북한내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3국에서의 해결을 배제하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재판기관에서 북한 법에 따라 투자분쟁을 심리·해결할 경우 制度的으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북한이 그들의 재판 기관에서 분쟁해결을 강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第Ⅲ章 對北投資의 類型 및 保護方案

1. 投資의 類型 및 推進方向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형태는 북한측 투자가와 우리가 공동 투자·공동경영·공동분배하는 合營, 북한측 투자가와 우리가 공동투자·단독경영·공동분배하는 合作, 우리가 전액(100%) 투자하는 單獨投資의 3가지로 대별된다.

북한은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민족적 동질감, 지리적 인접성 등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투자환경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의 대북투자는 상호 신뢰회복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相互尊重·互惠平等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체제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북투자원칙과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규모 및 회임기간, 투자위험, 투자지역의 사회간접시설 및 투자유인제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2. 投資時 考慮事項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제조업, 건설용역, 자원의 개발 등 가능한 대북투자 사업중 목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經濟的 妥當性 외에도 投資의 安定性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非事業的 投資危險이 여타지역의 해외투자보다 크기 때문

에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스스로 투자보호를 위한 自衛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먼저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중 어떠한 進出形態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진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投資規模와 資金調達方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진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投資對象地域 및 投資種目を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투자대상지역 및 투자종목 선정시 국유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投資對象地域을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 무역지대, 아니면 기타 일반지역으로 할 것인가는 투자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넷째, 合作先의 선택에 따라 진출국의 국유화 억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미 조총련이나 제3국 기업과 합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합영 또는 합작계약서의 체결시 북한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承認을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고, 북한내에서 쉽게 물자구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들이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시 합작선으로 적합할 것이다.

다섯째, 대북투자시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販路도 대북투자 보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업은 먼저 經濟的 妥當性이 있는 사업

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진출형태와 진출지역을 검토하고 난 후에 비로소 북한에 투자하여야 不測의 投資損失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法的 保護方案

가. 南北間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保護方案: 企業次元

(1) 一般的인 合作投資의 경우

남북한 기업간에 합작투자를 할 경우, 合作投資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 또는 북한기업과 체결할 合作投資契約에 명시될 것이다. 특히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기 전 示範事業次元에서 대북투자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계약 이외에 다른 보호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안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합작·합영에 의한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紛爭의 豫防과 會社의 權益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주로 합영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방안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합작투자계약의 해석·적용시 남북한 言語의 異質化와 法制의 差異로 인하여 용어사용상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남북한 기업간에 체결되는 합작투자계약에는 각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기업간 합작투자계약에서 說明條項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회사의 사업내용'을 명기하는 조항에서 會社設立目的에 관해서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은 理事會의 構成과 權限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합영회사를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합영의 경우 우리측 계약당사자가 회사경영에의 참가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합영계약서 및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合營會社規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重要事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합영법 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이사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기금을 포함한 重要事項에 관한 규정을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합영법과 동 시행세칙은 북한내에서 상품의 販賣 및 輸出 比率에 대한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합작투자계약에서 이 문제에 관해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분쟁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여섯째, 북한이 國家計劃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합영회사가 필요한 물자를 적기에 공급받기 위해서는 합작투자계약에서 북한측 당사자가 物資確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特惠價格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대북투자에 의해 설립된 합영회사는 原料購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관계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 대한 持分讓渡에 관한 규정을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북한이 불가항력사유를 내세워 의무이행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바, 북한진출기업들은 不可抗力事由를 총망라해 열거함으로써 분쟁발생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열째, 분쟁해결과 관련, 남북한 기업간 投資契約에서 제3국에서의 중재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북한당국으로부터 제3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또는 기타 남북한이 합의·설치하는 쌍방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共同機構에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한째, 제3국에서의 중재시 적용될 準據法을 반드시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열두째, 勞務管理는 합영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인 바, 북한의 노동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측 당사자의 의무를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병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다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合作의 결과 발생한 이윤의 분배나 상환은 생산제품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상 외국투자자측이 販賣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바, 외국투자자측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合作계약을 체결해야 不測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合作법은 “合作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合作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이 성립할 수 있는 바, 북한이 合作생산후 損害發生 또는 豫備基金 積立 등의 이유로 먼저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任意規定이 아니라 ‘먼저 써야 한다’는 義務規定으로 개정하도록 북한측에게 요구하는 한편, 투자계약에 그러한 취지를 명기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우리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할 경우 기업등록을 행한 함경북도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도 北韓保險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 또는 별도의 국제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기업의 投資損失 填補를 위하여 合作투자계약에서 보험회사에 의한 투자손실에 대한 代位辨濟時 동회사의 求

償代位權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2) 資源開發 등 大規模 合作프로젝트인 경우: 讓許契約
締結

남북한간 협력사업이 북한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남포공단
단의 합작건설, 금강산 공동개발과 같이 대규모 합작프로젝트
인 경우, 이를 위한 계약은 소위 國家契約 또는 國際讓許契約
의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다.

국제양허계약의 많은 내용은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와 동일하나, 당사자를 포함하여 통상의 合作投資契約과는 다
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와 같은 특수성에 유의하면서 남북한
간에 國際讓許契約에 해당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투자의 상대방이 북한기업이 아니고 북한당국이
므로 당해 계약에 收用이나 國有化 危險으로부터의 保護, 補
償水準 등에 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투자보장협정 체
결에 상당하는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양허계약의 경우 특히 準據法과 紛爭解決은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통상의 합작투자계약과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자원의 탐사·개발에 따른 분쟁을 자국법원
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국가도 없지는 않으나, 현실
적으로 대다수의 국제양허계약은 國際仲裁와 國內法院에 의한
해결을 병렬적으로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國內法院에 의한 해결의 경우 당해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로서는 준거법의 선택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외국투자가에게도 準據法의 선택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1965년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ICSID협약)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준거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토록 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국내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CSID)에 의한 중재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일 우리 기업 및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을 제3국이나 ICSID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 할 경우, 종국적으로 外國仲裁判定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과 양허계약을 체결할 경우 북한이 主權免除 援用을 拋棄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당국과 우리 기업간에 체결될 讓許契約의 원목 또는 광물자원 개발권에 관한 조항에는 당사자가 탐사·채취될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내용 및 성격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財務規定에는 조광료, 사업소득세, 광구임차료, 보너스 등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되, 經濟開發과 福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北韓法令의 改善要請方案: 政府次元

북한의 투자보호를 위한 법적 투자환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는 대북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안으로서 북한의 관련법령을 改善해 주도록 북한측에 설득·요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투자할 경우 대북투자보호를 위한 북한의 關聯法令 改善要請方向中 중요한 것들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外國人投資法에서도 과거 합영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서는 ① 투자기업의 출자금액 減額不可, ② 이사회 의사정족수 불분명, ③ 의사결정방식의 엄격성, ④ 직원의 채용 및 해고시 북한 노동행정기관의 許可 必要, ⑤ 회사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登錄資本金의 최소·최대금액 및 출자비율의 상·하한선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 ⑥ 등록자본금이 납입된 자금인지 또는 계약상의 금액인지 여부의 不分明, ⑦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국인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⑧ 합영회사에 대한 외화대출 기간, 한도 및 대출절차 不規定, ⑨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과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 決定基準의 不分明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설된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에서도 ①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방침 및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 존중 등 자의적 해석·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 존재, ②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기술도입 관련 법령 不在 및 企業

破産에 관한 法令(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조)의 未制定, ③ 勞務管理의 경직성, ④ 거래의 경직성 및 제한성, ⑤ 분쟁 해결방법의 제한성, ⑥ 外國人投資關聯 財政簿記計算規範 또는 會計規程(외국인기업법 제19조 및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3조 참조) 미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제도의 불명확, ⑦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法制度 補完을 요구하거나 또는 한국기업에만 적용되는 特例法 制定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에 유의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對處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 投資保障協定 締結方案：政府次元

南北投資保障協定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입각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이나 독일 등 여타의 분단국과는 달리 남북투자 보장협정 체결방안이 法的 安定性和 豫測可能性을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투자보호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에 국가승인의 효과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협정체결시 用語使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남북한간에 체결되는 제협정에는 南北韓間 特殊關係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 國際的 有關先例中 남북한의 경우에 적용가능한 부분을 원용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1) 用語定義 및 協定の 適用範圍

첫째, 대북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定義條項에는 투자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投資對象에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資產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특히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時間的 適用範圍와 관련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발효전 사전투자예의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나, 투자보장협정 체결전에 남포공단 건설 등 시범적으로 協力事業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한국인의 사전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事前投資가 이루어질 경우 협정의 遡及適用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셋째, 場所的 適用範圍와 관련하여 국가영토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용어인 「領域」이라는 표현사용을 피해야 한다.

넷째, 남북투자보장협정의 경우 국가간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쌍방의 투자자를 國民으로 표기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住民으로 표기하는 것이 南北韓間 特殊關係 精神에 부합한다.

(2) 投資의 許容·增進·保護 및 待遇

대북투자 보호를 위한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남북한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촉진하며, 투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 不當하고 差別的인 措置로 인해 受害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投資 및 投資關聯 活動에 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장, 타방측 투자가, 타방측 투자기업 및 합작회사의 영업활동 보장, 타방측 투자가, 타방측 투자기업 및 합작회사의 財產權 保障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에 따른 모든 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최혜국대우형 또는 내국민대우형의 대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최혜국대우 개념의 원용가능성을 포함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서 상호간의 투자에 대하여 最惠國待遇型 또는 內國民待遇型의 대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간 투자가 民族內部的 投資임을 감안 국민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住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타방측 투자자에 대하여 가급적 內國民待遇型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國家契約에 대한 雨傘條項

대북투자시 북한은 소위 國家契約, 특히 國際讓許契約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대두된다. 북한은

국가계약을 國內契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에 雨傘條項을 삽입하거나 또는 국제양허계약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산조항은 첫째, 기존의 국가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外國人 投資 待遇를 지속적으로 보호함을 확인하는 한편, 둘째, 기존의 국가계약이나 국내법상의 보호수준이 투자보장협정의 보호 수준보다 높을 경우 전자가 후자에 의해 대체되지 않음을 분명히하는 效果를 갖는다.

(4) 收用·國有化 制限 및 補償 條項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당국의 一方的 立法 또는 政策變更 등에 의해 우리측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政治的 危險性이 크기 때문에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그 보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대북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통상의 國有化 외에도 이른바 僞裝國有化에 대비해야 한다.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해서 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보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充分·迅速·有效한 補償의’ 原則과 相當한 補償原則이 대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이 수용 또는 국유화가 공공의 목적, 국가이익 등을 위하여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써 充分·迅速·有效한 補償이 지급되지 않

을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관행을 감안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도 國際市場價格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동시에 迅速性和 實效性에 입각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채택·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에는 不當한 遲延이 없어야 하고, 수용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補償 支給日까지 합리적인 이율(reasonable rate)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상액은 자유롭게 태환가능하고 송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投資元本 및 果實 送金

북한의 外貨管理法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 및 자본환수 등의 외화송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 협정에서는 果實送金에 대해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한편, 송금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求償代位

한국이 투자보장협정과 투자보증협정을 별개로 체결할 경우 북한측이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으며, 별개로 체결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후자의 핵심적 내용을 전자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投資危險 分散을 위해 투자자에게

일정한 투자보장조치를 행한 경우 당해 투자가가 갖는 권리를 包括的으로 代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準據法과 紛爭解決

분쟁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準據法 및 解決方式을 달리하는 최근의 國際慣行에 비추어 남북투자보장협정에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남북한의 일방당국과 타방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남북한 당국간의 분쟁을 구분하여 별도의 분쟁해결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의 경우 제3국 중재를 허용하는 규정이 南北投資保障協定에 명시되지 않으면, 북한당국으로부터 수용을 당하거나 달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투자가가 구제를 받는 방법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유념하여 반드시 제3국 중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8) 主權免除 拋棄條項

북한당국이 제3국 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이른바 主權免除를 주장함으로써 承認 및 執行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제3국에서의 중재(또한 장기적으로 ICSID에 의한 중재)가 실현되더라도 북한내 소재하는 財産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이 主權免除를 주장함으로써 外國(또는 ICSID) 仲裁判定을 집행하는 데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남북투자 보장협정에서는 북한이 주권면제 원용을 拋棄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政府代表共同委員會

남북한간의 경우에도 남북한간 투자촉진과 관련있는 문제를 협의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섭을 통해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투자 보장협정에서 별도의 위원회, 가령 남북한의 관계부처 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南北投資保護·促進委員會」(가칭)를 설치하거나 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0) 其他

이 외에도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가령 외국인 직원의 고용보장, 거주 및 상업활동의 보장, 他方投資家의 입국과 체류 및 출국 보장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 타방측 투자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규 등은 투자보장협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규정, 또한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政府政策이나 關係法令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通知하도록 하는 규정의 삽입도 필요하다.

라. 投資保險 및 保證制度에 의한 保護方案: 政府 및 企業次元

한국은 대북투자와의 관련, 이에 대한 보험 및 보증에 관해서 특별히 綜合的인 投資保障計劃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북투자 등 남북한간 협력사업에 있어서 「南北交流協力法」 제26조 3항 4호에서 수출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북한진출시 우리 기업들은 수출보험법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관련보험에 가입, 收用危險과 送金危險을 付保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북투자 보호를 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특수지역이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위험이 큰 점을 감안할 때 韓國輸出保險公社가 보험가입 요건을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北投資를 행하는 우리기업이 직접 로히드보험회사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보험기관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의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短期的으로 이 방안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북투자에 따른 보험업무를 담당하게 될 韓國輸出保險公社가 로히드보험 등 국제적 보험기관에 再保險加入을 하는 방법 또는 多者間 投資保證機構(MIGA)에 의한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역시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현단계에서는 對北投資時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허용되는 손실보전의 방법에 의해서 투자위험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동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에 의해 수출입은행은 南北協力基金 支援業務의 일환으로 交易 및 協力事業(대북투자 포함)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대북투자에 따른 손실보조 외에도 소요자금을 金融機關으로부터 대출받아 남북한간 교역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남한주민을 위하여 支給保證을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진출 기업은 이와 같은 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일정한 지원 및 투자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國際的 保險機關 및 多者間 投資保證機構에 의한 대북투자 보호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정부가 南北協力基金을 북한진출 기업의 손실보조에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손실보조를 할 경우 무분별한 대북투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대북투자 위험을 政治的 危險과 事業的(經營上) 危險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조를 하되, 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第Ⅳ章 對北投資關聯 紛爭解決方案

1. 基本方向

첫째, 대북투자관련 분쟁은 社會主義國家와의 投資紛爭이라

는 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방법상의 특수성이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그 운영의 구조적 특징이나 법제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 과거 서방의 외국인투자가가 사회주의국가들의 현지 관할법원에서 투자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司法的 解決을 기피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북투자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당사자에 따른 類型別 解決節次와 方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남북한간에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측은 1차적으로 直接交渉에 의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되, 2차적으로 사안에 따라 實現可能性, 實效性, 波及效果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가장 적실성 있는 제3자적 해결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투자분쟁해결 기본방향이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문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投資紛爭解決指針을 제정하여 기업 등 우리측 투자자들의 투자분쟁해결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 등 투자자들은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투자분쟁의 실효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2. 細部推進方案：投資紛爭의 類型別 解決

가. 合作投資契約 當事者間의 紛爭

합작투자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라 함은 南北韓의 個人(자연인 및 법인)이 합영 또는 합작의 방법에 의하여 共同出資

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남북한의 투자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協議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분쟁 당사자는 이차적으로 調停·仲裁 및 裁判 등 제3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제3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북한의 재판제도에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보다 제3국에서의 仲裁나 臨時仲裁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측 투자가가 제3국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명문의 합의가 필요하다.

體制維持次元에서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북한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규정한 관련법령을 근거로 북한에서의 투자분쟁 해결을 희망하고 제3국에서의 해결을 명시한 합작투자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이 모든 계약당사자간 투자분쟁을 제3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것을 一括合意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南北投資保障協定에서는 남북한의 투자자에게 분쟁해결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즉 북한의 중재기관에서의 해결과 제3국에서의 해결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북한기업간에 체결되는
합작투자계약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에서의
投資紛爭 解決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북투자관련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仲
裁地는 동경, 홍콩, 북경 등인데,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측
면이나 仲裁判定部가 독자적으로 準據法을 결정할 경우 자국
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의식하여 동경이나 홍콩을 중재지로 선
정하는 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北京이 남북한간의
투자분쟁 중재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제3국 중재비용과 관련, 두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소규모 투자의 경우 제3국 중재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규모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투자액에
버금가는 仲裁費用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소규모 투자의 경우 제3국 중재를 이용할 경우 남북한간에
상호 신뢰구축 및 협조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小規模 對北投資로서 우리가 북한에서 피해를 받은 경
우, 가능한 한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중재에 회
부할 경우 被申請人主義에 따라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해결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제
3국 중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제3국이나 기타 國際商事仲裁에 회부하여 해결할 경우, 당
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문제가 제기된다. 아직까지 북한

은 1958년 「外國仲裁判定의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바,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법적 보장책으로서 북한의 동 협약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합작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합작투자계약 당사자는 法院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나. 韓國側 投資家(또는 企業)와 北韓當局間 紛爭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쟁의 一方當事者가 북한내에서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합영기업·합작기업 또는 한국인 단독투자기업의 한국측 투자가이고, 他方當事者는 북한당국인 경우이다. 둘째는 북한내의 회사설립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측 투자가 또는 기업이 북한당국과 직접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천연자원 또는 금강산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남북한간에 이러한 유형의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交渉이 제1차적인 해결방법이 된다. 교섭으로 대북투자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우리측 투자가 또는 기업은 調停 또는 仲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북한당국과 우리 기업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투자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의 경우와 같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북한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傘下 貿易仲裁委員會와 한국의 大韓商事仲裁院 등 관

계기간을 중재기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대규모 합작프로젝트에 관한 북한과의 讓許契約을 체결할 경우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해결을 위해 제3국의 貿易仲裁機關에서 해결하도록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ICSID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ICSID에 의한 투자분쟁 해결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仲裁同意的 條件으로 국내적 구제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國內的 救濟手段 이용이 배제되게 되고 ICSID에 의한 중재가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투자분쟁 해결방법이 된다.

다. 南北韓 政府當局間 紛爭

투자분쟁은 南北韓 政府當局間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주로 남북투자보장협정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은 당연히 투자보장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게 된다. 한편 당초 남북한 정부당국간 분쟁이 아닌 기타 유형의 投資紛爭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분쟁을 가능한 한 많이 정부차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雨傘條項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을 정부간 차원에서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투자의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조심스럽게 대처함이 필요하다.

第 V 章 結 論

투자환경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법제의 정비보다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채지불연기에 따른 최하위의 國際信用度 외에도 북한의 核問題 解決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방·개혁에 대한 기피 등의 자세는 여전히 대북투자 환경을 평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행하기에 앞서 투자위험을 줄이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경제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진출에 앞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한진출기업은 투자형태, 적정 투자규모 책정 및 자금의 다변화, 진출지역 및 투자종목, 합작선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經濟的 妥當性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비로소 대북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대북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투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法的 妥當性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에 앞서 北韓의 法制가 갖는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투자보호 차원에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合作投資契約 및 投資保障協定 체결, 투자보험 등 보증제도에 의한 法的 保護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分析	6
1. 法令體系	6
2. 主要內容	9
가. 外國人投資法	9
나. 合作法	11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12
라. 外國人企業法	16
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18
바. 紛爭解決關聯 法令 및 制度	23
3. 問題點	28
가. 外國人投資法	28
나. 合作法	31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34
라. 外國人企業法	36
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38
바. 紛爭解決關聯 法令 및 制度	40

第 III 章 對北投資의 類型 및 保護方案	42
1. 投資의 類型 및 推進方向	42
가. 類型	42
나. 推進方向	47
2. 投資時 考慮事項	49
가. 進出形態	49
나. 適正 投資規模 및 資金調達의 多邊化	52
다. 投資對象地域 및 投資種目	56
라. 合作先	61
마. 販路	62
3. 法的 保護方案	63
가. 南北間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保護方案: 企業次元	65
나. 北韓法令의 改善要請方案: 政府次元	92
다. 投資保障協定 締結方案: 政府次元	97
라. 投資保險 및 保證制度에 의한 保護方案: 政府 및 企業次元	136
第 IV 章 對北投資關聯 紛爭解決方案	148
1. 投資紛爭의 一般的 解決方法과 慣行	148
가. 投資紛爭 解決方法	148
나. 一般的 慣行	153
2. 投資紛爭 解決方向 및 推進方案	162
가. 基本方向	162

나. 細部推進方案：投資紛爭의 類型別 解決	166
第 V 章 結 論	179
1. 要約	179
2. 政府와 企業의 考慮事項.....	182
* 參考文獻	188

圖 表 目 次

〈表 1〉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 現況圖	8
〈表 2〉 對北 投資有望種目	60
〈表 3〉 北韓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96

第 I 章 序 論

최근 임금상승 및 경영환경 악화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ASEAN 등으로 진출하여 이들 지역을 國內斜陽産業의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국제시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언어 및 노무관리 등 많은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투자 성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진출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¹⁾

물론 경제발전수준, 내수시장 및 대외무역 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전반적으로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合營, 合作 등에 의한 對北 直接投資는 短期間內에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민족적 동질감, 지리적 인접성, 일본이나 대만기업과의 경쟁이 거의 없는 지역적 특성, 南北韓 企業人間 意思疏通의 원활 등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이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후보지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북투자를 위한 整地作業次元에서 북한의 IAEA 특별사찰 수용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의

1)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體制維持의 開放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경우 북한 지역을 동남아, 중국, 베트남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돌파구가 마련되면 경제인의 방북 등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분명히 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도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는 競爭力 弱化産業의 海外生産基地 확보차원에서 착실하게 북한진출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핵문제해결과 함께 南北經協이 이루어지면 對北投資가 소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²⁾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제28호로 나진·선봉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선포하였고 그 이후부터 외자유치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³⁾ 특히 韓國企業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에 대한 參與可能性이 높아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合作投資 論議가 남북한 기업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해안지역에서의 대북투자는 이미 妥當性 調査段階에 진입하고 있다. 즉 1992년 1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對北經協 調査團을 이끌고 북한의 남포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왔고, 동년 7월 19일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 약 1주일간 한국의 산업시설을 시찰하였으며, 김달현 부총리의 남한방문 이후 민간기업인 중심의 조사단이 한국정부의 승인하

2)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북한을 迂廻輸出基地化할 경우 북한의 對美·日 관계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3) 현재는 나진·선봉지역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어 있으나, 앞으로 해주, 남포, 신의주 등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9.

에 南浦地域에 대한 經濟的 妥當性 調査를 위하여 다시 방북한 것은 모두 대북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북투자는 남북한간에 단순한 論議段階를 넘어 일부 구체적인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유치를 위한 準備段階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낙후된 하부구조 시설, 실추된 대외신용도, 법령정비의 미비 등으로 북한의 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의 경우 북한의 投資環境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투자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대북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바, 기업들은 북한진출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⁴⁾

대북투자시 경제적 타당성 등 충분한 事前檢討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국내업체간 過當競爭을 피하여야 우리기업들이 대북투자에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북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한 法的 保護裝置 강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과거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저조

4) 현재 북한의 총 외자유치 건수인 110건중 약 90%가 조총련계 일본기업의 이른바 「朝朝經協」인데, 이것들은 實質的인 投資라 할 수 없는 것들로 그 成功事例도 2~3件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북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서울: 大韓貿易振興公社, 1993), pp. 135~137 참조; 「北韓投資實務」라는 책자는 북한의 경제운영방안, 북한의 투자유치제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위탁가공, 외국인기업의 투자현황 및 사례분석, 남북한 경제현황 및 우리의 진출방안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관련법령의 미비 등 法制度的 側面에서 의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자본 유치에 실패한 경험을 갖게 된 北韓은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여건조성 차원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의 후속조치로써 1992년 10월 5일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결정」으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등 3개 法을 제정하고 동년 10월 16일 합영법 시행세칙을 改正한 데 이어 다시 1993년 1월 31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3개 법령을 채택하는 등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法令整備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法制的인 次元에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정비과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⁵⁾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관련 법령들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투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북한법령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5) 북한이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은 유엔開發計劃(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과도 관련이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에 관해서는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참조.

또한 北韓法令에 의한 대북투자 보호가 불완전할 경우 대북투자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완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대북투자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 등 주요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內容과 問題點을 고찰하고 북한법령의 개선요청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시 기업 스스로 또는 정부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保護方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연구에서는 對北投資 保護方案을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企業次元의 保護方案, 政府次元의 保護方案으로서 투자보장협정 체결방안, 投資保險 및 保證制度에 의한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남북한 당사자간 투자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검토·제시하기로 한다.

第Ⅱ章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分析

1. 法令體系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으로는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基本法으로 하여 합영법(1984. 9. 8),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1985. 3. 7),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그리고 1993년 1월 31일에 새로이 제정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8개 법이 있다. 여기에 시행세칙으로는 합영법시행세칙(1985. 3. 20 제정, 1992. 10. 16 개정)과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세칙(1985. 5. 17) 등 3개의 細則이 있다. 이로써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은 합영법 등 既制定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신설된 법령을 포함, 모두 12개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外國人投資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基本法 내지 一般法의 성격을 갖는다. 合營法(1984년 제정)과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下位法이라 할 수 있다.¹⁾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

1) 북한이 합영이라는 합작투자의 일형태를 특별히 규율하는 법령을 먼저 제정하고, 후에 외국인투자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異例의 일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1984년 당시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 해소책으로 우선 외국기업과의 合營을 추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 외자유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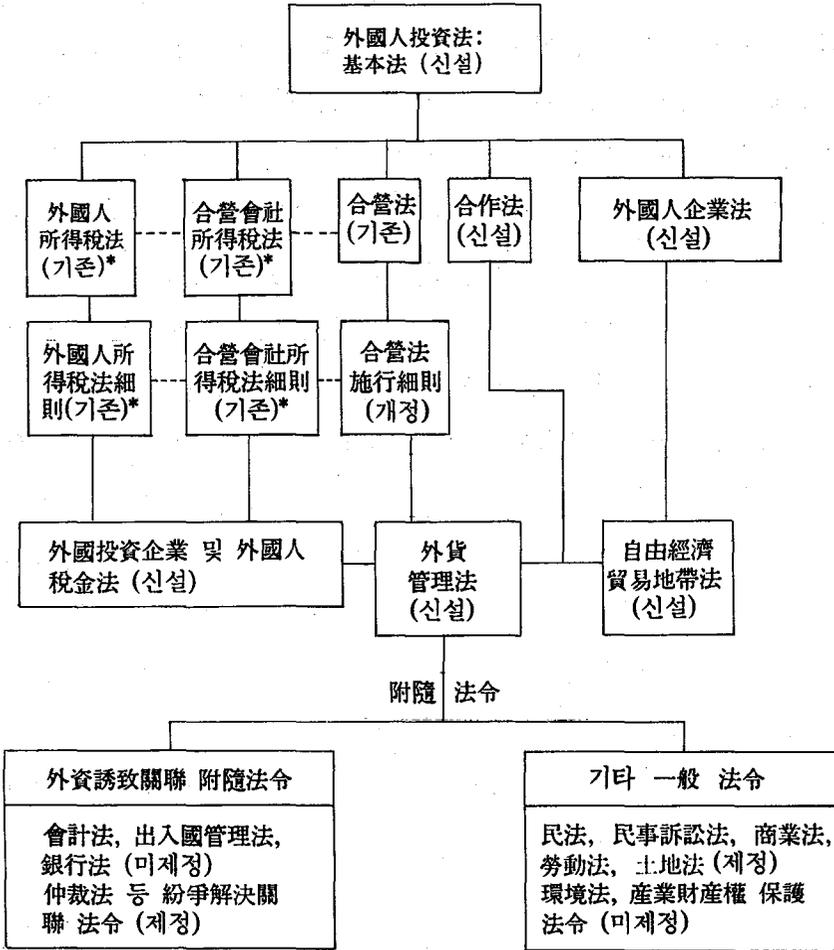
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이 新法으로서 優先的으로 적용되는 효과를 갖는다.²⁾ 한편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소득세법은 稅制關聯 法令을 통합한 것으로서 기존의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동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세칙과 모순 충돌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기존 법령들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의해 事實上 廢止된 것으로 판단된다³⁾

이상과 같이 북한이 외자유치에 필요한 법령을 추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일단 外形上으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法制度的 基盤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만으로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앞으로도 최근 신설된 6개 법들의 後續措置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은 물론, 세관법, 보험법, 회사법, 상표법, 산업재산권 보호법령, 토지임대차법, 회계법, 은행법, 환경법, 관광법 등 관련법령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 現況을 도표화해 보면 <表 1>과 같다.

-
- 2) 統一院,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 評價,” 「統一速報」, 92-11 (1992. 12. 28), p. 5;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 6), p. 6;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p. 3.
- 3)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 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3. 4. 28), p. 13; 다만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所得稅法에는 기존법령의 존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존속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다.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 제85조에서 “합영회사는 결산기마다 순소득에 대하여 조선 합영회사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3호 (1993. 3), p. 8.

〈表 1〉 北韓의 外資誘致關聯 法令 現況圖



範例: *표시된 법령은 사실상 폐지된 것임.

이하에서는 본연구의 目的을 감안하여 外國人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外國人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 外國人기업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투자분쟁해결관련 법령만을 살펴보기로 한다.⁴⁾

4)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稅金法과 外貨管理法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諸成鎬,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分析 및 評價,” 『統一研究論叢』, 제2권 제1호 (1993), pp. 222~233 참조.

2. 主要内容

가. 外國人投資法

外國投資企業이라 함은 공화국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제2조 3문). 외국인투자기업의 投資對象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이며(제6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히 장려된다(제7조). 이 장려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所得稅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減免,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 제공 등 優待措置가 인정된다(제8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特惠라 함은 특별히 정한 품목을 제외한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면제,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를 인하(여타 지역의 경우 25%) 등을 말한다(제9조). 이 외에도 북한은 “동 지대내에서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투자자에 대한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出入國節次의 簡素化를 예정하고 있다(제10조).

외국투자가는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의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치는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當事者間 合意에 의해 평가한다(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게 필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임대될 수 있다(제15조 1문). 합영법에서는 토지형태로 출자할 수 있고 合營會社가 국제가격지정기관에서 정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합영법 제21조 2문), 이 법에서는 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讓渡 또는 相續을 인정하고 있다(제15조 2문). 이처럼 土地賃借의 期間을 「50년까지로」 보장한 것은 중국의 천진공단, 러시아의 나호트카 경제특구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北韓人의 僱傭 및 解雇는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國有化 또는 收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補償을 한다(제19조).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북한의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국외로 送金할 수 있다(제20조).

나. 合作法

合作⁵⁾의 對象은 수출품 생산 및 선진기술이 도입된 공업부문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서비스)부문도 가능하다(제3조). 북한은 특히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協議하고 외국투자가와 合作契約을 締結한 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合作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제6조 1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부결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제7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제8조 1문).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合意下에 제3국의 기술자 채용도 가능하다(제11조). 또한 국가의 승인하에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및 생산제품의 수출도 가능하다(제12조).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13조). 이것은 북한에 합작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가 합작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

5) 北韓의 合作 및 合營과 一般的인 合作投資 概念에 관해서는 제Ⅲ장 1의 가항 참조.

야 함을 의미한다. 생산된 제품과 매상수입은 合作契約에 따라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4조). 외국투자가는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을 북한 의화관리 법규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15조).

합작당사자들은 非常設的인 共同協議機構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제16조).

합작기업은 월별·분기별·연별로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 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銀行機關의 監督을 받는다(제17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稅金을 납부해야 한다(제18조).

합작은 合作期間이 滿了하면 終了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 만료 또는 기한전 해산의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 취소수속(절차)을 밟아야 한다. 합작을 계속하려 할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20조).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합영당사자는 原則的으로 북한의 기관·회사·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북한의 國家社會制度와 自主權을 尊重하는' 다른 나

라의 회사·기업소·개인 및 경제조직으로 제한되나(법 제1조 2문, 시행세칙 제2조),⁶⁾ 例外的으로 재일동포 상공인을 포함한 ‘海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도 합영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 제5조, 시행세칙 제11조). 합영대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 등 여러 분야이다(법 제2조, 시행세칙 제3조).⁷⁾

합영회사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에 제출, 동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북한측 합영당사자가 외국측 합영당사자와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 合營工業總局(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6조, 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참조). 합작기업은 신청 접수후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데 비해, 合營工業總局은 합영회사 조직승인신청서 접수후 1달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시행세칙 제16조). 승인기간은 기존의 합영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합영세칙에서 개정·보완된 것이다.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액과 지분은 當事者間 合意에 의한다(법 제7조 1문, 시행세칙 제26조). 합영당사자는 出資目的物로서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6) 한편 개정 합영법 시행세칙 제1조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서기가 다른 나라들과의 합영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방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열거는 網羅的 列擧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령 서비스업과 같이 이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합영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법 제7조 2문, 시행세칙 제27조 1문). 합영회사는 有限責任會社와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의 同意를 받아 出資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법 제8조, 시행세칙 제8조 및 제38조 1문 참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법 제9조, 시행세칙 제37조).⁸⁾

합영회사는 최고의결기관으로 理事會를 두며(법 제10조, 시행세칙 제39조 1문), 議決方式은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합영회사 사장·부사장·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시행세칙 제44조).⁹⁾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산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북한산의 기관, 기업소는 합영회사의 물자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시행세칙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 참조).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秘訣 및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입할 수 없는

8) 자본의 減資制限과 관련, 북한의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 登錄資本의 減資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식 합영의 경우 減資가 불가능하나 외자기업의 경우 減資가 가능하다.

9) 북한의 합영은 資本主義의 合作投資와 유사하나,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合議的 意思決定 내지 共同意思決定方式(중요사항의 경우 만장일치, 기타사항의 경우 2/3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投資比率에 따라 經營權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資本主義式 合作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자는 수입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51조 및 제52조 참조).¹⁰⁾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 몫으로 반입하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경우, 반입승인만 받으면 되고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때 반입한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59조). 생산된 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산 물자의 購入이나 생산품의 북한내 판매는 해당 무역기관 또는 다른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며, 가격은 國際市場價格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법 제14조 1문, 시행세칙 제50조 및 제55조 참조). 합영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시행세칙 제63조).

합영회사 종업원의 僱傭 및 解雇는 북한의 法과 합영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행하며(법 제16조), 실무적으로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한다(시행세칙 제64조 1문).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 노동법규에 따라 실시된다(시행세칙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해당 법규범과 규정에 따르는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혜택을 받는다(시행세칙 제70조). 합영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은 노동보수의 1%를 각각 社會保險料로 납입하여야 한다(시행세칙 제71조).

10) 資材購入과 관련하여 국내구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북한 합영법의 규정은, “합영회사가 국내조달과 해외조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 조건이면 국내구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제57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합영회사는 북한 貿易銀行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外貨計座와 「원」화計座를 개설하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은 외화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13조, 시행세칙 제74조). 經營計算은 북한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外貨로도 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78조 1문). 합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이익배당금의 송금을 보장하되(법 제22조, 시행세칙 제79조 1문 참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액의 필요한 부분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80조).

결산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시행세칙 제82조 1문). 決算은 연간 總收入에서 원가보상, 소득세,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자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하며(법 제18조, 시행세칙 제83조~제88조 참조), 합영회사는 豫備基金이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중 5%씩 적립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시행세칙 제87조).

라. 外國人企業法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제2조), 북한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이를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조). 투자대상분야는 전자, 자동차, 기계제작, 식료품가공, 피복가공 및 일용품 등 부문

의 공업과 운수, 봉사(서비스) 등이다. 다만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낙후한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제3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法的으로 保護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6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업 創設申請書 接受日로부터 80일내에 承認 또는 否決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기업 창설 승인후 3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등록하고, 그 후 2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제9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내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2문).

外國人企業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의 수출 및 북한내 판매가 가능하다(제16조). 북한의 원료·자재·설비의 구입이나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는 북한 무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17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勞動機關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북한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의 채용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가 요구된다(제20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織을 결성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21조 1문 및 3문).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을 再投資할 수 있고, 관계법규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도 있다(제22조).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경우 北韓의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제23조),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제24조). 외국인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시 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5조).

외국인투자가는 공화국의 法과 規定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5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은 외국인기업법을 위반할 경우 그 情狀에 따라 기업을 中止 또는 解散시키거나 罰金을 부과할 수 있다(제29조). 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할 경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신고해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재산은 清算手續이 종료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제30조).

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제1조 참조)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동 지대내에

서 경제·무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1991년 12월 선포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하여 앞으로 지정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基本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관세, 통화금융, 담보 및 특혜, 분쟁해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우대조치 외에도 동 지대내에서의 投資節次의 分權化 및 簡素化, 가격결정의 자율권 인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시장의 허용 등을 통해서 동 지대를 대외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서비스) 지역으로 선포된 북한의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 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北韓의 主權이 행사되며, 이 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는 국가가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2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管理機關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다.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 地帶當局은 현지집행기관이다(제8조).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

과 관련한 執行對策 수립, 경제관리·운영사업 지도,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 및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기타 투자대상에 대한 審議·承認 등을 담당한다(제9조).

이에 비해 地帶當局은 행정경제부서와 외국투자관련 대외경제부서로 구성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집행한다(제11조). 地帶當局은 구체적으로 주민행정, 도시경영 등 행정경제사업 실시,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 보호, 지대의 개발계획 작성·선전·집행, 투자신청 접수,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 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투자대상의 심의·승인, 기업 등록 및 영업허가, 투자가의 인력채용 지원, 토지 및 건물 임대 또는 양도, 직·간접의 봉사 제공, 지대내 투자와 개발 촉진 및 관리운영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12조).

이처럼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을 위한 기관을 中央의 對外經濟委員會와 現地 行政經濟部署인 地帶當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외개방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對外經濟委員會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貿易部와의 업무분담이 불분명했던 對外經濟委員會가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제18조).¹¹⁾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모든 외국투자기업(합영-합작-단독투자 불문)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企業創設과 經濟活動이 보장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하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제20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품의 지대내 반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된다(제17조 1문).

貿易船과 船員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대안의 무역항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대내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無査證制度를 시행한다(제41조).

외국투자기업이 원료·자재 및 부분품의 가공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있는 북한기업소에 위탁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수행한 加工額이 기업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제24조).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合意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일부 大衆必需品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제22조). 이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市場經濟原理의 부분적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경제체제에 적지 않

11) 이 조항은 外國人投資法에서 외국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단독으로 투자,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 파급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의식하여 동조 후단에서 국가가 대중필수품 가격을 통제토록 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特惠關稅制度가 실시된다(제25조). 가공수출목적으로 지대내로 수입한 상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지대내에서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타국의 통과무역화물 등에 대해서는 關稅를 免除한다(제26조). 단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상품을 팔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關稅가 免除되지 않는다(제2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外貨有價證券을 거래할 수 있다(제34조). 지대내의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非居住者들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33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이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등 소득의 國外送金과 지대내 반입되었던 財産의 搬出이 경영기간 종료후에는 허용된다(제3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企業所得稅率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제36조).¹²⁾

12)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 2항을 再確認한 것이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받으며, 임대시 賃貸料 引下 등 편의를 제공받는 한편(제 38조 참조), 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제39조).

바. 紛爭解決關聯 法令 및 制度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발생시 紛爭解決을 위한 북한의 관련법령으로는 ①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쟁해결조항, ② 민사소송법,¹³⁾ ③ 중재법, ④ 중재재판규정 등이 있다. 仲裁法과 仲裁裁判規程은 아직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분쟁해결조항과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外國人投資法은 “意見相異 발생시 1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분쟁사건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 합의에 따라 제3국 仲裁機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合作과 관련된 “意見相異 發生時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紛爭事件은 북한의

13) 紛爭解決關聯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民事訴訟法은 1978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제정되었다. 동법의 자세한 내용분석은 北韓研究所, 「北韓의 民事訴訟法 概要」(서울: 北韓研究所, 1992) 참조.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합작법 제21조).

이에 비해 승철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의견상이는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해결하며(합영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98조),¹⁴⁾ 재판은 북한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른다(동 시행세칙 제100조)고 하고 있고, 합영당사자는 협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합영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102조).

外國人企業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북한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외국인기업법 제31조).

한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2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분쟁사건은 북한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동법 제43조).

위에서 보듯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의 紛爭解決條項에서는 仲裁機關을 언급하고 있는 바, 북한에서의 분쟁해결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仲裁法의 분석이 요구된다.

14) 舊 合營法 施行細則은 貿易仲裁機關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개정 시행세칙에서는 단순히 仲裁機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북한의 仲裁制度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에서 仲裁란 '사회주의국가의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그 밖의 계산상의 분쟁을 심의하여 해결하는 해당기관의 활동'을 말한다.¹⁵⁾ '사회주의하에서의 중재기관은 기관·기업소·단체들사이에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경제활동을 검열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의 준수를 통제하는 특수한 사법기관'이다. 이 仲裁機關은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율과 준수에 대한 통제를 고유한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¹⁶⁾ 특별히 중재를 위하여 북한의 中央裁判所에는 仲裁部를 두어서 裁決員 수명이 중재재판을 담당하며, 道裁判所에도 중재부에 1명의 재결원을 두고 있다.¹⁷⁾

북한의 중재기관이 수행하는 법적 통제활동에는 仲裁와 檢閱의 2가지 형식이 있다.¹⁸⁾ 중재는 중재기관의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경제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15)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 사전」(평양: 과학백과 사전출판사, 1981), p. 1884; 일찍이 김일성은 仲裁活動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金日成·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東京: チュチュエ思想國際研究所, 1985), p. 79.

16)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436~438.

17)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45~1982」(서울: 北韓研究所, 1983), pp. 258~259.

18)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p. 438.

가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중재는 취급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判斷과 解決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판기관의 재판활동과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다.¹⁹⁾

이에 비해 檢閱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약을 규율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체결 및 계약리행 정형, 재결 및 제의, 집행, 성형을 조사하고 비법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을 시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활동’을 말한다. 중재기관은 검열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적 검열·감독기관과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며, 그의 활동은 재정기관의 재정·검열처럼 철저히 行政的 性格을 띠고 있다.²⁰⁾

요컨대 북한의 중재는 行政裁判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중재기관도 仲裁 이외에 檢閱을 행함으로써 계약 및 계약규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경제관리와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중재기관이 당의 정책과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國際貿易仲裁는 ‘무역계약의 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하는 재판형식으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재결원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

19) 위의 책.

20) 위의 책, p. 439; 중재기관의 계약체결 강제에 관해서는 김재교, “새로운 자재공급체계하에서 계약제도의 특성과 그 역할,”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론문집)」(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p. 159.

단'을 말한다.²¹⁾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貿易仲裁委員會가 국제무역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중재는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仲裁라는 개념과는 구별된다.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 외국인투자법 등에서는 분쟁해결기관에 대해 「仲裁機關」과 함께 재판기관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가 양자중 어느 하나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기관은 각급 재판소의 '仲裁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재판기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한다. 결국 중재기관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소속 「무역중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²⁾

한편 중재는 북한의 仲裁事件審議節次에 따라 이루어진다(시행세칙 제101조 1문). 중재원고와 피고는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21)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28.

22) 그런데 동 貿易仲裁委員會에 관한 規程은 동 중재위원회가 “무역에 관하여 계약상 발생하는 공화국 무역단체와 외국 무역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1조), 관할분쟁의 범위를 ‘외국과의 상품구매계약 또는 상품판매계약 및 위탁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배상청구에 관한 분쟁’과 ‘상기 계약에 의한 상품의 수송, 보험, 보관 및 기타 계약 진행상의 업무에 관한 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제2조). 자료의 부족으로 이 규정이 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중재법을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만일 상기 조항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 위원회는 대북투자에 따른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만일 그러할 경우 남북물자교역의 경우와는 달리 대북투자에 따른 분쟁해결방안은 北韓裁判機關과 제3국에서의 仲裁에 한정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解釋論의 타당성은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 제98조가 기존의 「貿易仲裁機關」이라는 표현을 단지 「仲裁機關」으로 개정한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問題點

이하에서는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대표적인 외자유치관련 법령과 기존의 합영법 및 합영법 시행세칙 등이 갖는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²³⁾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유의할 사항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外國人投資法

첫째,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宣言性(政策方向 宣言), 抽象性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며,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恣意的인 判斷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

가령 우대조치가 인정되는 投資獎勵對象과 관련하여, '첨단 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제7조 및 제8조

23) 諸成鎬,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分析 및 評價," pp. 199~242;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pp. 2~39 참조.

참조). 또 投資禁止 또는 制限對象에 관한 조항인 제11조에 있어서도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不確定概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시 인정되는 특혜와 관련하여, 이 법은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즉 ‘덜어줄 수 있다’고 任意的 減免規定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 소득세감면이 인정되는지 동법 세칙에서 그 基準이 마련되지 않으면 恣意的 適用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제12조에 따른 투자재산의 평가시 現物財産, 産業財産權 및 技術의 評價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은 토지, 시설 및 설비 등을 過大評價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측 기업의 공업소유권 또는 기술을 平價切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투자재산의 가치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國際市場價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분명치 않다. 남북한이 이에 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짐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북한의 所有權制度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는 원칙적으로 國家所有이다. 그

결과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은 민법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토지임차권 및 사용권 또는 관리권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북한토지제도상 토지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讓渡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소유권자의 사망시 인정되는 相續概念이 북한의 외국인 토지임차제도에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여기서 북한이 相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資本主義 法概念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대다수 국가의 民法上 財產權 相續의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제15조의 상속개념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該當機關의 承認下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넷째, 근로자의 고용이나 해고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노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당국의 許可를 요구하는 것인 바,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이 직접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資本主義 市場

原理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다섯째, 외국인투자법은 원칙적으로 國有化를 禁止하고 있으나(제19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유화를 허용하고 있는 바, 그 판단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 해당한 보상이란 용어도 막연한 개념이다.²⁵⁾

여섯째,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외국투자기업의 産業財産權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장차 이러한 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 合作法

첫째, 북한식 합작의 개념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북한측이 경영 전담) 투자에 대한 危險負擔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의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合作經營企業은 중국내의 獨立法人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經營도 계약에 따라 이사회방식, 연합관리기구방식 또는 일방당사자에 의한 위탁경영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다. 물론 북한식 합작기업이 매우 탄력적인 형태의 中國式 合作經營企業을 모방하여 모든 기업운영의 기

24)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제818호 (1992. 10. 22), pp. A3~A4.

25) 해당한 보상은 相當한 補償(reasonable compens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국에 비해 북한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⁶⁾ 물론 이 법에서는 非常設的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외국투자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합작대상 업종, 장려사업대상 업종 등에 대한 규정도 具體性이 결여되어 있다. 가령 先進技術이 도입된 제품(제3조),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제4조) 등이 그러한 예이다.

셋째, 합작법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배분이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과연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물자구입 및 판매 등 자유로이 物資調達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넷째, 합작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經營活動에 관한 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원칙적으로 合作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3조), 사실상 투자가측이 그 販賣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다섯째, 제14조는 ‘먼저 쓸 수 있다’(may)는 任意規定의

26) 북한식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측 당사자가 경영을 전담하고 利潤分配는 합작 제품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합작기업은 중국내의 獨立法人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經營權 및 利潤分配 등은 계약에 따르므로 계약이 없다.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대해석도 가능케 한다. 또한 여기서 使用主體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여섯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當局의 간섭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나, 매월 경영결산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제17조)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합작법은 북한당국의 承認下에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제19조 2문 참조), 실제로는 다음 두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契約不履行責任이 북한측에 있다는 사실의 인정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紛爭解決方式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관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판이나 중재판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덟째, 일반적으로 합작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企業解散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른다. 그러나 합작법에 의하면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의 적자가 누적될 경우 외국측 계약당사자가 투자분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적자누적에도 불구하고 資本減少를 불허하는 상기 법규정 때문에 외국측 투자가가 북한측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자유로이 기업을 해산하지 못하고 그 대신 계속해서 缺損分을 메꾸어야 할 경우 외국측 투자가는 대

북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첫째, ‘북한의 국가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는’ 주체가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체·개인 및 경제조직」인지가 불확실하다. 북한의 國家社會制度 및 自主權 尊重原則과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方針貫徹 規定은 체제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삼입된 것인데,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解釋權과 그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권이 전적으로 북한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恣意的 解釋·適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⁷⁾

둘째, 합영법에 의하면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합영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북한법의 閉鎖性을 잘 말해준다.

셋째,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 이외의 출자대상에 대한 客觀的 評價基準과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 결정기준이 불분명하다. 토지·건물은 주로 북한이 출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목적물인데, 이들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우리측 투자자와의 사이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다.

넷째, 외국투자자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

27)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5호 (1993. 5), pp. 7~8 참조.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보장에 있어서도 출자지분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채권적 수준의 보호에 그치고 있고, 합영회사 해산시 투자회수분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매우 경직적이다. 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사 전원일치의 찬성, 기타 사항의 경우 출석 이사의 2/3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개정 합영법 施行細則은 합영법 및 기존의 시행세칙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것은 대다수 국가의 意思決定方式(중요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2/3 찬성, 기타 문제의 경우 출석한 이사의 1/2 찬성이 필요)보다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직원의 채용 및 해고시 북한 노동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고용이나 해고 등에 있어서 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勞動組合과 북한 職業同盟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²⁸⁾

28) 위의 논문, pp. 113~114; 합영법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서울: 法制處, 1992), pp. 225~245;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pp. 67~68;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pp. 64~66; 韓國外換銀行, 「北韓의 合作投資 및 外國換管理制度」(서울: 韓國外換銀行, 1991), pp.

일곱째, 과거 합병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시행세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서는 이사회 의 議事定足數 불분명, 회사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등록자본금의 최소·최대금액 및 출자비율의 상·하한선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 登錄資本金이 납입된 자금인지 또는 계약상의 금액인지 여부의 불분명, 합병회사, 합작회사, 외국인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合營會社에 대한 외화대출 기간, 한도 및 대출절차 불규정 등을 들 수 있다.²⁹⁾

라. 外國人企業法

첫째, 외국인기업법은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제3조 참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참조), 이들에 대한 概念 및 判斷基準이 모호하다. 북한당국이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악용할 소지가 많다.

16~18; 全洪澤 曹東昊, “南北韓 投資協力の 政策課題,” 「南北韓 投資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2), pp. 28~36;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統一韓國」, 통권 제12호 (1984년 12월), pp. 56~65;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p. 253 참조.

29) 諸成鎬,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 25권 제2호 (1992), pp. 201~202.

둘째, 기업창설에 필요한 문서인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審議·批准에 필요한 문건'(제7조)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셋째,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 행정경제위원회에 生産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5조), 보험도 북한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3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보험제도는 현재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보험기관의 危險擔保 能力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분간 외국인기업이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은행에 輸出保險을 들거나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법은 "외국인기업은 ...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財政簿記 計算規範에 따라야 한다"고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제19조), 細部指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이 조항의 후속조치로서 회계관련 법제의 보완·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³⁰⁾

다섯째, 이 법의 경우에도 雇傭의 硬直性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20조 참조). 특히 북한은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職業同盟組織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30)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合營法 등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제21조 참조).

여섯째, 외국인기업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제26조 참조), 외국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일곱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개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9조), 여기서 行爲主體가 모호하다. 북한당국이 언제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금지 규정에 의거 恣意的으로 외국인기업을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

마.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도 북한의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만 인력을 채용·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勞務管理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一般的·抽象的 水準에 머물러 있다. 예를들면 檢疫節次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아무리 자유경제무역지대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사범, 마약사범 등의 자유로운 출입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마치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듯하나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셋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黄金의 小三角 地域」(Golden Triangle)에 속하는 북한지역이다. 현재 유엔 개발계획(UNDP)은 이 지역을 國際管理하에 개발하여, 장차 國際都市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조선「원」화만을 유통화폐로 하는 한편, 모든 결제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화폐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간섭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서 北韓貨幣로의 교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 보호의 차원에서 그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市場形成의 可能性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 기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사는 확실한 것 같지 않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對外經濟開放의 窓口役割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價格自由化, 즉 중국의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을 市場調節機能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³¹⁾

31) 중국의 經濟特區 戰略은 경제특구를 대외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經濟的 目標), 特區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킴으로써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體制改革的 目標).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자원 배분을 주로 시장조절기능에 맡겨 왔다.

바. 紛爭解決關聯 法令 및 制度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분쟁해결관련 법령이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점에 대한 연구·분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는 분쟁해결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基本법인 外國人投資法은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下位법인 合作法에는 ‘북한내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 기본법 내지 상위법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북한당국은 합작과 관련된 분쟁해결시 제3국에서의 해결을 배제하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³²⁾

둘째, 국제무역 또는 해외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판정부나 관할법원이 자국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중국적인 판결이나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은 정의구현을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161조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엄격한 權力分立이 制度化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북한의 사법제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재판기관에서 북한법에 따라

32)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2-12-59 (서울: 統一院, 1992), pp. 116~117; 三星經濟研究所, 「1992년 北韓經濟와 南北關係」(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p. 44 참조.

투자분쟁을 심리·해결할 경우 制度的으로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³³⁾ 만일 북한이 그들의 재판기관에서 분쟁해결을 강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33) 방계문, “공화국 법은 우리 당 정책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공화국 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논문집), pp. 2, 16, 24 참조.

第Ⅲ章 對北投資의 類型 및 保護方案

1. 投資의 類型 및 推進方向

가. 類 型

외국인투자법 제2조는 外國人 또는 外國企業이 북한에서 행할 수 있는 投資形態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合作企業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투자자의 상환 또는 이윤배분은 계약조건에 따라 하는 기업, 合營企業은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 外國人企業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定義는 각각 합작법 제2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외자유치형태는 ①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가가 공동 투자·공동경영·공동분배하는 合營, ② 북한측 투자자와 외국인투자가가 공동투자·단독경영·공동분배하는 合作, ③ 외국인투자가가 전액(100%) 투자하는 單獨投資의 3가지라

할 수 있다.¹⁾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 전지역에 설립할 수 있으나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3조). 즉 합영, 합작은 北韓 全域에서 허용되나, 외국인 단독투자는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만 허용된다. 북한이 外國人 單獨投資를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한정하는 것은 북한체제에 미치는 개혁·개방의 여파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이 지역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主體와 관련, 과거의 합영법은 原則的으로 북한영역안에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 또는 개인과 합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 例外的으로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했었다. 과거 합영법하에서 한국은 소위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 따라 合營法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었고, 더욱이 한국은 ‘海外’의 地域

1) 본래 서구에서 사용되는 합작 또는 합작투자(joint venture)라는 개념은 持分合作投資(equity joint venture)와 非持分合作投資 또는 契約的 合作投資(contractual joint venture)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용되는 合作은 후자만을 의미하며, 전자를 의미하는 용어으로써 合營이 별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합작개념은 서구의 그것보다 좁은 개념이다. 한편 北韓의 合作은 中國의 合作과 유사한 것이나, 중국은 中外 合作經營企業이 中國의 法人이나 非法人으로 설립될 수 있는 데 비해, 북한의 경우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만 설립되도록 되어 있어 북한식 합작이 중국식 합작보다 더 협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법의 南北關係에 대한 적용은 法理上 不可能하였다. 사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당초부터 조총련계와의 합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共和國領域밖에서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동 제5조 후단)고 규정하여 합영법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물론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다른 법에서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영역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²⁾

2) 합영법 및 개정된 합영법시행세칙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신설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화국밖의 조선동포와는 달리 海外居住 朝鮮同胞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기본법 내지 상위법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법과 상충되고 있다. 합영법과 동 시행세칙의 입법정신을 충실하게 따르면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엄밀하게 볼 때 해외거주 조선동포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의 一般地域에서 사실상 북한과의 합영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北韓體制 開放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북한경제개방의 한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南浦工團에서의 우리기업과의 합영을 제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일반지역에서의 우리기업과 북한기업과의 합영은 북한당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그 동안 북한당국자들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一般地域과는 달리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의 합영은 법리상으로는나 현실적으로나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결국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주로 北韓全域에서의 합작과 自由經濟貿易地帶에서의 합영 및 단독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만동포의 대중국투자시 優待措置를 명시하고 있는 中國과는 달리 북한은 외국투자자에 비해 남한투자자에 대하여 특별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를 두고 그 의미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먼저 ‘共和國領域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합영법에서는 남한기업이나 개인을 투자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최근 신설된 법령들에서는 모두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대북투자의 문호를 사실상 開放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고위간부들이 한국의 대북투자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기업의 대북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貿易船 및 船員들에 대해서 無査證制度에 의한 自由入港을 허용키로 한 조치가 외국투자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인이나 한국기업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解析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100% 全額出資하는 單獨投資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 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pp. 11~12 참조 ;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 15; 統一院, 「北韓動向」 92-12-59 (1992. 11), pp. 121; 그러나 臺灣同胞의 투자에 대한 投資獎勵規程을 제정하여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해외거주 조선동포로부터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 상기와 같은 표현의 수정은 별 의미가 없으며, 한국기업은 공화국내의 기업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 말미에서는 남북한의 正式國號가 표기되고 있는 바, 外國人投資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은 「공화국영역밖」의 지역이라는 해석이 일용 형식논리적으로는 가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체결된 諸合意書를 보면, 서명란을 제외하면, 本文들이 모두 正式國號는 물론 남한·북한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남측·북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이 여전히 「共和國」을 한반도 전체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法的인 形式論理가 남북관계에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의 명시적 태도표명이 있을 때까지는 합리성이나 일반적 관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⁵⁾

4) 李東勳,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12. 28), pp. 36~37 참조.

5) 이러한 논쟁은 엄밀하게 평가하면 法的·經濟的 意味보다 오히려 「하나의 조선」 政策 拋棄 與否에 관한 政治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들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가 불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본 연구의 의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대북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對北投資 保護方案을 검토하기로 한다.

나. 推進方向

대북투자는 相互 信賴回復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相互尊重·互惠平等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체제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投資의 效率性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대북투자 원칙과 기본방향에 입각, ① 자본의 규모 및 회임기간, ② 투자위험, ③ 투자지역의 사회간접시설 및 투자유인제도 등을 고려하여 漸進的·段階的으로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투자형태, 투자방식, 투자지역, 투자분야의 선정시 法的·制度的 制約과 투자위험(리스크)을 고려하여 대북투자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면 합병법 제정후 외국인투자법 제정전이나 또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지금이나 한국기업이 「事實上」 북한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법 제정시 우리 기업의 대북한진출은 당해 기업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단독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우리 기업이 재일동포 또는 재미동포 심지어 제3국인과의 합작투자에 의하여 제3국에 書類上의 會社(paper company)로 現地法人을 설립하여 진출한 것이었다. 물론 이 경우 우리 기업은 제3국 법인의 명의 속에 가려진 상태이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상 外國人 資格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 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對北投資 推進方向으로는 구체적으로 (1) 投資形態는 합작 → 소규모 독자투자 → 합영 → 대규모 단독투자, (2) 投資方式은 임가공⁶⁾ → 자원공동개발 → 공단(공장)설립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3) 投資地域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남포·해주 등 일부 서해안지역도 가능) → 남포 등 전용공단 → 기타지역, (4) 投資分野는 경공업 전기·전자 등 조립생산분야 → 중화학공업 등의 段階的 進出을 상정할 수 있다.⁷⁾ 이러한 기본구도하에서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中小規模의 생산시설 투자분야가 유망하며, 임가공형태의 경공업 진출이 비교적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⁸⁾ 對象地域은 북한이 제시하는 어떠한 지역이라도 사업성이 맞으면 가능할 것이나, 각종 특혜조건이 부여

6) 賃加工은 委託加工(processing deal)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북교역 확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原·副資財 및 設備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북한의 위탁가공비를 제공받는 經濟協力을 말한다. 이 임가공은 投資와 交易의 中間形態라고 할 수 있다. 임가공사업은 많은 경우 북한의 합작에 해당되므로 우리도 합작투자의 한 형태로 취급함이 법리상 타당하다. 그러나 南北關係 改善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임가공을 「남북교류협력법」상 協力事業(투자 포함)으로 보지 않고 있고, 交易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통일원 교류협력국 교류3과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7)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 p. 182 참조.

8) 한편 현재 임가공에 의한 북한진출에 있어서도 몇가지 장애요인들이 없지 않다. 그러한 장애요인으로서는 가령 ① 전반적으로 낙후된 생산시설, ② 물적 유통시스템의 미비, ③ 국제시장에서의 임가공상품 판로확보, ④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북한 등 대공산권 상품에 대한 규제, ⑤ 북한측에 의한 계약불이행시 적절한 제재 결여 및 분쟁발생시 객관적인 중재판정 확보의 곤란 등을 들 수 있다.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 方向,” pp. 29~30; 諸成鎬, “通商法에 비추어 본 南北經濟交流,” (國際去來法學會發表論文 1993.) 참조.

되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投資時 考慮事項

대북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제조업, 건설용역, 자원의 개발 등 가능한 대북투자 사업중 목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經濟的 妥當性 외에도 投資의 安定性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非事業的 投資危險이 여타지역의 해외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스스로 나름대로의 투자보호를 위한 自衛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진출형태,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의 다변화, 투자대상지역 및 투자종목, 합작선, 판로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가. 進出形態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먼저 어떠한 進出形態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중 어느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한 기업간에 진행되고 있는 經濟協力事業은 임가공사업, 즉 북한이 말하는 합작기업의 형태에 한정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중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는 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북한지

역에 일정수준의 生産設備만 공급된다면 노동집약적인 사업, 가령 섬유임가공(봉제, 의류, 신발 등 포함)이나 자원을 이용한 사업(철강생산 및 수산물 사업 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합영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법으로는 對北 直接投資,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령 중개무역을 위해 이미 홍콩이나 동경 등에 진출해 있는 現地企業(제3국 기업)을 활용, 북한에 子會社를 설립하는 방안, 홍콩이나 동경에 가공회사 내지 書類上의 會社(paper company)를 설립, 이를 이용하여 便法으로 진출하는 방식¹⁰⁾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과의 합영은 대체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合營企業은 기업결산, 이사회 의 소관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합영의 본래 취지를 살려 계약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지만, 기타 기업의 실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合營이 合作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조총련계 기업들이 당초 합영기업

9) 허근, “北韓投資法上으로 본 우리 企業의 對北 投資可能性,” 『國際法律經營』, 1993년 봄호 (1993), pp. 80~81.

10)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에 따라 해외투자 許可 또는 申告節次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해외투자 목적이 持株會社를 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3국에서의 지주회사 설립은 租稅脫漏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公正去來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공회사 설립방안은 현행 국내 법질차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진출방안이다.

의 형태로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하다 최근 합작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¹⁾

요컨대 북한의 합영이 사실상 합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合作形態, 즉 임가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¹²⁾ 다만 理事會를 통하여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 대북투자의 형태는 합작보다 합영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對北投資戰略上 타당하다. 單獨投資의 경우 당분간 소규모 투자는 무방하나 국유화 내지 수용위험이 높은 대규모 투자는 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법상 합작에 해당하는 임가공을 추진할 경우 무원칙적인 투자는 피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견지할 基本原則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사업보다는 추진가능한 소규모 사업 및 경제성이 있는 품목부터 임가공을 추진하고, 둘째, 가능한 한 설비제공은 한국제품으로 해야 하며, 셋째, 임가공사업을 통해 파악된 북한의 경제현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合作原則의 견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설비를 교체하고 북한경제 실상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¹³⁾

11) 허근, “北韓投資法上으로 본 우리 企業의 對北 投資可能性,” p. 81.

12) 이상과 같은 사실은 북한과의 임가공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이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진출시 계약서상에 투자형태가 합작임을 분명히 명기할 필요가 있다.

13) 허근, “北韓投資法上으로 본 우리 企業의 對北 投資可能性,” p. 82.

나. 適正 投資規模 및 資金調達의 多邊化

진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投資規模와 資金調達方法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도 示範事業으로서 남포공단 합작건설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소규모 합작투자가 대규모 합작프로젝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발, 가방, 섬유 등에 대한 賃加工 등 소규모 합작투자는 사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북한당국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투자보호에 대해서도 소홀히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中小企業은 이와 같은 소규모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것이나, 북한에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소규모 합작투자에 대해 외환규제나 물자구입 제한 등의 통제조치를 통해 사실상 僞裝收用 또는 僞裝國有化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처럼 대북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의 소규모 單獨投資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단독투자보다 투자위험이 더 크다. 현재 남북한간에 추진되고 있는 가방, 신발 등의 소규모 임가공사업도 대기업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中小企業은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거나 또는 우리 중소기업이 美·日·中 등 제3국기업이나 선진국의 多國籍企業 등과 組合(partnership) 내지 콘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對北投資方式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의 출자, 일본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의 자본과 기술, 한국의 수요보증과 약간의 자본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合作投資形態가 우리 기업과 북한기업이 양자간 차원에서 행하는 합작투자보다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대체로 북한측 계약당사자는 생산품에 대해 獨自的인 販路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시 국제원자재 시장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의 販賣專門會社를 합작선에 포함시키는 것도 투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¹⁴⁾ 특히 대기업들은 북한측이 매력을 느낄 만한 조건들, 가령 국제적 신용도, 세계적인 홍보망과 판로의 확보, 고도의 첨단기술 및 산업정보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서 북한당국이 우리측 대기업의 투자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¹⁵⁾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대기업들이 南浦, 海洲 등에서의 工團建設과 같은 대규모 합작사업, 도로·철도·항만·통신·전력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금강산 관광자원의 개발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개발 등 장기프로젝트 또는 지속적인 繼續事業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인 바, 우리 기업이 모두 內資로 소요자금을 동원하여 북한에 진출할 경우, 투자재산이 북한당국에

14) 張孝相, 「國際經濟法」(서울: 博英社, 1986), p. 190 참조.

15) 대기업은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배경으로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유리한 협상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의해 수용 또는 국유화된다면 손실규모가 클 것이다. 內資動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收用危險의 常存을 감안할 때, 북한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개방과 함께 북한당국에 의한 대북투자 보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 기업이 순수하게 國內資金을 동원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100% 單獨投資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요컨대 단기적으로 볼 때 우리측 당사자와 북한측 당사자간의 소규모 합작투자는 南北韓間 信賴構築을 위해서 바람직하나, 수익성만을 의식한 大規模 單獨投資는 물론 북한과의 대규모 합영도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제시한 投資方式에 따른 단계별 진출방안중 마지막 단계로 사회간접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¹⁶⁾ 우리기업은 일본·중국·미국 등 제3국의 大企業이나 다른 국내 대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북한에 공동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⁷⁾

한편 대규모 투자의 경우 대북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의 출자와 관련, 資金供給源의 多邊化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금공급원의 다변화는 소요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아울러 투자보호의 효과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막대한 자금동원이 소요되어 어느 해외투자보다도 위험이 큰 대북투자

16) 第Ⅲ章 第1節의 나. 「推進方向」 참조.

17)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 p. 188.

18) 張孝相, “國際讓許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海外資源의 開發 收入과 관련하여,” 「國際法學會論叢」, 제24권 제1호 (1979), pp. 78~79; 張孝相, 「國際經濟法」, pp. 190~193 참조.

사업의 경우,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한 후 國際復興開發銀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나 아시아開發銀行(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BRD나 ADB로부터의 자금차입은 대북투자 에 대한 북한의 收用 또는 國有化 抑止要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현재 ADB加入을 추진중에 있고,¹⁹⁾ 장차 ADB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상황에 있는 만큼 대북투자시 우리 기업에 의한 ADB 자금차입은 대북투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BRD는 어느 국가가 동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외국투자가와 분쟁중에 있을 때, 동 국가가 외국투자가의 請求權問題 解決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용자를 거부하여 왔다.²⁰⁾ 이처럼 IBRD가 借款供與時 당해 국가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참작해 온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대북투자시

19) 북한은 1991년 8월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ADB본부에 이 기구의 가입 자격, 절차, 출자규모 등을 문의하는 한편, ADB의 차관공여실적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과 南北韓關係: 1991~1992」(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82.

20) Yozo Yokota, "Non-political Character of the World Bank,"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76), pp. 52~53 참조.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우리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社會間接資本部門 建設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受注한 경우 소요자금을 이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위험분산 및 투자보호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²¹⁾

다. 投資對象地域 및 投資種目

기업은 진출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投資對象地域 및 投資種目과의 관련성을 유기적으로 고려하되, 국유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투자보호의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투자대상 지역을 나진·선봉 등 自由經濟貿易地帶, 아니면 기타 일반지역으로 할 것인가는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의 대우 및 보호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²²⁾

21) 張孝相, 「國際經濟法」, p. 190.

22) 다음 몇가지 이유에서 中·長期的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정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이 최초로 개방한 지역인 나진·선봉지역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북한경제의 운영실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진·선봉지역을 포함한 두만강지역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東北亞經濟圈에서 가장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두만강지역이 저개발지역이기는 하나, 동일 언어권에 속하는 같은 민족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 및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때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을 통한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간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문제와 통일문제를 다자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근, “北韓投資法上으로 본 우리 企業의 對北 投資可能性,” p. 82.

地域別 投資進出方案으로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 지역의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북한당국이 체제개방에 대한 파급효과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지역에 비해 이 지역의 投資承認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 각종 특혜가 부여되고 있으며, UNDP가 추진하고 있는 多者間 協力の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이곳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을 수용 내지 국유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단계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남한 기업 전용공단 참여, 제3단계로 非武裝地帶 등 특수지역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구도하에 대북투자를 추진하되, 1단계에서 나진·선봉 지역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西海岸地域의 진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남포나 해주 등 하부구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서해안지역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유망한 지역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해서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 철도, 도로 및 통신 등 이 지역의 下部構造가 극히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나진·선봉지역에서 製造業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東北 3省 및 러시아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들 지역과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을 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仲介貿易地帶로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하부구조 개발에 재투자할 경우, 우리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製造業部門의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나진·선봉지역의 유망투자분야는 小規模 投資에 의한 섬유 임가공 사업 등 物類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한편 제1절에서 投資方式에 따른 대북투자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임가공(제1단계) 자원공동개발(제2단계) 공단건설(제3단계) 사회간접자본 투자(제4단계)의 段階的 進出方案을 <表 2>의 投資有望種目²⁴⁾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그 동안의 單純 賃加工에서 탈피하여, 북한에 설비를 투자한 후 원자재와 임금을 제공하고 완제품을 반입하는 「設備提供型 賃加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에서는 우선 광물자원의 개발·반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농림·수산물의 개발과 관광지·간척지·대륙붕 개발 등에 대한 공동투자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地下資源開發中 유망한 품목은 철·금·은·동·니켈·크롬·인광석·마그네사

23) 구체적인 대북투자 유망종목은 <표2> 참조.

24) 이와 관련, 북한은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에 希望誘致事業을 제시한 바 있는데, 북한진출시 이를 검토하여 북한측 당사자와 합의가능한 투자종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開發研究院, 「北韓의 合作投資 誘致希望事業」(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1) 참조.

이트·고령토 등이고, 비교적 개발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중석·망간·몰리브덴·홍주석·석면 등이며, 탐사가치가 높은 품목은 안티모니·카드뮴·중사·석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農林水産分野에는 우리측의 영농기술과 농기계 제공을 통한 대단위 농장운영 및 산간지 특용작물 재배 등이 있고, 공동 어로작업 및 원양어업에서의 협력, 수산물 가공처리 등의 어업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觀光地開發에는 북한이 외자도입을 통해 개발하려는 「금강산·설악산 관광지구」, 「개성지구」, 「백두산지구」 등 3개 지역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 밖에 서해안 일대의 간척사업, 용수개발, 도서간의 육로 개설, 해안보전 및 개량, 임해공단 개발 등의 남북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大陸棚開發의 경우 석유 및 가스 개발과 관련있는 국내기업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대륙붕탐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政治的 興件이 성숙하고 북한의 관련제도 및 사회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 工團建設을 통한 본격적인 투자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경제 무역지대내에 공단을 건설하고 남한 전용공단을 신규설립하도록 하되 産業別로 상호연관을 지어 진출할 경우 水平的·垂直的 分業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部品 및 素材工場을 건설하여 북한에서 제조한 中間部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조립생산하거나, TV, 컴퓨터, 자동차분야에 있어서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現地勞動力을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完成工場을 설립하여 북한내에서 「원자재 → 부분품 → 완성품」을 일괄생산하는 방향으로 대북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북한기업과의 합병은 물론 對北 單獨投資도 가능하다.

제4단계는 제1~3단계와 병행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투자액수가 과도하므로 長期的인 次元에서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⁵⁾

〈表 2〉 對北 投資有望種目

구 분	북한측 유치희망분야	남한측 투자유망분야
섬 유 의 류	섬유·의류: 실크의류, 실크니트웨어, 실크양말, 섬유신발, 각종의류, 나일론, 인조섬유, 테트론스태플, 테트론레이온	섬유: 나일론 F絲, 폴리에스터 F絲, 견방직, 아크릴방직, 직물 의류: 와이셔츠, 블라우, 양말, 재킷, 메리야스 신발: 신발갑피, 밑창부분, 완제품(단계별) 봉제 완구, 가방
전 기 전 자	냉장고(US\$1천2백만: 연50만대), 컬러TV(10:30), 반도체(10:20), 수체제어기기(6:2), 컴퓨터(2~4:2), 스피커(3:150) 기타: 변압기, 변조기, 밧데리, 조명기, 스위치, 계전기, 엘리베이터, 계산기, 녹음기, 양극성 직접회로	중소형 컬러TV, 일반 오디오기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 전화기, 사설교환기, 퍼스널컴퓨터, FDD, 반도체 조립 기타: 범용개폐기기, 자동화 관련 전자기기, 초고압변전기기, 가전용 배선기기

25)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 pp. 187~188.

구 분	북한측 유치희망분야	남한측 투자유망분야
철 강 금 속	아연, 카드뮴, 이산화티타늄, 크롬강, 마크네샤크링거, 압연강, 전기동, 황산, 황, 회토산화물, 희귀금속, 회토마그네트, 마그네시아, 내화물, 금속괴 등 부산물, 페로티타늄, 마그네슘, 콜롬브석정광, 볼트, 너트	티타늄, 이산화티타늄, 비철주물, 철관, 철판가공, 도금, 양식기, 철구조물, 주물
자동차 기 계	기계공구, 유압기기, 연마석, 고합금강, Flake 드릴, 산업용재봉틀, 디지털 전해·절삭기, 유압펌프, 디젤연료 펌프 분사기	저급형 NC시반, NC밀링기, 머시닝센터, 자동시반, 유·공압기기, 저급형 PLC, 자동차 부품, 시계, 카메라
화 학	에틸렌, 벤젠, 부타디엔, 합성수지(자동차 전자부품용 PVC 제품), 합성고무(신발, 타이어), 합성원료(화학섬유 원료)	전자부품용 대출품, 고무가공품, 타이어, 일반합성수지 가공품, 복합비료, 각종 Plant 설비
요 업	고령토, 규조토, 점토, 평암토, 벤존나이트, 판유리, 유리섬유, 유리복,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	레미콘, 콘트리트파일, 흙관, 병유리, 식기유리

〈出處〉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서울: 大韓貿易振興公社, 1993), pp. 205~209 참조

라. 合作先

다음으로 북한측 合作先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합

작선에 따라 진출국의 국유화 억지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²⁶⁾ 이미 조총련이나 제3국 기업과 합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합영 또는 합작계약서 체결시 북한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承認을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고, 북한내에서 쉽게 물자구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합작선으로 적합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업은 먼저 經濟的 妥當性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진출형태와 진출지역을 검토하고 난 후에 비로소 북한에 투자하여야 不測의 投資損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 販 路

販路의 確保는 대북투자시 국유화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서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²⁷⁾ 그러므로 특히 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資源產品의 주요구매자나 회사와의 提携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자원의 개발·반입

26) 합작투자에 대한 國有化 抑止方案을 강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합작기업간 기술격차, 수직적 통합, 자산규모, 합작선의 선택 등이다. 張孝相, 「國際經濟法」, p. 189 참조.

27) 일반적으로 販路의 확보여부는 합작투자계약 등 국제계약 체결에 임하는 당사자의 협상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개발도상에 있는 資源保有國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을 위한 기업진출에 앞서 자원산품의 구매와 소비 등 판로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정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투자종목간 또는 투자기업간 垂直的結合이나 技術隔差와 같은 國有化 抑止要因을 크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판로확보를 통한 購買保障 및 投資保護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²⁸⁾

3. 法的 保護方案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의 안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진출지역의 법적·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戰略的 考慮事項으로 취급되고 있다.²⁹⁾ 이는 대북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북투자도 다른 해외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북한 헌법 및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관련조항에 의해 보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측 기업과 북한측 당사자간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合作 投資契約³⁰⁾이 체결되게 된다. 이와 같은 합작투자계약의 목적

28) 張孝相, “海外進出企業의 投資保護,” 「月刊考試」, 통권 제71호(1979. 12), p. 109.

29) 張孝相, 「國際經濟法」, p. 182.

30) 합작투자(joint venture)란 一時的이 아닌 特定事業을 위해 둘 이상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는 모든 형태를 말한다. 합작투자는 해외투자의 危險을 分散시킬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합작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재정원조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합작투자계약은 이와 같은 합작투자를 담당할 會社設立 및 繼續의 共同運營을 위하여 체결된다. 李泰熙, 「國際契約法」(서울: 博英社, 1985), p. 215;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은 본래 대북투자의 조건 및 절차, 기업의 설립과 경영 등에 관해 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계약은 투자보호기능도 수행한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북한의 國內法的 保護와 合作投資契約만으로는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의 투자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고, 準國際法的 保護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³¹⁾

국제법상 인정되는 海外投資의 保護方案으로는 투자자의 본국정부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 해외투자보험제도, 관계당사국간의 투자보장협정을 통한 보호 등이 있으나, 이들 방안이 쌍방간의 관계를 相互 外國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特殊關係로 간주하고 있는 남북한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³²⁾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2이상의 국가간 관계에서 일국의 기업이 타국에

을 인수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株式引受契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會社新設이나 增資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金贊鎮, 「外資導入論」(서울: 一潮閣, 1990), pp. 241~242.

31) 準國際法이라는 것이 獨自的인 法秩序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의 투자보호제도가 모두 그대로 남북관계에 원용될 수 없는 바, 여기에서는 남북한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국제법이론 또는 원칙중에서 남북한간에 원용될 수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準國際法的 保護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2) 특히 남북한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은 外交的 保護制度에 의거한 한국정부의 대북투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보호방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投資保護方案은 대북투자의 경우 변형되어 원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보호방안, 투자보장협정 체결방안, 해외투자보험 및 보증제도에 의한 보호방안 등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南北間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保護方案: 企業次元

(1) 合作投資契約의 機能과 重要性

해외에 진출하는 투자기업은 일차적으로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투자보호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본국과 자본도입국(현지국)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企業次元의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투자보호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우리 기업이 진출한 국가와 한국간에 투자보장을 위한 政府間 協定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해 해외진출기업이 현지국의 기업과 체결하는 합작투자계약에서 정부간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중 합작투자계약에 명시가능한 것, 예컨대 送金保障이나 태환통화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것이 海外進出企業들의 慣行이기도 하다.

합작투자계약은 본래 당사자들이 목적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비율과 형태, 기업의 주요

기관, 경영관리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사항에 대한
 合意로서 그 자체가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이 투자보호에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할수록 投資의 安定性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대북투자의 경우에도 진출기업이 투자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서 합작투자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직까지 南北投資保障協定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기업간의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보호는 더욱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대북투자 보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합영·합작 및 단독
 투자 등 투자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投資保護의 內容 또는 方向이 기본적으로 投資形態와 절대
 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수의 국제계약
 체결관행을 보면, 契約當事者의 特性 및 合作投資의 內容 및
 規模에 따라 계약체결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대부
 분의 국가는 석유나 광물 등 천연자원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
 고 그 개발을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천연자원의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행을 외국기업에 허
 가하는 계약은 자연인이나 법인간에 통상 체결되는 합작투자
 계약과는 性質面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內容은 물
 론 紛爭解決 節次面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는 大規模 單獨投資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합영·합작 등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³³⁾ 對北投資 保護方案 강구와 관련, 일반적인 합작투자의 경우와 천연자원의 개발, 금강산 공동개발 등 대규모 합작프로젝트의 경우를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 체결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자는 一般的인 合作投資契約에 의해 규율되나, 후자는 소위 國家契約³⁴⁾ 또는 國際讓許契約이라는 형태로 체결된다.³⁵⁾

-
- 33) 우리기업의 100% 대북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대북투자시 보호방안의 綜合的 考察을 위하여 편의상 여기서는 구별하지 않고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합영·합작 및 단독투자에 있어서 각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나, 대북투자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영이라 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합작투자중에서도 주로 합영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 34) 國家契約(state contract)이라 함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이나 타방은 국가가 아닌 실체인 계약을 말한다. 국가(국영기업 포함)과 외국법인(특히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투자자간에 공익사업이나 자원의 탐사 개발사업을 위해 체결되는 國際讓許契約(international concession contract)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35)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이권계약·양여계약·경제개발계약·국제경제개발계약 등으로 불려져 왔으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방당사자가 國家 또는 國營企業이라는 점에서 타계약과는 다른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David N. Smith and Louis T. Wells, *Negotiating Third-World Mineral Agreements: Promises as Prologu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 1975), p. 27; 오늘날에는 현지국의 주식참여의 확대와 개발활동에 대한 政府役割의 증대로 인하여 생산물분여계약(production-sharing agreement), 용역계약(service contract), 작업계약(work contract) 등의 새로운 現代的 類型的의 국제양허계약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제양허계약은 합작투자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다. 張孝相, “國際讓許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海外資源의 開發·收入과 관련하여,” pp. 81~89 참조.

(2) 一般的인 合作投資의 경우

남북한 기업간에 합작투자를 할 경우, 합작투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 또는 북한기업과 체결할 합작투자계약에 명시될 것이다.³⁶⁾ 특히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기 전 示範事業의 차원에서 對北投資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계약 이외에 다른 보호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안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물론 정부당국 차원의 投資保障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갖는 投資保護의 不完全성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적용된다. 法制的 側面에서 볼 때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어느 정도 개선·정비되었으나, 아직도 그 내용에 있어

36) 통상 합작투자계약에는 ①합작투자가 및 합작회사의 법적 성격, ②합작회사의 명칭과 목적, 해산조건, ③합작회사의 자본금, 당사자별 납입금, 발행주식의 종류 금액, ④이사회 구성 및 합작회사의 대표권과 투표권, ⑤경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분담될 방법의 상세한 기술, ⑥경영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⑦합작당사자에 의하거나 제3자의 인수에 의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에의 주식상장에 의하거나 간에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는 조건 및 증자시 거쳐야 할 절차, ⑧주식양도에 대한 제한 또는 제3자의 주식인수권의 제한, ⑨자본조달 인원 자산과 기타 사항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 ⑩각 당사자의 재정권 및 기타의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결정함에 사용될 공식, ⑪중재조항 등이 명시된다. 한편 일방당사자가 다수주주일 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분야에서 그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특별규정, 즉 ①정관의 변경, ②이사회와 경영에의 참여, ③경영상의 결정, 중요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고하는 것 및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규칙, ④신주의 발행, ⑤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제3자에의 양도, ⑥회사의 해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金贊鐵, 「外資導入論」, p. 241 참조.

서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법체계와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공정한 해결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投資契約締結時 합작·합영에 의한 대북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契約書에 명기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과 회사의 권익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최초로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측과 체결하는 계약은 先例가 될 것이므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은 자기측에 유리한 標準定型契約書를 가지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共同協力하여 내부적으로 우리측의 標準定型契約書와 標準企業規約(定款에 해당)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⁷⁾ 더 나아가 남북한의 민간단체간에

37) 합영법 시행세칙은 合營會社 組織에 관한 契約書와 會社規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합영당사자들 사이에 맺는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3. 합영회사의 존속기간, 등록자금,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4. 이사회 구성과 합영회사의 관리기구, 5.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6. 합영당사자들의 임무, 7. 재정관리, 노력관리, 자재보장 질서 및 방법, 8. 고정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9. 결산과 리운분배 방법, 10. 합영회사의 해산 및 청산 조건, 11. 법칙적용과 분쟁해결방법, 12. 계약효력발생조건”(제13조). “합영회사는 규약을 가져야 한다. 회사규약에는 합영회사의 이름과 소재지,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법적 주소, 합영회사 등록자금과 출자총액, 출자비율, 출자금의 양도조건, 결산과 리운분배 방법, 이사회 구성, 이사회 성원들의 임무, 이사회규칙, 회사관리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절차, 재정외화관리 절차와 방법, 합영회사의 해산과

「投資와 交易에 관한 標準契約書」(假稱)를 체결하여 남북한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남북한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타방지역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이 방안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관계법령은 1992년 10월 16일 改正된 合營法 施行細則을 제외하면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합영을 제외한 기타 분야의 투자계약 체결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주로 合營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방안을 살펴 보고, 합작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응방향을 간단히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남북한 기업간에 체결되는 합작투자계약에는 각당사자의 權利·義務가 명료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합작투자계약의 해석·적용시 남북한 言語의 異質化와 法制의 差異로 인하여 용어사용상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령 기업소, 돈

청산 절차, 합영회사규약의 수정·보충절차 등 합영회사의 사업내용과 활동원칙 및 질서들이 규정되어야 한다”(제14조). 여기에서 合營會社組織에 관한 契約는 ‘합영당사자들이 합영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호상 지니게 되는 權利와 義務關係를 규제한 법적문제일 뿐 아니라 합영회사규약을 작성하기 위한 規範的 文件’, 合營會社規約는 ‘회사의 조직과 경영활동을 규제한 根本規則’을 말한다.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제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5), p. 43;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국 등 여타 사회주의국가와도 法體系와 法運用의 實際에 있어서 큰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示範協力事業을 통해 북한의 실제적인 법운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리, 재정검열원, 관리성원 등의 기본용어³⁸⁾는 물론 경영 및 회계상의 용어중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간에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의 統一的 使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기업간 합작 투자계약에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는 定義條項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국제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의 동기와 목적 및 경위 등을 說明條項³⁹⁾에서 밝히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 기업간 합작투자계약에서 이러한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회사의 사업내용'을 명기하는 조항에서 會社設立目的에 관해서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설립목적 내지 사업 목적은 합작계약과 합작사업계획의 認可與否를 결정하는 주요 檢査基準임에 비추어 사업계획서상의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事業目的에 관해서는 가령 「각종 전자제품의 생산」과 같이 개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가 사업목적을 任意로 變更 또는 追加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는 안된다.⁴⁰⁾

38) 기업소는 '생산·건설·교통·운수·유통 그밖의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는 경영단위'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p. 351; 돈자리는 '기관기업소 또는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돈거래를 계산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산자리'이다.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p. 447.

39) 대다수 國際契約書에서 발견되는 설명조항은 영어로는 Whereas Clause로 표기되고 있다. 이 Whereas Clause에 관해서는 李南基, 「國際契約法」(서울: 學研社, 1987), pp. 98~99 참조.

40) 金贊鎭, 「外資導入論」, p. 242.

셋째, 합병의 경우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참여는 투자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改正된 合營法 施行細則에서는 이사회를 최고결의기관으로 하고 있고, “리사회는 3명 이상의 성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시행세칙 제39조), 이사회를 명시하는 등(제43조~제44조) 합병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사회를 構成과 權限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합병회사를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합병의 경우 우리측 계약당사자가 회사경영에의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合營契約書 및 회사의 定款에 해당하는 合營會社規約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⁴¹⁾

우리 기업이 합병의 형태로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측 합병 당사자는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적어도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도 주로 그러한 합병사업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측 당사자가 이사회 의결권중 양적으로 다수를 점하게 될 것인 바, 여기에서 小株主와 같은 입장에 서는 우리측 당사자의 지위 및 투자보호문제가 제기된다.

41) 대중국투자의 경우에도 합병기업의 외국측 당사자는 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완벽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그에 관한 의견차이 발생에 대비하여 해결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Craig A. Jaslow,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Chin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1 (1983), p. 217.

우리측 당사자는 多數의 확보만으로 반드시 회사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質的인 側面에서의 기업경영능력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출자한 類型的 持分이 적을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數的으로 不利하더라도 그와 같은 고도의 기술 보유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경영통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⁴²⁾

한편 남북한의 합병당사자가 50:50의 비율로 투자한 결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同數의 理事를 두기로 한 경우, 회사운영에 중요한 사항 및 副次的인 事項들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한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회사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타개책에 관해서도 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³⁾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42) 또한 합작투자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出資持分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남북관계에서는 이것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3) 일반적으로 합작투자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를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당사자가 事前에 합의한 바에 따라 株主總會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特約을 체결하는 방법이 사용되나, 有限責任會社의 형태로 설립되는 북한의 합병기업에 대해 이러한 방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가령 理事會 議長에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주는 방법이나 理事會 定員의 1명을 비워두었다가 이사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합병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그가 투표에 참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李泰熙, 「國際契約法」, p. 221 참조;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가 타개되지 않을 경

합영법 시행세칙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전원일치의 찬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이사의 2/3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측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며, 우리측 당사자가少數의 議決權을 가지고도 북한측의 자의적·독단적인 경영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⁴⁾

넷째, 합영법은 예비기금,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기금을 출자몹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합영법 시행세칙에서 이에 관한 관련규정(제86조 및 제87조)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일응 例示的 列舉規定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必要한 資金」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豫備基金의 사용방법 및 기타 기금의 종류·규모·조성비율·이용범위 결정문제는 결산 및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합영법 시행세칙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하여 이사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 調停 및 仲裁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거나 그것도 실패할 경우 합영기업을 해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Jaslow,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China," pp. 226~227.

44) 공동투자-북한측 단독경영-공동분배의 방식을 채택하는 합작이나 외국인단독투자의 경우, 이사회 운영방식 등 경영권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會社基金에 관한 규정을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⁵⁾

다섯째,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상 합영회사는 수출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바, 輸出許可 없이 自社 製品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고, 북한의 무역기관에 위탁하여 수출할 수도 있다.⁴⁶⁾ 그러나 이 법과 동 시행세칙은 북한내에서 상품의 판매 및 수출 비율에 대한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이사회에 의한 권한으로 위임할 수도 있으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분쟁예방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⁴⁷⁾

여섯째, 대부분의 합작투자계약은 합작회사가 원료 및 부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供給先의 制限으로 인한 不當한 價格支拂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제조공정상의 애로와 품질관리면에서 부득이 합작선에서 구매하게 될 경우 특혜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⁴⁸⁾ 북한

45)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의 세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합작 및 100% 단독투자 등 다른 유형의 대북투자에 있어서도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의 의사결정방식, 즉 중요사항의 경우 출석 이사의 전원 찬성, 기타사항의 경우 출석이사의 2/3의 찬성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금에 관한 사항을 투자계약에 명기하는 방안은 합작 및 100% 단독투자의 경우에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합영법 제15조 및 동 시행세칙 제54조 참조.

47) 張孝相, “法的 妥當性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제1호 (1990), p. 61.

48) 金贊鎮, 『外資導入論』, p. 248.

이 國家計劃經濟體制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⁴⁹⁾ 합영회사가 필요한 물자를 適期에 공급받기 위해서는 합작투자계약에서 북한측 당사자가 물자확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特惠價格으로 조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⁵⁰⁾

일곱째, 대북투자에 의해 설립된 합영회사는 原料購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국제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合作先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할 경우가 많으며, 이는 소위 結付條項(tie-in clause)에 해당하여 不當한 去來制限이 된다. 그러나 합영회사 제품이 우리 기업측의 부품이거나 우리 기업측이 해외수출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합영회사가 원하는 경우 우리 기업측이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으로 인수하여 販賣·輸出 責任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⁵¹⁾

여덟째, 합영법 시행세칙 제38조는 持分讓渡에 대하여 “합영회사의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출자몹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

49) 합영법 시행세칙 제49조 및 제50조 참조.

50) 100% 單獨出資에 의해 북한에 진출하는 企業의 경우 필요한 물자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適期에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物量이 國家計劃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업과 북한당국 간에 充分한 信賴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51) 많은 합작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자신의 海外購買網을 통하여 합작투자기업의 輸出에 적극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합영 또는 합작회사가 우리 기업의 상호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自社製品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우리측의 事前 書面同意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金贊鎮, 「外資導入論」, pp. 248~249 참조.

아야 한다. 합병회사 상대방 당사자는 출자몫을 양도받는 데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⁵²⁾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분양도에 관한 규정을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³⁾

한편 우리 기업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북한측 합병당사자가 무기한 자유로이 우리측 출자지분에 대한 先取得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면 사실상 제3자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측 당사자가 일정 기한(예컨대 20일) 내에 先取得權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기업이 제3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아홉째, 통상 무역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에는 不可抗力(*force majeure*) 사유의 발생시 당사자에게 계약의 不履行이나 그 遲延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을 명기하는데, 이를 불가항력조항이라고 한다.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북한이 불

52) 株式 또는 持分 讓渡時 계약의 타방당사자가 優先的으로 買入할 수 있는 權利를 先取得權(또는 先賣權)이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株式讓渡에 타방 당사자의 동의 외에도 政府承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53) 이와 관련,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서도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을 합작투자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제스로우(C. A. Jaslow)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계약에서 先賣權이나 同意權의 행사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同意拒否時 正當한 사유의 입증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Jaslow,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China," p. 219.

가항력사유를 내세워 의무이행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紛爭豫防의 차원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계약에 불가항력 사유를 網羅的으로 列擧함으로써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⁵⁴⁾ 다만 이 방안의 경우 불가항력의 범위 설정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⁵⁵⁾ 예컨대 罷業(strike)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의 명시여부는 궁극적으로 우리측 계약당사자의 交渉力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열째, 남북한 기업간의 합작투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해결조항이다. 계약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계약위반 발생 시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중재나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영법 및 동 시행세

54) 과거 東西貿易의 관행을 보면 불가항력사유는 천재지변·태풍·해일·홍수 등과 같은 自然的 要因과 전쟁 내란·혁명·폭동·파업·화재·정부의 규제조치 등과 같은 人爲的 要因으로 인한 경우로 대별된다. 張孝相,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88), p. 45.

55) 특별히 계약에 규정된 몇가지 사유 이외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방안은 북한의 國內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불가항력에 관한 북한의 국내법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우리 民法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不可抗力事由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북한도 우리와 같은 立法態度를 취할 경우 合作投資契約상의 불가항력조항과 국내법규정과의 相衡으로 인해 동조항의 實效性이 문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칙을 위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포함될 내용이 문제될 뿐, 합작투자계약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⁵⁶⁾

문제는 현 단계에서 대북투자를 행하는 우리기업의 紛爭解決條項 交渉方向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한 당국간에 분쟁해결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 남한기업이 개별적으로 분쟁해결조항이나 중재조항을 교섭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상 대북투자에 관한 분쟁해결방법에는 북한의 裁判機關이나 貿易仲裁機關 또는 제3국에서의 仲裁에 의한 분쟁해결이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작투자계약에서는 이들중 어느 하나만이 규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한 기업간 합작투자계약의 경우에도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⁵⁷⁾

56) 張孝相, “法的 妥當性的 측면에서 본 남북한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pp. 60, 62~63 참조.

57) 일반적으로 仲裁合意는 당사자들간에 법원에의 不提訴合意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韓國 仲裁法 제3조는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具忠書, “國際投資紛爭과 ICSID仲裁,” 「國際法學會論叢」, 제34권 1호 (1989), p. 145; 仲裁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분쟁해결은 주영업지국(현지국, 자본도입국) 訴訟에 의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합작투자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중재를 허용하는 仲裁條項을 들 경우 이 조항에는 반드시 仲裁機關·仲裁規則·仲裁地 등을 명시해야 한다. 張孝相,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 p. 45.

調停이나 仲裁를 통하여 투자분쟁을 해결해 온 대다수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북한의 재판기관보다 무역중재기관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북한의 司法 및 仲裁制度의 구조적·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남한측 투자가의 중국적인 권익확보에 만전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은 제3국 仲裁機關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에 따르면 쌍방이 合意할 경우에 한하여 제3국에서의 仲裁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⁵⁸⁾ 북한측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내에서의 해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자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국 중재에 관해서 미리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요구된다. 제3국 중재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해결방법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북한의 司法政策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북한이 1958년의 「外國仲裁判定の承認 및 執行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할 때 근본적으

58) 합영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102조.

로 해결될 수 있다.⁵⁹⁾ 이 협약은 계약국간의 중재판정 뿐만 아니라 國家와 私人間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데에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⁶⁰⁾ 그러나 民族主體性 및 南北關係의 特殊性을 이유로 하여 북한이 동 협약에의 가입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북한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기업간 투자계약에서 제3국에서의 仲裁가 명문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북한당국으로부터 제3국에서 내려진 仲裁判定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⁶¹⁾ 仲裁判定 執行의 방법에는 부동산의 경매,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정부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남

59) 일명 뉴욕협약이라 불리는 이 협약은 1958년 6월 10일에 채택되어 1959년 6월 7일에 發效하였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1973년 5월 9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60) D. W. Bowett, "Contemporary Development in Legal Techniques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cueil des Cours*, Tome 180 (1983-II), p. 231; P. D. Trooboff and C. A. Goldstein,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Experience to Date in the U. S. Court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1977), p. 484 참조.

61) 仲裁判定의 承認이란 중재판정이 집행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집행을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집행판결을 하는 것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절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仲裁判定의 執行이라 함은 그러한 집행판결에 의거하여 외국정부의 재산 또는 투자가의 재산에 대해 집행국의 執行節次法에 따라 구체적으로 執行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 정부당국이 쌍방 계약당사자간 투자분쟁만의 해결을 위한 暫定合意書를 채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또는 기타 남북한이 합의·설치하는 쌍방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공동기구에 調停機能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한째, 제3국에서의 중재시 적용될 準據法을 반드시 합작투자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⁶²⁾ 북한은 전반적으로 국제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외국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간에 國際法이나 第3國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법령만을 준거법으로 할 경우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법규라 할 수 있는 法の一般原則을 적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북투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합영당사자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일방 당국과 타방 계약당사자간 분쟁에도 대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한 法の一般原則, 去來慣行과 契約의 規定 등이 분쟁해결

62) 통상 합작투자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석·적용을 위한 기준이 되는 準據法 및 중재 또는 소송 등 紛爭解決方法이 명시된다. 특히 訴訟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 합작투자계약서에서 지정된 준거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준거법조항의 중요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합작회사가 主事務所를 두고 營業行爲를 하는 국가의 법률을 準據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張孝相,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 pp. 44~45.

의 準據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⁶³⁾

열두째, 勞務管理는 합영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북한의 노동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측 당사자의 의무를 ‘합영회사 조직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⁴⁾

승營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다음 몇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의 合作法이 규정하듯이 合作의 결과 발생한 利潤의 分配나 償還은 생산제품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사실상 外國投資家側이 販賣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바, 외국 투자자측은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해야 不測의 損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합작법은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63) 張孝相, “法的 妥當性的 측면에서 본 남북한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p. 62
참조: 공산권 국가들은 法의 一般原則의 法源性을 부인하고 있음을 들어 남북간 투자분쟁 仲裁時 이 原則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反對見解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1993. 8. 22 개인적으로 면담한 韓國法制研究院의 文俊朝 博士의 見解; 이와 관련, 1965년의 ICSID협약 제42조는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관계당사국의 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기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유형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란·미국 청구권재판소 (Iran-U. S. Claims Tribunal)의 暫定裁判所規則(Provisionally Adopted Tribunal Rules: 1983. 3. 9 채택) 제33조는 중재판정부가 상사법과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관련 상관습 및 계약규정을 고려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구소련 商工會議所 附設 仲裁裁判所規則도 적용가능한 실체법의 기초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당해 契約規定과 商慣習을 준거로 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64) 위의 논문, p. 62.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 데 먼저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이 성립할 수 있는 바, 북한이 합작생산후 손해발생 또는 예비기금 적립 등을 이유로, 먼저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任意規定이 아니라 ‘먼저 써야 한다’는 義務規定으로 개정하도록 북한측에게 요구하는 한편, 투자계약에서 그러한 취지를 명기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기업법에 따라 우리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할 경우 기업등록을 행한 함경북도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생산 및 수출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북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輸出保險 또는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投資損失 填補를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에서 보험회사에 의한 투자손실에 대한 代位辨濟時 동회사의 求償代位權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⁶⁵⁾

셋째, 남북기업간 합작투자계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합작투자계약을 承認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65) 이 경우 완전한 投資保護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타방측에 대해 행한 투자를 相互保證하는 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구상대위권 행사가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 대북투자 보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북한측 계약 당사자 또는 북한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恣意的 待遇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의 해당기관이 자기측 또는 타방측 투자자에 대하여 행정적 규제 또는 정책과 관계되는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간에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대신 民間投資保障協定이 체결될 경우 이 승인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투자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正式修交하기 전 民間投資保障協定에 의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한 투자를 보호한 바 있다.⁶⁶⁾

(3) 資源開發 등 大規模 合作프로젝트인 경우: 讓許契約 締結

지금까지 남북한 기업간에 통상적인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만일 남북한간 협력사업이 북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남포공단의 합작건설, 금강산 공동개발과 같이 대규모 합작프로젝트인 경우,⁶⁷⁾ 이를 위한 계약은 소위 國家契約 또는 國際讓許契約의 형식으로 체결될 것이다. 사실 원목이나 광물자원 심사·개발

66) 한국과 중국은 1992년 5월 2일 민간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국이 동년 8월 정식수교한 후인 9월 26일 北京에서 이 民間協定을 政府間投資保障協定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67) 한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공사를 하거나 개발에 참여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기업과 북한당국, 공공단체 또는 기업간 합작투자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 바, 이 때 대북투자가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계약에서 가능한 법적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자세히 명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서는 朴鈺旿, “金剛山 雪嶽山 觀光園地 南北韓 共同開發을 위한 公法的 諸問題,” 「유엔加入과 統一 의 公法問題」(서울: 韓國公法學會, 1991), pp. 167~178 참조.

의 경우 다른 분야의 합작투자보다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자본의 회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투자에 따른 위험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원목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의 권리는 본래 國家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합작투자계약은 당사자중 일방이 자원보유국 또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고, 他方은 외국기업 또는 자본가가 되는 동시에 전자가 후자에게 개발의 권리를 허가 또는 양허하는 國際讓許契約의 方式으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⁸⁾ 또한 그와 같은 투자의 경우 국제양허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대북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의 합영법은 합영대상에 관하여 資源開發과 같은 讓許事業(concessio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적용되는 북한법령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북한은 원목이나 광물자원의 개발을 외국기업과의 合作形態로 하기를 희망할 것이나,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북한도 외국 또는 우리의 자본참여하에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合營의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합영의 형태로 북한당국

68) 물론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準國際讓許契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제계약 체결관행상 그러한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남북간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단순히 讓許契約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과 자원개발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자원개발과 같은 讓許事業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반적인 합영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동 사업이 合營法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中國의 경우 특히 석유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中外合作沿岸石油資源探查開發條例」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바,⁶⁹⁾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원목이나 기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特別法을 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 국제경제관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讓許契約上の 保護를 허용해 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양허계약의 많은 내용은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나,⁷⁰⁾ 당사자를 포함하여 통상의 合作投資契約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特殊性에 유의하면서 남북한간에 국제양허계약에 해당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기로 한다.

69) 中國의 경우 이와 같은 합작투자 방식을 合作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고, 合營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있지 않다.

70) 다만 국제양허계약의 경우 합작투자계약의 통상적인 내용 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규정되게 된다. 가령 조광료, 사업소득세, 광구임차료, 보너스 등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규정하는 財務規定을 별도로 두는 예가 많고, 외국투자자에게 재무제표와 기업의 현황 전반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계약에 따라서는 讓許企業이 개발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區域을 점차적으로 반납케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고, 經濟開發과 福祉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가령 A. O. Adede, "A Profile of Trends in the State Contracts for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Foreign Companie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12 (1980), p. 506 참조.

첫째, 합작투자계약의 상대방이 북한 기업이 아니고 當局이므로 당해 계약에 收用이나 國有化 危險으로부터의 보호, 보상수준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상당하는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對北投資를 할 경우,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契約書에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의 삽입은 투자보호를 累進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제양허계약의 경우 특히 準據法과 紛爭解決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통상의 합작투자계약과 구별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자원의 탐사·개발에 따른 분쟁을 자국법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국가도 있으나,⁷¹⁾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제양허계약은 국제중재와 국내법원에 의한 해결을 並列적으로 또는 相互補完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國內法院에 의한 해결의 경우 당해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로서는 준거법의 선택 여지가 없다. 서방국들이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결한 국제양허계약의 대다수는 현지국의 관계법령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외국투자가에게도 준거법의 선택 여지가

71) 러시아(구소련의 경우도 동일), 유고슬라비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생긴다.⁷²⁾ 이와 관련, 1965년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의 投資 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일명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이라고 함)⁷³⁾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준거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토록 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국내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이하 ICSID)에 의한 중재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실체간의 投資紛爭 解決方法을 제시함으로써 일찍부터 자본도입국은 물론 투자가들에 의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⁷⁴⁾ 국제양허계약에 ICSID중재를 규정할 경우, 분쟁발생시 어느 당사자도 ICSID의 管轄權에 대한 同意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⁷⁵⁾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으며,⁷⁶⁾ 모

72) 석유탐사와 개발을 위하여 1954년 9월 이란과 국제석유콘소시엄간에 체결된 石油開發契約 제46조와 같이 「法の 一般原則」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계약도 적지 않다. 법의 일반원칙이 국제양허계약의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태에 관해서는 張孝相, 「國際經濟法」, pp. 470~475 참조; 또한 국제양허계약 상이 경우 ICSID에 의한 중재, 즉 일방을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과 외국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외국투자자의 權益保護에 바람직하다.

73) ICSID협약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되어 1966년 10월 14일 발효하였으며, 1967년 3월 23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

74) ICSID에 의한 중재의 必要性和 妥當性에 관해서는 具忠書, 「國際投資紛爭과 ICSID仲裁」, pp. 140~141 참조.

75) ICSID협약 제25조 1항 2문.

76) ICSID협약 제26조 1문.

든 ICSID협약 당사국이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여 그 판정에 의하여 부과된 금전상의 의무를 자국법원의 確定判決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⁷⁷⁾ 이상과 같은 점에서 ICSID 중재는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수의 國際讓許契約과 같이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과 체결하는 국제양허계약에서도 ICSID에 의한 중재를 명시함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북한이 ICSID협약의 비당사국이며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ICSID중재의 수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次善策으로서 제3국에서의 仲裁를 明示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제3국 중재는 장기적으로 ICSID중재를 활용할 수 있는 根據로 원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분쟁 해결에 있어서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⁷⁸⁾

셋째, 만일 우리 기업 및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을 제3국이나 ICSID에 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 할 경우, 종국적으로 外國仲裁判定의 승인 및 집행을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당국이 제3국 중재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이른바 主權免除(sovereign immunity)⁷⁹⁾를 주장함으로써 집행

77) ICSID협약 제54조 1항 1문; 또한 ICSID중재판정에 대해서는 ICSID협약에서 규정된 것, 즉 解釋·再審·取消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不服(上訴) 또는 救濟手段도 허용되지 않는다. ICSID협약 제53조 1항 1문.

78) 제3국 중재조항을 擴大解釋 내지 類推解釋할 경우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79) 주권면제는 管轄權 免除라고도 하는데, 주권면제는 裁判管轄權行使로부터의 免除와 執行의 免除를 모두 포함한다.

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ICSID에 의한 중재가 실현되더라도 북한의 해외재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이 主權免除를 주장할 경우, 제3국의 법원이 ICSID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⁸⁰⁾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기업이 북한당국과 양허계약을 체결할 경우 북한이 主權免除 援用을 拋棄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당국과 우리 기업간에 체결될 讓許契約의 원목 또는 광물자원 개발권에 관한 조항에는 당사자가 탐사·채취될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내용 및 성격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財務規定에는 조광료, 사업소득세, 광구임차료, 보너스 등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규정하되, 經濟開發과 福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 천연자원의 탐사·개발과 같이 대규모 합작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당연히 북한의 노동법규가 이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 때 우리측 근로자의 勞務管理와 관련하여 북한지역내에서 南北韓 勤勞者의 差別的 待遇 및 그로 인한 남북한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ILO의 노동관계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북한의 ILO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⁸¹⁾

80)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법원의 ICSID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관해서는 具忠書, “국제투자분쟁과 ICSID仲裁,” pp. 154~157 참조.

81) 諸成鎬,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 25권 제2호 (1992), pp. 201~202 참조.

나. 北韓法令의 改善要請方案: 政府次元

북한에서 남북한 기업이 合營, 合作 등의 방법으로 공동개발 또는 협력사업을 하거나 또는 單獨投資할 경우 사업의 주체는 現地法人으로 원칙적으로 北韓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법적 투자환경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가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北韓의 關聯法令을 개선해 주도록 북한측에 要請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북한의 自尊心을 자극하거나 內政干涉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외자유치관련 법령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방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측이 다른 국가기업들보다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쉽게 연대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 바, 주도적으로 북한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통일적·균형적 民族經濟發展 및 南北韓間 經濟共同體 形成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신설된 외자유치관련 法令들에서도 ①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방침 및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 존중 등 자의적 해석·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용어 존재, ②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기술도입 관련 법령 부재 및 企業破産에 관한 法令(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조)의 미제정, ③ 勞務管

리의 경직성, ④ 거래의 경직성 및 제한성, ⑤ 분쟁해결방법의 제한성, ⑥ 외국인투자관련 財政簿記計算規範 또는 會計規程(외국인기업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3조 참조) 미제정으로 인한 기업회계제도의 불명확, ⑦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法制度 補完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에 유의하여 사전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① 기술도입 및 산업재산권 보호관련 법령의 조속한 정비와 공개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특허 및 상표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② 노무관리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한 直接雇傭을 인정토록 하며, ③ 북한내 거래는 무역기관을 통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直接去來를 허용하고, ④ 외국인기업의 경우 분쟁발생시 북한중재·재판기관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제3국 중재를 인정하고, 또한 우리기업의 경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또는 여타기관에 의한 仲裁을 허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⁸²⁾

특히 북한의 企業會計와 土地賃貸料의 恣意的 決定可能性

82) 全洪澤·曹東昊, “南北韓投資協力の 政策課題,” pp. 28~36 참조.

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화관리법은 물론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에도 外換 換差損益評價 등에 대한 會計處理와 원가계산, 감가상각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미비점과 분쟁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북한에게 기업회계제도와 관련하여 中國의 會計法 水準 또는 그 이상의 國際的 會計基準의 採擇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土地賃貸料의 標準化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토지임차제도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관련 법령의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立法的인 解決을 모색하여야 한다.

改正 合營法 施行細則은 합영회사에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액의 필요한 부분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80조)고 규정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북한당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행세칙이 명시적으로 노임액의 60% 이상을 송금할 수 있다고 한 규정보다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의 송금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막연히 송금이 가능하다는 一般規

定만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⁸³⁾ 이들 법령의 시행세칙에서는 반드시 일정액 이상의 송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북한당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소득세 등 조세 감면조항이 모두 “...% 범위에서 떨어줄 수 있다(may)”고 하여 任意的 減免條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떨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북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북한에게 이러한 조항을 “떨어주어야 한다” 또는 “던다”라는 必要的 減免條項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細則에서 소득세 감면의 基準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북한측의 恣意的 適用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⁸⁴⁾

이 외에도 투자장려부문의 定義가 추상적이고 優待條件이 선언적이므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관련제도의 보완·정비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근로자의 사생활의 비밀보호, 주거 및 통신의 불가침 등 기본적 인권의 제약이나 활동상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國際的 水準의 人權保護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그들 나름의 社會主義的인

83) 외국인투자법 제20조, 합작법 제15조 및 외국인기업법 제22조 참조.

84) 立法論的으로 見地에서 보면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상 투자자의 법적 지위와 국유화 금지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자는 북한의 관계법령 및 국제협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투자에 대한 수용·몰수·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북한이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수용·몰수·제한하는 경우 迅速·充分·有效한(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보상을 하여야 하며, 동 보상액은 외화로 교환하여 海外로 送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북한이 이러한 요구를 수락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人權概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勤務環境의 改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국가들과 共同步調를 통해 관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은 <表 3>과 같다.

<表 3> 北韓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주요 내용	개선 방향
외국투자자범위	공화국영역밖 조선동포 포함	한국기업·개인 포함 명시
외국기자재수입	합작기업은 국가승인 필요	승인절차 및 조건 명시
설립지역 제한	외국인기업 설립은 자유경제무역 지대에 한정	지역제한 완화 또는 폐지
투자상환과 이윤분배	합작기업은 제품을 기본으로 함	계약에서 정하도록 함
결산	합작기업은 월별, 분기별, 연별결산	연별결산
분쟁처리	외국인기업, 합작기업의 경우, 북합중재기관·재판기관	경제교류협력공동위 또는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
노동관리	노동기관을 통해야 함	직접고용도 인정
투자계약기간	규정없음	기간명시
승인처리기간	합영기업은 규정없음	처리기간 명시
보험부보	가입시 북한보험기관	제3국보험, 제3자보험 인정
기술도입	관련법령 부재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토지임대료	관련규정 모호	임대료 표준화
기업회계제도	관련제도 불명확	중국의 회계법 또는 그이상 수준
상속세	거주외국인이 북한영역 외에 있는 재산상속시 적용	이중과세가 되므로 면제

<出處>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p. 61.

요컨대 앞으로 정부가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제정된 법령의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근 제정된 北韓法令 改正을 북한측에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북한측도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보완하여 優待措置를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적용하도록 북한당국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中國과 같이 별도의 優待法律(特例法)을 제정해 주도록 북한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⁸⁵⁾

다. 投資保障協定 締結方案：政府次元

(1) 投資保障協定の 概念

과거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자본도입국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憲法이나 關係法令의 명문규정을 통해 나름대로 외국인투자가를 보호하는 원칙과 기준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가측에서 볼때 이러한 보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헌법에 명시된 收用이나 그에 따른 補償에 대한 基本原則 등이 概括적인 경우가 대부분

85)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定」(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분이었고, 관련법규도 立法府의 의사에 따라서 修正이나 撤回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⁸⁶⁾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투자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업적(경영상) 위험은 물론 비사업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유인과 장려를 위해서는 특히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事業外的(非事業的·政治的) 危險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은 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관계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 공함과 아울러 투자가의 권익을 보장하는 資本導入國의 保障, ② 海外投資保險 또는 外交的 保護 등 資本輸出國의 保障, ③ 우호통상항해조약⁸⁷⁾이나 투자보장협정 체결 등 관련당사국에 의한 共同保障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投資保障協定(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은 당사국에 의한 공동보장의 대표적인 예로서 1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타국에 투자할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사업적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성 있는 영업활동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관련당사국들이 투자의 基本的 條件 및 가능

86) 張孝相, 「國際經濟法」, pp. 135~136 참조.

87) 과거에는 국제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 法形態인 友好通商航海條約(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 Treaty)과 그에 의거하여 해외투자가가 현지국의 국가기관 또는 법인(국영기업 포함), 자연인과 체결하는 合作投資契約에 의하여 해외투자가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일반적 규정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외투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이 거의 체결되지 않고 있다.

한 法的 保護方案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다.⁸⁸⁾ 다시 말하면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국간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 자본도입국 국내법상 欠缺의 補完 및 자본도입국 국내법의 一方的 變更으로부터 투자의 보호 등이라 할 수 있다.⁸⁹⁾

투자보장협정은 국제경제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보호, 즉 私的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의한 민간차원의 보호에 주로 의존해 온 해외투자에 대하여 政府間 協力이 보다 우위에 서서 민간차원의 보호를 보완하는 法的 意味를 갖는다. 오늘날 투자보장협정은 해외투자에 관한 국제법규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兩者條約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국가이익 보호를

88) 이와 관련, 文俊朝 博士는 ‘投資保障協定 또는 投資保護協定(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은 투자의 발생으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자본도입국의 부당한 主權的 行爲를 억제함으로써 투자계약 조건과 이행의 법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호 및 보증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는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法學博士學位 論文, 1991), p. 159.

89) Klaus Peter Berger,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Globalizing the Investment Insurance Approach Toward Development,”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vol. 15 (1988), p. 46; 외국인투자 보호에 관한 國際慣習法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본수출국과 자본도입국은 투자보장협정을 통해서 투자보호에 관한 법규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국내법상 법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가령 外國法人의 認·許可는 주로 투자보장협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⁹⁰⁾ 최근에 와서 해외투자자의 본국은 법령의 미비,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등 事業外的 危險으로부터 투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로써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⁹¹⁾

(2)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向

앞에서 고찰한 바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간에도 보다 안정성있는 對北投資 保護方案으로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기업들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대북투자의 안전확보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아직 충분한 신뢰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간 차원의 投資保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경협의 본격화시 우리 정부는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에 의한 對北投資 保護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南北投資 保障協定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입각하여 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0) Zouhair A. Kronfo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 Study of International Law* (Leiden: Sijthoff, 1972), pp. 154, 157.

91) 1959년 독일은 과거 수차례 자국민의 해외자산이 수용 또는 국유화 등에 의해 상실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해외투자 보호의 일환으로써 파키스탄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이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효시이다. 그후 1961년 스위스·튀니지아間, 1972년 프랑스·튀니지아間, 1975년 영국·이집트間 투자보장협정 체결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고 있다. 미국도 80년대에 들어서서 投資保證協定 이외에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London: Graham and Trotman, 1988), pp. 8-9.

첫째, 남북한의 경우 中國⁹²⁾이나 獨逸⁹³⁾과는 달리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案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 92) 중국 대만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만의 不接觸·不談判·不妥協의 「三不政策」고수와 대만의 政治的 實體에 대한 中國의 不認定이 대립하여 投資保障協定 체결 등 교류협력의 제도화는 담보상태에 있다. 그것은 대만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요구에 대하여 中國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은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고, 투자보장협정은 대등한 정부간에 체결되는 협정이므로 兩岸間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대만이 대만기업의 對中國投資를 장려할 경우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측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十四大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92년 10월 16일; 文興鏞, 「中·臺灣關係 發展方案」(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23 참조;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에 대한 투자보장이 미흡하여 중·대만간의 경제교류는 기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다만 1993년 4월 10일 북경에서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1990. 11 설립) 부회장 邱進益과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1991. 12 설립) 부회장 唐樹備 간에 假調印된 「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定」과 「兩岸登記郵便物照會補償協定」과 같이 공증 및 우편물교환 등 특정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제도화·법제화가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만의 대중국 투자진수와 액수가 증가할 경우, 대만측 요구와 중국측 입장수정 등을 거쳐 대만·중국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93년 4월 27~28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에서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間 高位民間會談에서 투자보장협정체결문제가 논의되었는 바, 대만측은 중국에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대만측이 먼저 중국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중국상품의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양측은 투자보장문제 등 경제교류부문에서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93년 4월 28일 회담을 종결하였다. 다만 양측은 대만측이 요구한 투자보장문제는 “앞으로 다시 협의하고 양측간 경제교류를 추진한다”는 원칙만을 명시한 「共同協議」文件에 서명하기로 4월 29일 합의하였을 뿐이다. 「韓國日報」, 1993년 4월 29일.
- 93) 독일의 경우 동독경제가 기본적으로 구소련 주도하의 COMECON이라는 동구 공산권국가들간 경제기구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구소련이 서방권의 대동독 투자를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세력의 침투로 간주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70~1980년대는 물론 통일직전까지도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賃加工 免許生産 등이 부수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며 합작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전 양측간의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獨逸經濟社會統合 研究를 위한 短期調査團, 「獨逸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pp. 115~129 참조.

가장 현실적인 대북투자보호방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정부당국간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 합영법의 김일성·김정일의 방침관철이나 국가사회제도 및 자주권존중 또는 외국인기업법상 인민경제발전장에 및 기타 법규위반 등을 악용하여 언제라도 우리기업을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대북투자 위험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독소조항 때문에 對北投資를 당사자간의 합작투자계약이나 양허계약에만 의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대북투자보호의 보완차원에서 남북투자보장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② 중국과 대만은 상호 국내법규를 정비하여 상호 타방측 투자가에 의한 투자보호를 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國內法에 의한 투자보호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로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하나의 조선」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북한 국내법 및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의한 보호만에 의존하는 방안은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북한의 內國人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바, 이는 南北韓間 特殊關係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현상은 북한이 우리 정부당국의 대북투자 규제를 무시하려는 태도와 소위 窓口多元化 論理와 결합되어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③ 남북투자보장협정의 締結主體와 관련, 민간차원의 투자 보장협정은 아직까지 정치적 신뢰구축이 미비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비추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체결된 합의서들의 채택주체가 政府當局인 점을 감안할 때 南北韓 政府當局次元의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투자보장협정은 본래 國際關係에서 일방국가(A국)의 기업들이 타방국가(B국)에 각종 형태의 투자를 할 경우 타방국가(B국)의 정부가 정책이나 법령 등의 정비를 통하여 일방국가(A국)의 기업에 대하여 내국기업 또는 다른 외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을 약정하는 내용의 협정을 의미한다. 남북한간에 國家承認의 효과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협정체결시 용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 남북한간에 체결되는 제협정에는 南北韓間 特殊關係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국가간에 이용되는 外交的 保護制度를 남북한간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國際慣習法에 입각한 대북투자 보호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등 國際的 有關先例를 검토, 남북한에 적용가능한 부분을 원용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主要内容

南北投資保障協定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투자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구서독)⁹⁴⁾을 포함, 과거 서방국가들이 외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및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들을 準據로 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시 동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用語定義 및 協定の 適用範圍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들은 투자·국민·회사·수익·영역 등 기본용어에 관한 定義조항을 두거나 또는 협정의 人的·時間的·場所的 適用範圍를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은 용어의 정의 또는 적용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⁹⁵⁾

첫째, 기본용어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投資의 定

94) 독일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의 허용, 투자재산, 수익 및 보상에 관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민 대우, 투자재산, 수익의 보호 및 보장, 수용 및 국유화의 조건, 보상 지급액의 송금 및 이전에 관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민 대우, 투자자의 본국정부의 代位辨濟權(求償代位權 또는 遡求權),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CSID)에 의한 중재 의뢰 등이다.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의 諸危險과 事例研究」(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82), pp. 203~204 참조.

95) 동시에 이 조항들은 협정상 부담하는 義務의 範圍를 제한함으로써 外資導入이 자국의 개발목표·정책에 부응케 하려는 자본도입국의 의지와 자본수출국의 投資利益間에 상호 균형이 존재함을 반영하는 의미를 갖는다.

義問題이다. 國際法上 투자에 대한 확립된 定義가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투자보장협정들은 保護對象과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例示的으로 열거하고 列擧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⁹⁶⁾ 또는 투자보호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 투자 뿐만 아니라 「投資에 관계되는 活動」을 保護對象으로 명시하기도 한다.⁹⁷⁾

투자에는 동산·부동산·지분·채권 등 모든 종류의 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술 또는 노우하우, 이권(concession)은 물론 이익·이자·자본소득·배당·로얄티·수수료 등 資本收益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를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⁹⁸⁾ 최근에는 새로운

96)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1조와 아시아·아프리카 法律諮問委員會가 작성한 投資保障協定모델 A와 B의 각각 제1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hina-France: Agreement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4 (May 1985), p. 550;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Model Bilateral Agreements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3 (March 1984), pp. 242, 255.

97)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1조 1항.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ustralia-China: Agreement on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8 (January 1989), p. 124; 韓·러 投資保障協定 제1조 1항도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1976년 독일·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은 直接投資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22.

98) 韓·헝가리 投資保障協定 제1조와 韓·英 投資保障協定 제1조도 投資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형태의 直接投資, 즉 관리계약(경영위탁계약)·매매계약·턴키 계약(turn-key contract)⁹⁹⁾ 등 방식에 의한 非持分投資를 포함시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¹⁰⁰⁾ 일부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자산의 事後 形態變更이 투자당시에 자본도입국이 부과한 承認條件에 부합되는 한 투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¹⁰¹⁾

둘째, 투자보장협정은 타방당사국 국민과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내의 투자를 보호한다. 보호대상인 국민은 自然人을 의미하며, 그 범위 확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의 國籍 決定에 관한 國際法原則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는 달리 회사의 개념과 범위 확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들은 國內法에서 회사의 국적결정에 관하여 각기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⁰²⁾ 自國法에 따라 보호받는 회사의 범위에 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

99) 턴키계약이라 함은 일방 계약당사자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곧바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타방 계약당사자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모든 작업을 수행하며 상대방으로부터 그 對價를 받을 것을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100)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65: 투자가 투자지분에 대하여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持分投資라 한다.

101) 이러한 조항은 독일과 미국이 타국과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에서 발견되나, 영국·스위스 등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이나 아시아·아프리카 法律諮問委員會가 마련한 투자보장협정 모델 B에는 없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22.

102) 회사의 國籍 決定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設立準據法主義와 本店所在地主義가 대립되어 왔다.

한 기준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① 설립지 또는 등록사무소의 주소지, ② 설립지 또는 정관작성지, ③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또는 이해관계 등이다.¹⁰³⁾ 투자보장협정 체결시 당사국들은 회사의 범위 확정에서 대체로 이러한 기준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대체로 ①의 기준에 입각하여 회사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①과 ③의 기준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사회주의국가들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들은 모두 設立地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會社에는 法人 뿐만 아니라 法人格 없는 團體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⁴⁾

셋째, 대다수 투자보장협정은 ① 협정의 소급적용(사전투자의 보호), ② 협정의 존속기간 등 時間的 適用範圍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의 적용은 발효와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발효전에 행해진 事前投資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된다는 遡及適用 條項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스웨덴·유

103) 회사의 범위확정의 기준으로서 獨逸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회사의 住所地, 스위스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회사에 대한 支配 또는 直·間接의 實質的 利害關係, 미국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設立地와 支配關係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p. 167~168 참조.

104) 가령 韓·스위스 투자보장협정 제7조 b항 1)호와 2)호는 각각 「法人格이 없는 合資會社 또는 有限責任會社와 기타 기관」, 「회사 또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투자보장협정모델도 회사의 범위에 法人格 없는 實體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네델란드 투자보장협정모델은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고 투자보장협정, 프랑스·루마니아 투자보장협정과 같이 협정 발효 전후를 불문하고 자본도입국의 國內法에 따라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독일·이집트 투자보장협정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충족, 가령 사전투자가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事前投資를 보호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¹⁰⁵⁾

또한 투자보장협정이 정식으로 발효하기 전이라도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暫定適用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¹⁰⁶⁾ 협정 종료후에도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기간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는 經過規定을 두거나 또는 협정 종료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한 效力持續條項(continuing-effect clause)을 두는 경우도 있다.¹⁰⁷⁾

넷째, 일부 투자보장협정은 全國家領域(특히 聯邦國家)에 유효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거나 또는 일부지역에 대한 적용

105) 이 점은 독일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타, 모로코, 자이레 등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28.

106) 가령 독일·이집트 투자보장협정, 독일·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은 비상적위험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협정발효전 잠정적용을 명시한 바 있다. *Ibid.*, p. 213; 한편 1969년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5조는 暫定適用에 관한 조약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07) 效力持續期間으로서 네델란드 투자보장협정모델은 15년, 독일과 영국의 투자보장협정모델은 20년, 미국과 스위스는 10년을 각기 규정하고 있다. 韓·프랑스 투자보장협정은 효력지속기간을 無期限으로 규정하고 있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70.

배제를 명시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신탁통치지역, 屬領 및 기타 특수지역에 대한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협정의 장소적 범위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남북투자보장협정은 用語定義 및 適用範圍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북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投資對象에는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資產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특히 列擧된 것에 限定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時間的 適用範圍과 관련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발효전 事前投資에의 溯及適用은 원칙적으로 큰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법제도상의 안전판을 마련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 체결전에 남포공단 건설 등 시범적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한국인의 事前投資 保護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결국 한국정부의 대북투자 전략에 대한 정책결정에 귀착하는 것인 바, 사전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정의 溯及適用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셋째, 場所的 適用範圍과 관련하여 국가영토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용어인 「領域」이라는 표현사용을 피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國家로 承認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特殊關係 規定과 기존의 합의서 체결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이남과 이북으로 구분, 각기

이들 지역을 남측과 북측 또는 단순히 남과 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협정의 적용범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남북투자보장협정의 경우 국가간 투자보장협정은 달리 쌍방의 투자자를 國民으로 표기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의 住民으로 표기하는 것이 남북한간 특수관계 정신에 부합한다.

(나) 投資의 許容·增進·保護 및 待遇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들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 국민의 투자를 자국의 法과 政策에 따라 허용(승인, admission)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투자의 대우와는 달리 투자의 許容에 관해서는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또는 最惠國待遇(most-favoured-nation treatment)¹⁰⁸⁾를 명시

108) 內國民待遇라 함은 일방당사국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국민, 회사, 상품, 선박 등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를 동일한 경우에 타방 당사국의 국민, 회사, 상품, 선박 등에 대해서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국가가 내국민 대우를 약속하였을 경우 상대국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 자국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私法上的 權利에 대하여는 相互主義에 의거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서울: 博英社, 1990), p. 428; 이에 비해 最惠國待遇는 본래 일방 조약당사국이 제3국에게 보장하는 모든 特惠를 타방 조약당사국에게 自動적으로 부여함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타방 조약당사국을 다른 제3국에 비해 더 有利하게 대우한다는 本來의 意味가 변질되어 다른 제3국에 비해 더 不利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G. Schwarzenberger, *International Law and Order* (London: Stevens and Sons, 1971), p. 129; 이러한 最惠國待遇를 국제거래의 법규범으로 정립한 것이 2차대전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해소를 위한 GATT인데, 이것이 貿易에만 국한되지 않고 海外直接投資에도 원용되어 最惠國대우가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되게 되었다.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⁹⁾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투자보장협정을 市場接近의 개선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투자보장협정에서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¹⁰⁾ 당사국들은 투자보장협정에서 자본도입국이 투자허용 당시의 국내법을 추후 변경함으로써 타방당사국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不利한 待遇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安定化條項)을 두기도 한다.¹¹¹⁾

자본도입국이 외국인의 投資許容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일단 既許容된 투자에 대해서는 最惠國待遇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상당수 투자보장협정은 투자 또는 수익에 관

109) 韓·벨기에-룩셈부르크동맹 투자보장협정 제2조 1항이 단순히 '자국법에 따라 투자를 허용한다'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대체로 투자의 許容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110) 미국 투자보장협정 모델 제1조 및 제2조 1항. 보다 자세한 내용은 J. H. Jackson and W. J. Dave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pp. 1030~1035 참조;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2조를 들어 최근 중국이 투자의 허용에 관해서 최혜국대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72 참조.

111) 프랑스·유고 투자보장협정 제4조.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36; 그러나 安定化條項(stabilization clause)이 현실적으로 자본도입국의 立法權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하여,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1986년의 미국·카메룬 투자보장협정과 같이 일부 사회주의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서 內國民待遇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에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¹¹³⁾ 또한 국내법령에 따라 內國民待遇에 관한 한정적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¹¹⁴⁾ 이와 관련하여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된 관세동맹(customs union) 또는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등은 가입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일응 최혜국대우에 어긋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GATT에 의하여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실제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最惠國待遇條項의 但書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 등을 최혜국대우의 예외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경

112) 韓·러 投資保障協定 제3조 1항 및 2항, 韓·中 投資保障協定 제2조 2항, 제3조 1항 및 2항 참조.

113) Kenneth J. Vandeveld, "The Bilateral Treat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1988), p. 212;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중 최초로 내국민대우를 인정한 국가이다. 중국은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간 技術條件 및 適用法規의 差異를 이유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다가, 中·日 投資保障協定에서 처음으로 內國民待遇를 인정하였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123.

114) 韓·러 投資保障協定 제2조 3항 참조.

우가 있다.¹¹⁵⁾ 최근에는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라는 용어 대신 「公正하고 公平한 待遇」(fair and equitable treatment),¹¹⁶⁾ 「公正하고 合理的인 待遇」(fair and reasonable treatment)¹¹⁷⁾ 라는 용어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도 남북한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촉진하며, 투자 또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이 不當하고 差別的인 措置로 인해 受害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¹¹⁸⁾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투자 및 투

115) 中國·벨기에·룩셈부르크 經濟同盟 투자보장협정 제3조 4항,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3조 c항,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3조 3항, 韓·헝가리 투자보장협정 제3조 3항 참조.

116) OECD가 작성한 「外國人財産의 保護에 관한 協約草案」 제1조도 이러한 대우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公正하고 公平한 待遇」라는 概念은 매우 抽象的이어서 明確히 定義를 내리기가 어렵다. 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는 이 개념이 투자보장협정의 解釋基準이 될 수 있고, 투자보장협정, 관련 국내법 및 국가계약의 扞결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142 참조.

117) 중국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서 투자에 대한 최혜국대우는 인정하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및 「公正하고 公平한 待遇」가 서방국가의 표준이라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國內法上 投資待遇基準인 「公平하고 合理的인 待遇」를 채택하여 왔다. 中·獨逸 投資保障協定이 대표적인 예이다.

118) 韓·러 投資保障協定 제2조 1~4항, 韓·中 投資保障協定 제2조1항 및 3항 참조.

자관련 활동에 관한 內國民待遇 및 最惠國待遇 保障, ② 타방측 투자가, 타방측 투자기업 및 합작회사의 영업활동 보장, ③ 타방측 투자가, 타방측 투자기업 및 합작회사의 財産權 保障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에 따른 모든 활동에 대해서 包括的으로 최혜국대우형 또는 내국민대우형의 대우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최혜국대우 개념의 원용가능성을 포함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서 상호간의 투자에 대하여 最惠國待遇型 또는 內國民待遇型의 대우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 中·日 投資保障協定은 투자의 허가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제2조 2항), 투자·수익·투자에 관계된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제3조 1, 2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제4조), 수용·국유화·보상 등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데(제5조 5항), 이들은 남북 투자보장협정 체결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요컨대 남북간 투자는 民族內部的 投資이므로 북한이 남북간 특수관계를 이유로 最惠國待遇라는 표현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민이라는 용어대신 住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타방측 투자가에 대하여 가급적 內國民待遇型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國家契約에 대한 雨傘條項

國家契約 또는 國際讓許契約의 準據法은 자본도입국의 국내법이 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므로 통상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국가계약상 권리·의무의 법적 성질, 범위 및 효과는 당해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동시에 투자보장협정에서 ① 자본도입국이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행한 약속,¹¹⁹⁾ ② 국가계약상 자본도입국이 부담하는 의무, ③ 기타 외국측 투자가의 권리 등의 존중·보호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雨傘條項(umbrella clause)이라고 한다. 우산조항은 첫째, 기존의 국가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외국인투자 대우를 지속적으로 보호함을 확인하는 한편, 둘째, 기존의 국가계약이나 국내법상의 보호수준이 투자보장협정의 보호수준보다 높을 경우 전자가 후자에 의해 대체되지 않음을 분명히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의 우산조항은 국가계약의 당사자에 의해 설정된 권리·의무를 國內法的인 것으로부터 國際法上的 것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자본도입국에 의한 國家契約의 一方的 破棄 등 契約違反行爲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에 입각한 국가간 법률적 분쟁을 발생시키게 되는 바, 투자보장협정상의 우산조항은 국가계약의 安定化條項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¹²⁰⁾

119) 가령 투자수익의 海外移轉, 일정기간 국유화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57.

120)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p. 176~178 참조.

대북투자시 우산조항의 중요성은 北韓이 소위 國家契約, 특히 國際讓許契約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국가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中國은 국가계약의 전통적 유형에 속하는 계약을 國內契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북한외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에 우산조항을 삽입하거나 또는 국제양허계약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收用·國有化 制限 및 補償 條項

해외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따르며 그 중에서도 수용과 국유화는 외국 투자가의 권익보호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一般國際法上 國有化는 국가의 主權行使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合法的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¹²¹⁾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라 함은 ① 공익의 목적, ② 제3국에 의한 자본도입국내 투자와의 무차별, ③ 충분·신속·유효한 보상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지급,¹²²⁾

121) 현행 국제법상 국가는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자국영역내에 있는 외국인재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Whit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London: Stevens and Sons, 1961), pp. 32~38 참조.

122) 충분·신속·유효한 보상은 適切·迅速·效果的인 補償 또는 正當한 補償 (just compensation)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에 관해서는 Kronfo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 Study of International Law*, pp. 28, 111~117 참조.

④ 적법절차의 준수, ⑤ 투자가에 대한 약속의 이행 등이다.¹²³⁾ 그러나 투자보장협정 등 관련 국제조약에서 국유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條約規定을 違反하는 국유화의 경우 국유화국은 직접 國際責任을 지게 된다.

수용과 국유화에는 政府의 公式的인 行爲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아무런 보상없는 외국투자가의 재산 박탈사례는 드물고, 오히려 여러 僞裝戰術을 동원하여 외국투자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國有化 내지 收用을 위장국유화 또는 위장수용(disguised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잠식적(잠행성) 국유화 또는 잠식적 수용(creeping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간접국유화 또는 간접수용(indirect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이라고 불리운다. 僞裝國有化 내지 僞裝收用의 확립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본도입국 정부의 하나 또는 다수의 행위에 의하여 投資家 또는 會社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마비

123) 獨逸銀行(Deutsche Bank)의 앱스(Abs) 박사와 영국의 쇼우크로스(Shawcross) 卿이 공동으로 작성한 「해외투자에 관한 Abs-Shawcross 協約案」(Abs-Shawcross Draft Convention on Investment Abroad) 제3조 및 經濟協力開發機構(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작성한 「外國人財産 保護에 관한 協約草案」(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제3조 참조; G. Schwarzenberger, *Foreign Investments and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and Sons, 1969), pp. 134, 153~169; Arthur Larson, "Recipients' Rights Under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de," *Journal of Public Laws*, vol. IX (1960), p. 172.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사업활동을 포기 또는 당해 국가로부터 철수시키는 행위를 통칭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① 경제개발계획 또는 외자정책의 급격한 변경, ② 出資의 現地化, ③ 經營支配의 현지화, ④ 國產品 使用強制, ⑤ 원자재 수입의 제한, ⑥ 제품의 수출강제, ⑦ 技術援助契約에 대한 극단적 규제, ⑧ 외국인의 고용제한 및 내국민의 고용강제, ⑨ 差別課稅, ⑩ 당해정부가 투자가 또는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일체의 제한적 규제 등을 들 수 있다.¹²⁴⁾ 학자에 따라서는 恣意的·沒收的인 重課稅, 이익배당의 제한, 근로자 해고의 금지, 원자재 취득제한, 수출입 허가제한, 주식의 강제매각 등을 들기도 한다.¹²⁵⁾ 투자보장협정은 통상 자본도입국의 국유화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수용, 국유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直接·間接의 措置¹²⁶⁾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124) 金瓏奎, “海外投資保障의 法的 問題,” 「法曹」, 제40권 8호 (1991. 8), pp. 4~5.

125) Schwarzenberger, *Foreign Investments and International Law*, p. 162; Earl Snyder, “Protec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Examination and Appraisal,”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10 (1961), p. 472; 특히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몰수적 중과세는 一應 관습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B. A. Wortley, *Expropri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p. 106.

126) 여기서 「收用, 國有化 및 기타 이에 準하는 直接·間接의 措置」라 함은 소위 위장국유화 또는 수용을 규제하기 위한 표현이다. 1978년 이집트·유고 투자보장협정의 「국유화 또는 수용에 해당하는 기타 政府措置」, 1979년 루마니아·가봉 투자보장협정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타 政府措置」, 1980년 독일·루마니아 투자보장협정의 「財産權이나 資本投資 또는 그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의 박탈 또는 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수용에 상당하는 기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⁷⁾

한편 투자재산이 국유화 또는 수용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과거 선진국들과 후진국들간에 충분·신속·유효한 補償原則과 相當한 補償(reasonable compensation)原則이 대립되어 왔다.¹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분·신속·유효한 보상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⁹⁾ 보상은 일반적으로 硬貨(hard currency)로 행해지나 국제관행에 의하면 現物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국유화국의 보상이 지연될 경우 신속한 보상지급을 위해 피해국이 국유화국의 해외동결자

조치」, 1981년 이슬람會議機構(The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에서 채택된 동 기구 회원국간 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의 소유권에 直接·間接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는 용어도 표현만 다를 뿐 모두 蠶食의 收用을 겨냥한 것이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143.

127) 가령 중국이 체결하는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사회적 공공목적에의 부합, 법률상의 절차 이행, 상응하는 보상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유화, 수용 또는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79.

128) 전자는 주로 자본수출국인 서방국가들이 주장하는 기준이고, 후자는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이 주장하는 원칙이다. 이 외에도 補償의 범위와 관련하여 完全補償論(full compensation), 部分補償論(partial compensation), 限定的補償論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李仲範, 「外資國有化論」(서울: 一潮閣, 1975), pp. 110~120 참조.

129) 이 외에도 1948년 5월 2일의 보고타經濟協定(Economic Agreement of Bogota) 제25조 참조.

산을 보상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¹³⁰⁾

북한의 外國人投資法이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國有化 또는 收用 危險으로부터 우리기업을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북투자의 경우 정치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당국에 의한 투자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南北投資 保障協定에서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그 보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통상의 國有化 외에도 이른바 僞裝國有化에 대비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수용 또는 국유화 뿐만 아니라 僞裝戰術을 동원하여 사실상 수용과 국유화에 상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각종 유사조치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恣意的인 行爲를 억제해야 한다.¹³¹⁾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해서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補償의 基準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분·신속·유효한 보상’의 원칙과 상당한 보상원칙이 대립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은 수용 또는 국유화가 公共의 目的, 國家利益 등을 위하여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써 충분·신속·유효한

130) Whit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pp. 12~16, 215 참조.

131) 諸成鎬,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向,” 「남북교류협력의 실천과제연구: 의 부전문가 위촉원고 모음」 (서울: 統一院, 1992), pp. 96~97 참조.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관행을 감안하여 南北投資保障協定에서도 國際市場價格을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동시에 迅速性和 實效性에 입각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채택·규정하여야 할 것이다.¹³²⁾ 보상에는 부당한 지연이 없어야 하고, 수용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補償 支給日까지 합리적인 이율(reasonable rate)에 따른 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상액은 자유롭게 태환가능하고 송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³³⁾

한편 투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一定期間內에는 수용·국유화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남북투자보장협정에 규정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용·국유화 또는 그 보상이나 송금의 제한 등에 異議가 있을 경우 관할법원이나 행정관청 또는 기타 관할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³⁴⁾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유화 또는 수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132) 이와 관련,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8조 2항과 아시아·아프리카 投資保障協定 모델A 제7조는 “보상은 공식적으로 수용이나 국유화가 취해지기 바로 직전의 市場價值(market value)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고, 시장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투하된 자본, ② 평가절하, ③ 대체가치(replacement value), ④ 본국에 송금된 자본, ⑤ 기타 관계요인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價値 評價의 原則과 衡平의 原則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3)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8조 2항, 아시아·아프리카 投資保障協定 모델A 제7조 참조.

134)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5조 4항, 아시아·아프리카 投資保障協定 모델A 및 동 모델B 공히 제9조, 韓·英 投資保障協定 제5조 참조.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不可避한 事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의 判斷은 1차적으로 자본도입 국인 북한이 행하게 될 것인 바, 이에 관해서 북한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南北投資保障協定에서는 이 「불가피한 사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網羅的 列舉規定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 國有化 禁止의 예외를 명시할 경우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으로 북한의 국유화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어 동 협정의 국유화 금지조항의 효과를 퇴색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국유화금지만을 명시하고, 이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될 합작투자계약, 특히 북한당국과 한국기업간의 합작투자계약(국가계약)에서 국유화 내지 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制限的(網羅的)으로 열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다. 어느 방안을 채택하든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例示的 列舉로 해석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의 補償規定도 미흡하므로 보상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투자 보호를 위해서 북한의 外國人投資法上 「該當한 補償」의 의미를 명백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해당한 보상」이 一般國際法上 인정되는 正當한 補償 또는 충분·신속·유효한 補償인지 아니면 상당한

補償인지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개념들이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도 역시 不確定概念이기는 마찬가지이다.¹³⁵⁾ 따라서 보상액은 국유화 또는 수용되는 재산이 갖는 國際時價의 최소한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세부합의가 남북간에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次善策으로서 「해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概念上的 混亂을 피하기 위해서 상기 3가지 개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로 표기하여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³⁶⁾ 그러나 북한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最小限의 對策으로서는 ‘국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法律에 의해서만, 또 市場價格·國際基準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해둘 것이 요망된다. 또한 북한의 補償實際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상수준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35) 李漢基, “外國人財産의 國有化,” 「서울大學校 法學」 제10권 2호 (1968), p. 21 참조.

136) 물론 남북투자보장협정의 英語定本을 마련하고 상기 용어에 대한 영문표기를 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1992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東北亞圓卓會議(The Northeast Asia Round-table: NEAR)에 북한측이 제출한 外國人投資法의 非公式 英文翻譯本에서는 「해당한 보상」을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 영어로 corresponding compensatio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美聯邦 對外放送情報局(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FBIS)에서 발행되는 지역별 자료에는 이 「해당한 보상」을 fair compens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Foreign Broadcasting Information Service, *Northeast Asia*, FBIS-EAS-92-203, 20 October, 1992, p. 15.

또한 보상은 硬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現物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北韓貨幣에 의한 補償支給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마) 投資元本 및 果實 送金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自國通貨에 대한 管理權을 가지며 외국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海外送金을 허용하여야 할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는 조약상의 제한이 없는 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통화의 一般的 評價切下 또는 外換統制(통화의 이전제한)¹³⁷⁾ 등 善意의 措置를 취할 수 있으며,¹³⁸⁾ 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權利

137) 외환통제는 換去來制限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積極的인 換去來制限(active blockage)과 消極的인 換去來制限(passive blockage)이 있다. 전자는 현지국 정부가 법령, 금지조치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국통화의 해외송금 또는 타국(주로 자본수출국)통화와의 교환을 금지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현지국 정부, 특히 외환당국이 송금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행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연시키는 고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의 諸危險과 事例研究」, pp. 117~118; 따라서 환거래제한이 송금제한보다 넓은 개념이다.

138) Kronfo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p. 62; 이와 관련,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協定 제6조 3항은 “회원국은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단 회원국은 이 통제를 경상적 거래를 위한 지불을 제한하거나 또는 제7조 3항 2호와 제1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결제를 위한 자금이동을 부당히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의 法的 意味에 관해서는 Dominique Carreau, *Le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Paris: A. Colin, 1970), p. 157.

濫用禁止原則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환정책을 이유로 국가책임을 지지 않는다.¹³⁹⁾ 그러나 국가는 차별대우나 또는 외환의 교묘한 조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통화관리권을 남용함으로써 특정 외국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國際法은 국가의 자의적·차별적·몰수적인 통화관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투자와 관련, 자유로운 送金與否가 자본도입국의 投資環境 評價時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실송금은 해외투자의 직접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外貨收支均衡을 위해 투자원본 또는 이윤의 해외송금을 규제하는 입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과 정책은 항시 恣意的·差別的 送金制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을 보장하는 한편, 例外的으로 자본도입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사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규정을 투자보장협정에 두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국가관행을 보면 송금보장을 위한 조항은 다양하다. 대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은 송금과 관련하여 ① 지체없이, ② 硬貨로, ③ 송금당시 공정환율의 적용을 보장하고 있

139) Wortley, *Expropri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p. 108.

다.¹⁴⁰⁾ 국가에 따라서는 送金에 관한 最惠國待遇條項이나 適用換率에 대한 最惠國待遇條項을 두거나,¹⁴¹⁾ 송금은 협정발효 당시 또는 문제의 투자가 행하여질 당시의 國內法이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처럼 투자보장협정은 한편으로 자유로운 송금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본도입국의 이익과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¹⁴²⁾ 또한 자본도입국이 외국인의 自由送金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법상의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送金の 權利가 일반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외적인 재정적·경제적 상황에서 송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果實送金 保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통화를 외환시장의 공정한환율에 따라 태환통화 또는 태환가능한

140) 프랑스가 이집트(1974), 몰타(1976), 루마니아(1976), 시리아(1977), 요르단(1978), 수단(1978), 엘살바돌(1978), 파라과이(1978) 등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들은 이 외에도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D. Carreau, P. Juillard and T. Flory, *Droit International Economique* (Paris: L. G. D. J., 1980), pp. 496~497 참조.

141)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한·프랑스 투자보장협정, 유고·스웨덴 투자보장협정은 송금에 관한 최혜국대우조항을 두고 있고, 벨기에·싱가폴 투자보장협정은 적용환율에 관한 최혜국대우조항을 두고 있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143.

142) 가령 한·네델란드 투자보장협정은 국내법에 따라 송금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자유가 투자자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은 자유로운 換錢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단순한 환전의 자유 보장보다는 환전의 부당한 지연 방지 및 지체없는 환전 등 소위 트랜스퍼(Transfer)不能¹⁴³⁾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이 요구된다. 自由換錢保障 條項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外貨管理法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 및 자본환수 등의 외화송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는 바,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 협정에서는 果實送金에 대해서 自由로운 送金を 보장하는 한편, 송금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⁴⁾

(바) 求償代位

일부 투자보장협정은 수용이나 국유화 등으로 침해된 자국 투자자의 재산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한 당사국 정부기관이 투

143) 트랜스퍼(Transfer)不能이라 함은 被投資國內에서의 換不能(inconvertibility)과 本國送金 不能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실제로는 전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韓國輸出輸入銀行, 「海外投資의 諸危險과 事例研究」, p. 117.

144)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5조, 中·벨기에-룩셈부르크 經濟同盟 投資保障協定 제5조, 韓·헝가리 投資保障協定 제5조 참조. 가령 투자원본, 과실금, 투자관련 차입금, 근로자 임금이 送金保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가가 갖는 청구권을 代位行使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⁴⁵⁾ 이와 같은 국제관행과 같이 투자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를 위해 求償代位, 즉 정부에 의한 투자가의 손실변제 및 대위청구권 행사를 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이 미국·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投資保障協定과 投資保證協定을 별개로 체결할 경우 북한측이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자의 핵심적 내용을 전자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投資危險 分散을 위해 투자자에게 일정한 투자보장조치를 행한 경우 당해 투자가가 갖는 권리를 包括的으로 代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포괄적이라 함은 주로 代位請求 主體와 請求對象의 範圍와 관련되는 것이다. 남북투자보장협정이 투자보증협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손실에 대하여 변제한 우리 保險機關이 직접 북한당국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代位請求를 할 수 있어야 한다.¹⁴⁶⁾ 이를 위해서는

145)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7조, 韓·헝가리 投資保障協定 제6조, 韓·英 投資保障協定 제10조 참조.

146) 이와 같이 투자가의 손실을 변제한 보험기관이 투자가의 請求權을 타방국가의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代位行使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 간에 체결되는 政府間 投資保證協定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통상 투자보증협정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의 권리와 청구에 대한 國內保險公社의 대위청구권에 관한 조항, 협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조항이 설치되나, 투자의 대우 및 그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규정되지 않는다.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58.

相互主義의 입장에서 북한도 투자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완비가 단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代位請求의 주체와 대상을 정부 당국으로 한정할 경우, 기존의 투자보장협정에서 더 발전하는 점이 없게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장 北韓 投資保證制度의 현실만을 중시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우리는 투자보장협정에서 대위청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投資保證 效果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보호전략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사) 準據法과 紛爭解決

準據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한계와 계약의 위반에 따르는 법적구제의 성질과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준거법(적용법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은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는 投資保障 協定도 있다.¹⁴⁷⁾

147) 1964년 이라크·쿠웨이트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投資議定書(Protocol on Investment) 제7조 제3항은 국제법의 規定·規則·慣例·商慣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집트·루마니아 투자보장협정은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 당사자간의 조약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國際法과 法의 一般原則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제법과 자본도입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p. 169.

준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國際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에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해 당사국이 합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고, 仲裁人에게 위임하여 그가 스스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資本輸入國의 國內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도 있으며, 당사국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國內法 또는 法の 一般原則(general principles of law)과 같은 제3의 準則適用에 합의할 수도 있다. 준거법을 지정하는 대신, 재판소가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명시한 투자보장협정도 있다.¹⁴⁸⁾

분쟁당사자의 유형에 따라 準據法¹⁴⁹⁾ 및 解決方式을 달리하는 최근의 국제관행에 비추어 대북투자분쟁 해결과 관련,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도 준거법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南北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할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남북한

148) Ibid.

149)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 분쟁과 관련,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附屬書 A 제7조와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8조는 관련 투자보장협정이나 자본도입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국간 분쟁과 관련, 韓·헝가리 투자보장협정 제9조, 中·濠洲 투자보장협정 부속서 B 제7조 및 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제12조는 준거법으로서 해당 투자보장협정, 양국의 관련협정, 國際法の 一般原則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 일방 정부당국과 타방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남북한 정부당국간의 분쟁을 구분하여 별도의 준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분쟁해결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보장협정상 분쟁해결조항의 規定方式과 투자분쟁의 구체적 解決方法에 관해서는 第Ⅳ章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아) 仲裁判定의 承認·執行 및 主權免除 拋棄條項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을 제3국이나 ICSID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 할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非當事國이므로 우리로서는 제3국 또는 ICSID에 의한 중재판정에서 勝訴하더라도 이 판정에 의해 투자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실효적 구제 확보차원에서 우리는 북한당국이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仲裁判定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남북투자보장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¹⁵⁰⁾ 이와 같은 仲裁判定의 承認·執行 保障條項은 외국 또는 국제적 기관에 의한 중재판정 뿐만 아니라 북한내에서 행해진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하

150) 1979년 7월에 체결된 美·中 貿易協定の 경우 당시 중국이 뉴욕협약의 비당사국이었는데(중국은 1986. 12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조항(제8조)을 두고 있다. 이 협정은 투자에 관한 것은 아니나 남북투자보장협정 체결방향과 관련, 시사점을 주고 있다.

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북한당국이 제3국 중재의 경우 당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정에서 이른바 主權免除를 주장함으로써 承認 및 執行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제3국에서의 중재(또한 장기적으로 ICSID에 의한 중재)가 실현되더라도 북한내 소재하는 재산¹⁵¹⁾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북한이 主權免除를 주장함으로써 외국(또는 ICSID) 仲裁判定을 집행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¹⁵²⁾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북한이 主權免除 援用을 拋棄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政府間 共同委員會

中·日 投資保障協定에는 정부대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¹⁵³⁾ 동 위원회의 任務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일방 또는 쌍방의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관련있는

151) 북한에 소재하는 재산은 대부분 國有 또는 協同團體所有이며 私有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함영 합작 단독기업 재산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152) 미국, 영국 및 프랑스 법원의 ICSID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관해서는 具忠書, “國際投資紛爭과 ICSID仲裁,” pp. 154~157 참조.

153)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14조. 독일·차드 투자보장협정, 벨기에·카메룬 투자보장협정도 정부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적용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中·日間에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제도는 직접교섭의 제도화라는 측면과 함께 일종의 調整者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 Mobido Ocran,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Law School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8 (1987), p. 416.

협정의 운영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協議하며, 필요한 경우 양국정부에 適切한 勸告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협정의 다른 모든 조항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당사국 상호간에 투자정책과 투자를 규율하는 法制度에 관한 情報交換義務의 法的 根據가 된다.¹⁵⁴⁾

남북한간의 경우에도 상호간의 투자촉진과 관련있는 문제를 협의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交渉을 통해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 별도의 위원회, 가령 남북한의 관계부처 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남북투자보호·촉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거나 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最終條項 및 其他

南北投資保障協定도 광의의 조약이므로 본문에 이어 말미에 서명·수정 및 발효 등에 관한 最終條項(final clauses)을 두게 된다. 효력규정과 관련, 협정의 발효시기와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有效期間이 만료한 후 기간연장방법과 종료방법, 소급적용 여부, 수정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가령 외국인

154) Ibid.

직원의 雇用保障, 거주 및 상업활동의 보장, 타방투자자의 입국과 체류 및 출국 보장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나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 타방측 투자자에게 유리한 다른 법규 등은 投資保障協定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규정, 또한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政府政策이나 關係法令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通知하도록 하는 규정의 삽입도 필요하다.

(4) 協定의 締結主體 및 形式

남북투자보장협정의 형식 및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默示的 國家承認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투자보장협정의 명칭으로서는 협정보다는 전례와 같이 合意書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協定締結主體에 관하여는 (1) 기존의 방식과 같이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남북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2) 下級政府機關間의 合意書 형식으로 체결하는 방안,¹⁵⁵⁾ (3) 투자보장협정을 정부간 협정의 형식이 아니라 民間投資保障協定으로

155) 분단국에 있어서 이러한 협정의 先例로는 동서독간에 체결된 郵便, 鐵道, 해운 등에 관한 협정과 1960년 월맹과 월남간에 체결된 郵便協定을 들 수 있다. Jochen Abr. Frowein, *Das de facto Regime im Völkerrecht* (Köln: Carl Heymanns Verlag, 1968), p. 107.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급진적인 경험활성화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이전에 잠정적으로 민간단체들간에 「投資와 交易에 관한 標準契約書」를 체결하고 이를 남북한당국이 追認하는 방식의 투자보장방안은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⁶⁾

(1)의 경우 지금까지 남북한간에 채택된 합의서 체결방식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의 細部 合意書들을 모두 남북한 당국의 고위급회담 대표들간에 체결할 경우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公式的 行爲의 누적으로 默示的 承認의 효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이 있다.¹⁵⁷⁾

(2)의 경우 투자보장문제의 주무부서인 한국 財務部와 북한의 對外經濟委員會間에 체결될 것이다. 아직 남북한간에 많은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기관간에 투자보장

156)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 p. 210; 한편 남북투자보장협정을 민간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諸成鎬,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向,” pp. 85~104 참조.

157) 이러한 국가승인 효과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東西獨은 1951년 9월 20일 통상협정에 해당하는 베를린협정을 정부당국간 협정이 아니라 서독의 域內交易受託所(Treuhandstelle für Interzonenhandel)와 동독의 對外貿易部間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한편, 협정의 명칭에서도 締結主體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通貨區域間 協定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서독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1960년 8월 16일 베를린협정의 改正은 물론 1972년 12월 21일 양독간에 基本條約이 체결된 후에도 변화가 없었다. 베를린협정의 정식명칭은 「독일마르크 통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마르크 통용지역간의 상거래에 관한 협정」(Abkommen 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 (DM-Ost))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적다. 實效性의 면에서 (1)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의 경우 法技術的 側面에서 볼 때 쌍방간의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한 영속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① 민간투자보장협정의 이행을 쌍방 당국이 보장하는 방안과 ② 남북한의 투자당사자간 合作投資契約를 承認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해당기관이 자기측 또는 타방측 투자자에 대하여 行政的 規制 또는 政策과 관계되는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政府當局間 投資保障協定 체결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1)의 방안을 추진하되, 투자보장협정의 附屬書 또는 下位의 合意書를 체결할 경우 (2)의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 投資保險 및 保證制度에 의한 保護方案: 政府 및 企業次元

(1) 주요국가의 投資保證計劃 現況

현재 대부분의 자본수출국은 해외투자를 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보험과 투자보증 등 投資保證計劃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은 자본수출국 정부가

事業外的 危險에 대한 일종의 保險者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려는 데 있다. 해외민간투자자에 대한 政府保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간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행하는 보증이라는 점, 둘째, 민간 투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海外投資를 대상으로 하는 점, 셋째, 위험사태가 발생한 경우 보증에 의거하여 투자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점, 넷째, 保證對象은 투자자가 통상 직면하는 사업적 위험이 아니라 특수한 성격의 위험(리스크), 즉 資本導入國의 정치·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이라는 점 등이다.¹⁵⁸⁾ 해외투자보증계획의 담당기관은 첫째,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일본, 스위스 등), 둘째, 政府關係機關(公社)이 담당하는 경우(미국, 호주 등), 셋째,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民間會社가 담당하는 경우(독일, 네델란드 등)가 있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¹⁵⁹⁾

투자보증계획은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것 외에도 셋째의 경우와 같이 民間次元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즉 해외투자기업이 스스로 국내민간 보험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付保條件이 유리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하여 自救的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투자의 보증대상이 규모가 크

158) 佐藤和男 編, 「國際投資の法的保護」(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68), p. 10; 金贊鎮, 「外資導入論」(서울: 日潮閣, 1976), pp. 85~98 참조.

159) 姜二秀, 「駐韓 外國商社의 法的 地位」(서울: 大韓商事仲裁院, 1981), p. 24.

기 때문에 국제적인 大保險會社를 제외하면 민간기관이 현실적으로 해외투자보증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연구에서는 政府 또는 政府關係機關에 의한 투자보증계획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가 투자보증계획을 마련·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능력 등에 따라 保護範圍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¹⁶⁰⁾

미국의 경우 「海外民間投資公社」(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가 1971년 1월부터 투자보증계획을 관장해 오고 있다.¹⁶¹⁾ 미국 투자보증계획의 특징은 대상국과 投資保證協定을 체결하고 있고, 자본도입국이 미국자

160) E. I. Nwogugu, "Legal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s," paper presented at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1982), p. 1; 이 외에도 투자보험제도에 의하여 자국민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국가로는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등이 있다. Kronfo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p. 36; 각국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의 범위에는 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위험에 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몰수적 과세 또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노동법의 차별적 적용과 같은 위장국유화에 대해서도 수용위험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姜二秀, 「駐韓 外國商社의 法的 地位」, pp. 24~25.

161) 해외투자보험의 담당기관인 OPIC는 1961년 제정된 對外援助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거하여 1969년에 설립되었는데, 이 기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1971년이였다. 그 전까지는 美國國際開發廳(U. 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이 해외투자보험업무를 담당하였다. S. Rubin, "The Investment Guarant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e 56th Annual Meeting (1962), pp. 77~81.

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하여 付保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⁶²⁾ OPIC가 담보해 주는 위험은 다음 3가지의 非常危險이다.

첫째, 투자대상국 정부의 換去來 制限·停止 등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원본이나 이윤 등의 본국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現地通貨의 不兌換危險이다.¹⁶³⁾ 그러나 OPIC는 현지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換差損 危險은 담보해 주지 않는다.

둘째, 투자대상국 정부의 국유화, 수용이나 몰수 등의 조치로 인한 收用危險이다.¹⁶⁴⁾ 여기에는 최근 개도국에 대한 직접 투자시 발생하는 위장국유화 또는 잠식적 수용도 포함된다. 蠶食的 收用이라 함은 정부가 벌금, 차별과세, 가격통제, 국

162) 1969년 對外援助法 제234조 a 항 1호. W. O. Miller, "Protection of U. S. Investment Abroad: The Investment Guarantee Program of the U. S. Government,"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32 (1964), p. 288; A. Fatouros, "Legal Security for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W. G. Friedmann and R. C. Puch eds., *Legal Aspects of Foreign Investment* (London: Butterworths, 1959), pp. 709~711.

163) 투자보장계획에 의해 보증되는 비상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인 해외투자자는 換不能인 現地通貨를 정부에 제출하여 OPIC와 투자자간 체결된 投資保證契約에서 규정된 환율에 따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 Kronfol,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p. 50.

164) 1969년 對外援助法 제238조 b항은 수용을 투자자와의 계약을 외국정부가 파기 무시 또는 훼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이와 같은 파기 무시 또는 훼손이 투자가 자신의 과실 또는 부당행위에 의하지 아니할 것과 외국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동 사업의 계속적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bid.*, p. 55.

산화율 제고, 외국인 출자비율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수용을 말한다.

셋째, 전쟁·혁명·내란·소요·시민폭동 등과 같은 투자대상국의 社會的 混亂으로 야기되는 危險이다.

해외투자가는 상기 위험의 전부 또는 이 중에서 특정위험만을 담보해 주는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OPIC 투자보험의 보험기간은 最長 20년이며 OPIC는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¹⁶⁵⁾

일본의 경우 수출보험법에 의해서 海外投資原本保險 및 海外投資利益保險 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있다.¹⁶⁶⁾ 해외투자원본보험의 보험사고, 즉 담보되는 위험은 ① 외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주식이나 지분의 접수 등 수용으로 인한 위험, ② 혁명·내란·폭동 또는 소요로 인한 손해발생 등 社會的 混亂에 따른 위험, ③ 사업수행상 중요한 權益侵害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당해 法人이 解散한 경우와 같은 非常危險 등이다. 보험의 塡補率은 국제적 수준인 90%까지 인정되고 있고, 보험기간은 최장 15년이나 건설기간이 장기를 요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동 기간을 초과할

165) 이 외에도 OPIC는 特別保險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輸出入 銀行, “미국 海外民間投資公社(OPIC)의 主要支援制度,” 「週刊 海外投資情報」 제637호(1990. 4. 14), pp. 5~6 참조; 해외투자가는 특정 위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166) 일본의 해외투자보험제도는 195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70년에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 있다.¹⁶⁷⁾

독일의 경우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회사인 獨逸監査信託會社(Deutsche Revisions und Treuhand A. G.)가 해외투자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 투자보험제도의 특징은 독일과 자본도입국간에 投資保證協定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통화의 태환불능·수용·전쟁 및 소요로 인한 損失을 그 대상으로 하나, 투자액의 75% 내지 80%만을 보험한도로 하고 있다.

¹⁶⁸⁾

우리나라도 1972년 12월 제2차 輸出保險法 改正時 해외투자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¹⁶⁹⁾ 1977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商工部)를 대행하여 수출보험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韓國輸出保險公社가 설립되면서 해외투자보험업무를 포함한 수출보험업무가 이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현재 투자보험은 付保對象投資의 종류에 따라 ① 주식 등 보험, ② 대부금채권보험, ③ 사채 등 보험,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해외투자의 유형은 輸出保險法 제2조 제8항에 규정되

167) 佐藤和男編, 「國際投資の法的保護」, pp. 167, 169; 瓊井雅夫, 「國際投資法」(東京: 有信堂, 1988), pp.72~73; 韓國輸出入銀行, 「日本の貿易保險制度解説」(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88), pp. 341~342.

168) Theodor Meron, "OPIC Investment Insurance is Alive and Well,"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3 (1979), pp. 104~106.

169) 輸出保險法에 의하면 海外投資保險은 輸出保險制度의 일부로서 일반보험과는 달리 公益·公營保險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

어 있다.

해외투자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해외투자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험(비상위험)으로서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피투자국 정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한 재산의 몰수, 징발 및 박탈 등 收用危險이다.

둘째, 피투자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또는 정변으로 인한 투자기업의 休止 및 破産 등 戰爭危險이다.

셋째, 피투자국의 정부에 의한 투자원금, 이자 또는 배당금의 송금불능 등 送金危險이다.¹⁷⁰⁾

보험계약자는 非常危險綜合保險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상기 3가지 위험을 모두 付保하거나 3가지 위험중 1개 또는 2개의 위험만을 선택하여 부보할 수 있는 바, 당해 피투자국의 정치·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상위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5년 이상의 장기에 걸친 위험을 담보하는 非常危險綜合保險을 부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투자보호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면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액이 되

외투자보험제도는 非常危險에 대한 擔保機能에 국한되어 있고, 일본의 수출보험법이 信用危險도 담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투자에 있어서 비상위험에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해외투자계약 체결이후 기업의 信用危險에 대한 담보기능을 결여하고 있다.

170) 輸出保險法 제29조의 2 참조.

며, 이 보험에서의 보험금액은 保險價額(해외투자금액이나 손실액)의 90%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이를 심사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¹⁷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보증계획은 政府 또는 政府關係機關(公社) 뿐만 아니라 民間保險機關에 의해 실시될 수도 있다. 해외투자보증제도의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진국에 있어서조차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²⁾

(2) 對北投資 保險 및 保證方案

대북투자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通信役務의 제공이나 補助金의 지급¹⁷³⁾ 등만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북투자에 따른 진출기업의 위험부

171) 해외투자보험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韓國輸出入銀行, 「輸出保險制度 解説」(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0), pp. 256~267 참조; 한편 수출보험법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一形態인 기술, 노우하우 및 라이선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수출이 輸出保險法上 어떠한 保險種目에 의하여 引受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인에 의한 支配與否에 관계 없이 회사의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住所地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保證能力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文俊朝, 「對中國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200.

172) 해외투자보험의 가입률에 관한 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50%, 미국의 OPIC의 경우 20% 이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 5% 이하, 스위스의 輸出危險保證機構(Geschäftsstelle für die Exportrisikogarantie)의 경우 거의 폐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Klaus Peter Berger,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Globalizing the Investment Insurance Approach Toward Development," p. 39.

173)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22조 및 제24조 참조.

담이 크기 때문에 남북간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政府次元의 法制度的 支援이 시급하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당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외에도 대북투자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정부가 企業次元의 投資保護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한국은 대북투자와 관련, 이에 대한 보험 및 보증에 관해서 특별히 종합적인 投資保證計劃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북투자 등 남북한간 협력사업에 있어서 「南北交流協力法」 제26조 3항 4호에서 수출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북한진출시 우리 기업들은 輸出保險法 및 韓國輸出保險公社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출보험공사의 관련보험에 가입, 수용위험과 송금위험을 付保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북투자 보호를 기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대북투자가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실적은 없다. 다만 북한이 특수지역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투자위험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보험가입 요건을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투자를 행하는 우리기업이 직접 로히드保險會社와 같은 국제적으로 公信力이 있는 보험기관에 가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북한의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 방안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북투자에 따른 보험업무를 담당하게 될 韓國輸出保險公社가 로히드보험 등 국제적 보험기관에 再保險加入을 하는 방법 또는 多者間 投資保證機構(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¹⁷⁴⁾에 의한 보증제도¹⁷⁵⁾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역시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 174)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문서로서 多者間 投資保證機構 設立 協約(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이 1985년 10월 11일 세계은행에 제출되었고, 1988년 4월 12일 미국 및 영국의 批准과 함께 발효하였다.
- 175) 다자간 투자보증제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適格投資家는 自然人的 경우 본도입국 이외의 회원국 국민이다. 法人의 경우 私人 所有 여부에 관계없이 ① 자본도입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되고 ② 주영업지가 회원국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1이상의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자본의 1/2 이상을 소유하고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法人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또는 혼합소유기업(an enterprise of mixed owner) 및 외국인 소유의 子會社도 포함된다. 둘째, 保證適格性을 갖는 투자는 ① 개발도상국 영역에서 행하여진 투자에 한하며, ② 투자가가 법인인 경우, 회원국내에 설립되고 主營業地가 있거나 또는 회원국 국민이 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적격투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인 중·장기투자로서 신규투자이어야 한다. 셋째, 付保適格 危險에 관해서 다자간 투자보증기구는 ① 환전 및 송금의 제한, ② 국유화·수용 및 이에 준하는 위험, ③ 전쟁 및 내란으로 인한 투자의 손실(loss) 또는 손해(damage) 등 古典的·非商業的·投資危險 외에도 ④ 자본도입국에 의한 계약위반에 대하여 동 국가가 司法的·行政的 救濟를 부여하지 않는 소위 裁判의 拒否(denial of justice), ⑤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테러행위, 납치 또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罷業 등에 대해서도 保證危險으로 하고 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直接的 收用 이외에 소위 蠶食的 收用 또는 間接的 收用까지도 부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의 개념은 外見上 合法的 手段을 통하여 행해지는 자본도입국의 광범위한 행정적 간섭으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多者間 投資保證機構의 投資待遇基準에 관해서 협약은 자본도입국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公平하고 平等한 待遇와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보호가 양자조약이나 자본도입국 국내법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자간 투자보증기구가 자본도입국과 협정을 체결한 때에만 보증을 할 수 있다. MIGA협약 前文은 다자간투자보증기구의 목적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公正하고 衡平한 待遇基準(fair and equitable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에 입각한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國際標準主義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자간

결국 현단계에서는 대북투자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허용되는 손실보전의 방법에 의해서 투자위험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南北協力基金法」 제7조 2항, 同法 施行令 제5조 1항, 「南北協力基金 運用管理規程」 제2조 등에 의해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남북협력기금의 수탁관리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¹⁷⁶⁾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 3항 3호는 필요시 韓國輸出入銀行法の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법령에 의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업무의 일환으로 교역 및 협력사업(대북투자 포함)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을 보조하고 있다.¹⁷⁷⁾ 또한 輸出入銀行은 대북투자에 따른 손실보조 외에도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남북한간 교역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남한주민을 위하여 支給保證을 할 수 있다.¹⁷⁸⁾ 요컨대 대북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법

투자보증기구의 보증제도에 관해서는 Ibrahim F. I. Shihata, "Factors Influencing the Flow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levance of 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International Lawyer*, vol. 21 (1987), pp. 671~707; Jurgen Voss,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Status, Mandate, Concept, Features, Implication,"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 21 (1987), pp. 5~23 참조.

176)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南北交流協力法」 제24조는 「남북협력기금법」의 立法根據條項이라 할 수 있다.

177) 아직까지 대북투자가 실현되지 못하여 投資에 따른 손실보조의 실적은 없다. 直交易과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은 1991년 10월 天池貿易商社의 대북한 쌀 반출과 관련하여 12억 7천만원의 손실을 보조한 바 있다.

178) 한국수출입은행, "1993年度 南北協力基金 業務計劃," 「해외투자정보」, 제 775호(1993. 1. 9), pp. 13~20 참조.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制限的으로나마 일정한 지원 및 투자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國際的 保險機關 및 多者間 投資保證機構에 의한 대북투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정부가 南北協力基金을 북한진출 기업의 손실보조에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손실보조를 할 경우 무분별한 대북투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선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대북투자 위험을 政治的 危險과 事業的(경영상) 危險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조를 하되, 후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第Ⅳ章 對北投資關聯 紛爭解決方案

1. 投資紛爭의 一般的 解決方法과 慣行

가. 投資紛爭 解決方法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교섭(우호협상),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현지국 법원에 의한 소송(litigation) 또는 사법적 해결(judicial settlement) 등으로 대별된다.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들도 투자분쟁을 直接交渉, 調停, 國際仲裁에 의해 해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¹⁾

直接交渉은 당사자간의 대화(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합작투자계약 또는 국제양허계약 내용의 수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이다.²⁾

調停은 분쟁을 중재에 부탁한 경우 중재절차 개시 전후에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³⁾ 조정에 의한 해결은 仲裁判定과 달리 勸

1) 國際裁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2) 張孝相, 「國際經濟法」, p. 527.

3) 對中國投資의 경우 調停이 仲裁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張孝相, “國際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34권 1호(1989), p. 94.

告의 效力을 가질 뿐이다.⁴⁾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에 회부된 경우, 일정 기간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調停節次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중재절차로 이행된다.

仲裁은 '당사자간의 합의⁵⁾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사법상의 권리 및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訴訟에 의하지 아니하고 私人인 제3자를 仲裁人으로 선정하여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판단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⁶⁾ 중재는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確定判決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중재는 중재기관의 場所를 기준으로 國內機關에 의한 중재

-
- 4) 각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조정이 중재와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大韓商事仲裁院의 商事仲裁規則(1989. 11. 16 大法院承認) 제18조는 “①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기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은 중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를 시도한다. ② 생략, ③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으로 보며 조정의 결과는 제53조의 和解에 의거한 판정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⑤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에 의거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조정에 부탁하기로 하고 조정에 의한 해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조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통상의 國際商事紛爭이나 國際投資紛爭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분쟁이나 정치적 이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國際調停의 경우 法的 拘束力을 갖지 않고 勸告의 效力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5) 이를 仲裁合意 또는 仲裁契約이라고 한다.
- 6) 이순우, “南北經濟交流와 紛爭解決,” 「남북교류협력의 실천과제 연구」(서울: 統一院, 1992), p. 328.

와 제3국 또는 國際機關에서의 중재로 대별된다. 사회주의국가들도 대부분이 商事仲裁機關을 두고 무역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가의 투자에 따른 분쟁까지를 관할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대외적인 信認度가 높은 기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방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중재를 기피하고 있다.

중재는 중재기관의 常設性 여부에 따라 임시중재와 상설중재로 나누어진다. 常設仲裁라 함은 기존의 국내, 특정지역의 역내 또는 범세계적인 기존의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중재를 말한다.⁷⁾ 이에 비해 臨時仲裁는 당사자나 관계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중재규칙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고,⁸⁾ 이에 따라 구성되는 仲裁判定部에 분쟁을 회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張孝相, 「國際經濟法」, pp. 556~568 참조.

8) 기존의 國際仲裁規則을 준용할 경우, 중재규칙 내지 準據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작성한 「조정 및 중재규칙」, 유엔國際去來法委員會(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작성한 「조정 및 중재규칙」, 1962년 常設仲裁裁判所(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가 작성한 「일방이 국가인 양당사자간의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규칙」, 1965년 「國家와 他國의 國民間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일명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이라고 함)에 의하여 국가와 외국국민간 투자분쟁해결을 위해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의 중재규칙 등이 있다. 특히 앞의 둘은 국가와 외국인간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규칙 작성시, 뒤의 둘은 사인 상호간 일반적인 투자분쟁 중재시 유익한 준거가 될 수 있다.

특히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에 발생한 투자분쟁을 관할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서 ICSID에 의한 중재가 있다. ICSID중재는 투자분쟁을 탈현지화(탈국내화)·탈정치화함으로써 원만한 투자분쟁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외국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가 자본도입국 정부와 ICSID중재에 합의할 경우, ICSID로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仲裁判定과 함께 자본도입국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중재판정의 承認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⁹⁾ ICSID의 실효적인 중재는 투자분쟁을 교섭과 화해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¹⁰⁾

한편 ICSID는 제3자를 위한 선택적·비구속적인 절차로서 追加便宜規則에 의한 중재제도를 마련하여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동 규칙에 따른 분쟁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 9) 분쟁당사국이 ICSID협약에 가입하고 합작투자계약에서 ICSID중재조항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段階에서 당사국 국내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을 예상하고, 이와 같은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의미에서 외국인투자가 자본도입국의 主權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具忠書, “국제투자분쟁과 ICSID仲裁,” pp. 156~157 참조; 또한 ICSID협약 제 27조 제1항은 당사국의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패소한 자본도입국이 중재판정을 불이행할 경우 일반국제법원칙상 勝訴한 당사자의 본국이 그를 위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투자가는 이 방법에 의해 중재판정의 實效性을 확보할 수 있다.
- 10) 한편, 미국의 투자보장협정모델 제8조 제2항은 “당사국과 투자자간의 투자계약에서 합의된 분쟁해결절차는 투자협정과 준거법에 따라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합작투자계약을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그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투자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한 경우 투자보장협정의 분쟁해결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安定化條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현지국 법원에 의한 司法的 解決, 즉 訴訟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 조정,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국법원에 의한 해결을 투자분쟁의 일차적인 해결방법으로 규정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1국의 국가기관인 國內法院은 주로 私人間의 분쟁 또는 국가와 자국민간의 분쟁을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 의한 해결이 國家와 他國家 國民間 投資紛爭의 해결에는 적합치 않다. 국가간의 무역이나 투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적어도 일방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所在地國¹¹⁾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또는 적은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이 국가의 재판권에 원칙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현지국의 訴訟에 의한 분쟁해결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法廷地國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경우 이 방법은 더더욱 적절하지 못하다.¹²⁾

11) 이를 法廷地國(lex fori)이라고 한다.

12) 일부 예외적인 국가들이 있기는 하나 국제투자분쟁은 당사자간의 일차적인 협의를 거쳐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처리해 왔다. 결국 국내법원은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에 관한 한, 그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로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國內外의 常設 또는 非常設 仲裁機關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내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을 통해 투자분쟁의 해결에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役割分擔은 당사자나 분쟁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慣行이나 法制上으로 뿐만 아니라 法政策的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張孝相, “對社會主義國家投資에 따른 紛爭의 解決,” 「考試研究」, 통권 제295호 (1990. 6), p. 167.

따라서 오늘날 국제무역이나 투자에 따른 분쟁이 소송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는 적으며 仲裁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가령 러시아와 일부 동구국가들은 자국의 재판기관을 통한 司法的 解決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등 대다수 국가들은 우호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國際投資紛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가들도 현실적으로 재판기관과 중재기관의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권익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紛爭解決方法을 선택하고 있다.

나. 一般的 慣行

投資紛爭은 예컨대 합작투자계약이나 투자보장협정의 해석·적용, 투자의 허용 등 대우에 관한 의견차이, 자본도입국에 의한 투자가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 등의 당사자간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投資保障協定의 분쟁 해결조항은 동 협정이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분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투자보장협정은 특히 當事者의 관점에서 보면 주로 투자자와 당사국간 분쟁과 당사국간 분쟁의 해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1차적으로 자본도입국의 國內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고, 투자보호를 위해 합작투자계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투자보장협정이나 합작투자계약상 분쟁해결조항의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 적용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當事者를 중심으로 투자분쟁의 해결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一般的 慣行으로 되어 있다. 즉 최근에는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를 구분하여 ① 외국인투자가와 현지국투자가, 즉 계약 당사자간 분쟁, ② 외국인투자가와 자본도입국간의 분쟁, ③ 외국인투자가의 본국과 자본도입국간의 분쟁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¹³⁾ 이러한 관행에 맞추어 本節에서도 투자분쟁 해결을 ① 투자계약 당사자간 분쟁, ②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 분쟁, ③ 당사국간 분쟁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合作投資契約 當事者間 紛爭

合作投資契約上 義務違反 또는 不履行으로 契約當事者(私人)間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1차적으로 협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이것이 실패할 때에는 피해를 입은 일방당사자가 자본도입국의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타방당사자를 제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하

13) 예컨대 中·濠洲 投資保障協定은 당사국 국민간의 분쟁,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 분쟁, 당사국간 분쟁으로 나누어 분쟁해결절차와 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동 협정 제5조, 제12조 및 제13조 참조.

는 바에 따라 제3국에서의 중재를 포함한 기타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紛爭解決方法의 選擇權을 투자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¹⁴⁾

러시아의 경우 합영기업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서 자국의 法院이 관할토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¹⁵⁾ 中國도 원칙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의한 투자분쟁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¹⁶⁾

(2) 一方當事國과 他方當事國 國民間 紛爭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의 투자분쟁에 관해서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들은 一次的으로 우호적 해결이나 협상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은 투자분쟁에 대하여 투자자와 자본도입국이 1차적으로 直接交渉과 協議를 통하여 해결하고, 이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14)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5조 참조.

15) 러시아의 外國人投資法 제9조 2항 참조.

16)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는 합영기업의 약정, 계약 및 정관의 해석이나, 그 규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一次的으로 友好的 協議와 調停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109조). 中外合作經營企業法 제26조도 이 점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서는 이른바 중외합작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기피하거나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중국 또는 기타의 중재기관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합작계약내에 仲裁條項이 없거나 事後 仲裁合意가 없을 경우 중국의 법원에 提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¹⁷⁾ 그러나 中·덴마크 投資保障協定은 중국의 관할 행정당국에 먼저 분쟁해결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 3항), 中·오스트리아 투자보장협정은 어떠한 선행조치도 필요없이 바로 중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합병 또는 합작기업과 국가기관간 분쟁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같이 일차적으로 러시아 法院의 사법심리에 맡기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예외적인 것에 해당된다.

二次的인 投資紛爭 解決方法에 관해서는 투자보장협정들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調停에 의한 해결을 명시하기도 하고, 調停과 仲裁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분쟁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예도 있다.¹⁹⁾

-
- 17) 1984년 미국 투자보장협정보델 제12조 2항 참조; 中國은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서 외교적 채널을 통한 제1차적 분쟁해결방식이 실패한 경우, 일방당사국이 중재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타방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8) 러시아는 분쟁의 당사자를 구분하면서 합작기업과 국가기관간의 분쟁이라고만 명시하고, 합작기업에 출자한 外國投資家와 政府機關間의 분쟁으로까지는 세분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투자분쟁을 일차적으로 자국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외자도입국의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외국투자자간의 분쟁을 一切 현지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9) 이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과 관련, ICSID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한·튀니지 투자보장협정, 한·세네갈 투자보장협정은 조정에 의한 해결만을 명시한 것인가, 아니면 그와 병렬적 또는 선택적으로 중재에 의한 해결까지를 규정하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ICSID의 주관하에 행하여지는 조정과 중재를 紛爭解決方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대한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해서는 中·濠洲 投資保障協定の 관계 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一次的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고 일방 당사자가 분쟁에 관한 서면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라도 현지국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관계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²⁰⁾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에 따른 배상의 액수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도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²¹⁾ 또한 양 당사국이 1965년 ICSID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ICSID에 당해 분쟁을 부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仲裁과 국내적 구제원칙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투자보장협정들은 자본도입국의 國內的 救濟(이용가능한 司法的·行政的 救濟) 完了를 조건으로 하여 중재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²²⁾이나 國內的 救濟와 仲裁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20) 제12조 1항 및 2항 (a)호.

21)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12조 2항 (b)호.

22)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8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투자보장협정 모델 B 제8조 참조; 자본도입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투자자가 국제적 구제수단에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당해 국가에서 利用할 수 있는 國內的 救濟, 즉 司法的 行政的 救濟를 完了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는데, 이를 國內的 救濟의 原則(Local Remedies Rule) 또는 國內的 救濟完了의 原則(Princip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이라고 한다.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vol. 2 (London: Stevens and Sons, 1970), p. 1053.

하는 방식²³⁾도 있고, 국내적 구제를 이용·완료한 경우 중재에 부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명시하고 있다.²⁴⁾

이외에도 국내적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ICSID에 의한 중재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많은 투자보장협정은 국가와 외국국민(기업 및 개인투자가 포함)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ICSID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SID협약 제26조 1 문은 “이 협약상의 중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는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다른 어떠한 구제도 배제하고 이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ICSID중재의 排他性과 獨自性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⁵⁾ 여기에는 “체약국이 이 협약상

23)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12조, 中國과 벨기에·룩셈부르크간 投資保障協定 제10조 참조.

24)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11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투자보장협정 모델 A 제10조 참조.

25) ICSID협약 당사국의 법원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동 법원에 분쟁해결을 부탁하지 않기로 約定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동조 2문의 反對解釋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만일 ICSID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受訴法院은 ICSID협약 규정을 존중하여야 할 조약상 의무에 따라 그러한 소송을 각하하든가 또는 ICSID에 의하여 문제가 적절히 결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시켜야 한다. 특히 美國仲裁法 제3조와 英國仲裁法 제4조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재법 제3조에 따라 그러한 소송은 不適法하다는 이유로 却下될 것이다. 具忠書, “國際投資紛爭과 ICSID仲裁,” p. 145.

의 중재에 동의하면서 현지의 行政的 또는 司法的 救濟를 그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制限이 부가될 수 있다(동조 2 문). 따라서 ICSID의 당사국이 이러한 국내적 구제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仲裁同意를 할 경우, 그러한 국가들 상호 간에는 국내적 구제를 거치지 않는 仲裁付託의 분쟁해결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투자보장협정에서는 당사국 간 중재와 관련하여 國內的 救濟完了를 선결조건으로 규정한 조항이나 이러한 중재가 자본도입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²⁶⁾

일방당사국과 타방당사국 국민간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관련된 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해 中·濠洲 投資保障協定은 수용이나 국유화 등에 따른 賠償問題에 관한 분쟁을 관할할 仲裁判定部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CSID협약을 준거로 節次規則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²⁷⁾ 中·日 投資保障協定도 일

26) 독일·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은 당사국간 중재와 관련하여 국내적 구제완료를 규정하고 있고, 독일·에쿠아돌 투자보장협정은 仲裁가 자본도입국 국내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중재재판부의 구성에서 양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인들이 제3국의 중재인(chair person)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선임을 요청하되, 만일 그가 당사국 일방의 국민인 경우에는 法律擔當 事務次長(Undersecretary General for Legal Affairs)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동 협정 부속서 A의 제5조; 한·헝가리 투자보장협정은 “수용 또는 국유화에 관한 분쟁이 일방 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투자가 또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가 외국국민간의 투자분쟁의 결정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ICSID에 부탁될 수 있다”(제10조 3항)고 하고, 이어 제10조의 “제3항에 언

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와 타방 당사국간의 투자분쟁중 수용이나 국유화 등에 따른 배상금액에 관한 분쟁은 그 국민이나 회사의 신청에 따라, ICSID협약에 준거하여 설치되는 調停委員會나 仲裁委員會에 부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분쟁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

중재의 경우(조정외의 경우에도 동일함)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仲裁判定의 執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內在的 限界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내·외국의 중재재판부가 내린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겠다는 데 적극적으로 합의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명문의 合意는 분쟁발생 전에 당사자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간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도 있다.

급되지 아니한 분쟁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분쟁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위하여 워싱턴협약상의 ICSID에 부탁될 수 있다(제10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헝가리 투자보장협정은 수용과 국유화로 인한 분쟁을 제외하면, 분쟁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ICSID협약에 규정한 조정이나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11조 2항; 중국은 호주 및 일본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도 賠償·補償問題에 한하여 特別國際仲裁를 수락해 왔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中·日 投資保障協定이 비록 당사자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임시중재기관이 어떠한 분쟁도 관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대한 발전이라고 분석된다. Heribert Golsong, "China-Japan: Agreement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XVIII(May 1988), p. 578.

(3) 當事國間 紛爭

當事國間 紛爭에는 투자보장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외에도 본래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이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국제법상 소위 「바텔(Vattel)의 擬制」²⁹⁾에 입각하여 국가간의 분쟁으로 轉化되는 분쟁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분쟁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한 直接交渉, 즉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國際仲裁 裁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일본측 제안으로 설치된 中·日 投資保障協定の 정부대표공동위원회 또는 합동 위원회는 당사국간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協議機能을 수행하고 있다.³¹⁾

29) 바텔의 擬制라 함은 國際法違反行爲의 결과 어느 국가의 국민(가령 투자가)이 외국으로부터 손해를 받을 경우 그 자의 본국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받은 것으로 擬制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의제 또는 원칙은 '個人要求의 國家要求에의 沒入現象'(merger of the private claim into the national claim of the state)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近代國際法上 확립된 원칙으로 간주되고 있다. P. C. Jessup, *A Modern Law of Nation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2), pp. 9, 116;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 p. 166; 裴載湜, “個人과 國際法,” 「現代國際法論」(서울: 朴英社, 1980), p. 64 참조.

30) 韓·英 投資保障 協定 제9조, 韓·헝가리 投資保障協定 제9조,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投資保障協定 모델 A의 제11조,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13조, 中·佛 投資保障協定 제10조 참조.

31) 同 協定 제14조 참조.

투자분쟁이 외교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의 대표로 구성된 合同委員會(Joint Commission)에서 심의한 후 特別仲裁裁判所(special arbitration tribunal)³²⁾에 분쟁해결을 부탁하는 방법도 있다.³³⁾

그러나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투자분쟁을 제소하여 해결하도록 한 투자보장협정은 거의 없다. 조약의 해석·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국간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는 규정을 둔 友好通商航海條約이 있기는 하지만 투자보장협정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서구 법제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 재판소의 強制管轄權을 부인하는 한편, 분쟁회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投資紛爭 解決方向 및 推進方案

가. 基本方向

투자보장협정에 아무리 상세한 규정을 두더라도 解析上 異

32) 이는 臨時 仲裁裁判所(ad hoc arbitration tribunal)라고도 한다.

33) 中國·벨기에-룩셈부르크 投資保障協定 제12조 참조; 이와 관련,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는 兩岸間 交流·協力 확대를 위한 민간기구로서 부수적으로 분쟁해결기능도 수행하는 한편, 黨對黨 會談 제의, 불가침협정 제의 등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분단국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見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간에 투자 등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用語使用이나 協定の 解釋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분쟁해결방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대북투자관련 분쟁은 사회주의국가와의 투자분쟁이라는 점에서 원인과 해결방법상의 특수성이 있다. 북한의 經濟體制와 運營의 구조적 특징이나 법제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수용이나 국유화 외에도 恣意的이거나 不合理的인 行政的 規制, 합병·합작·단독투자기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으로 우리측 투자가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고, 이에 따른 관계 정부기관과의 분쟁의 여지도 그만큼 크다.

특히 서방의 외국인투자가들은 사회주의국가에의 투자와 관련하여 現地 管轄法院에 의한 투자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기피하는 한편, 紛爭當事者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분쟁해결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따라서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관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當事者를 기준으로 유형별로 해결하여 왔다.

이러한 國家慣行과 現實的 必要性 및 法理的 妥當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투자분쟁을 개별적·유형별로 접근, 해결함이 현실적이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 本節에서는 국제관행에 따라 남북한간의 투자분쟁을 (1) 합작투자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2) 한국측 투자가(또는 기업)와 북한당국 간 분쟁, (3) 남북한 정부당국간 분쟁³⁴⁾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에 별도의 해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國際投資紛爭 解決의 일반원칙과 제도중 원용가능한 부분을 원용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는 바, 남북한간 投資紛爭 發生時 우리측은 1차적으로 직접교섭에 의해 분쟁해결을 시도하되, 2차적으로 사안에 따라 실현가능성, 실효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가장 적실성있는 제3자적 해결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이나 해외투자에 따른 紛爭解決을 관할하는 중재판정부나 관할법원이 자국의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중국적인 판결이나 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쟁해결의 대원칙이다. 만일 法廷地國의 裁判機關에 의한 해결방식만을 채택할 경우, 외국인 투자는 자본도입국에서 허용되는 國內的 救濟節次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가 이와 같은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34) 이러한 投資紛爭의 類型化는 當事者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남북한간의 투자분쟁을 내용별로 유형화시켜 볼 수 있다. 즉 ① 합영계약·합작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 ② 합영기업·합작기업 100% 단독출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③ 대북투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p. 241 참조.

제3국이나 被申請人의 住所地國에서의 중재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합작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을 둠으로써 가능하다. 요컨대 외국인투자가는 중재방식을 도입한 경우에만 紛爭解決地를 선택할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³⁵⁾

결국 대북투자관련 분쟁의 2차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먼저 북한의 재판기관과 중재기관중 어느 기관에서 해결할 것인가,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중재와 제3국 또는 國際機關에서의 중재에 의한 해결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권익 확보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 구체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투자분쟁해결 기본방향이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문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投資紛爭解決指針을 제정하여 기업 등 우리측 투자자들의 투자분쟁해결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 등 투자자들은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투자분쟁의 실효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35) 東歐에 있어서도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현지 법원의 仲裁權을 묵시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推定되어 왔는 바, 서방국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고슬라비아는 자국의 商業會議所 附設 對外貿易仲裁機關이나 여타의 국내의 仲裁裁判所 또는 외국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約定이 없을 경우, 자국의 법원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The Law on Investment of Resources of Foreign Person in Domestic Organizations of Associated Labor) 제52조. Petru Buzescu, "Joint Ventures in Eastern Europe,"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2 (1984), p. 437.

나. 細部推進方案：投資紛爭의 類型別 解決

(1) 合作投資契約 當事者間의 紛爭

合作投資契約 當事者間의 紛爭이라 함은 남북한의 개인(자연인 및 법인)이 합영 또는 합작의 방법에 의하여 공동출자한 경우 계약당사자인 남북한의 투자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외자유치관련 법령과 대다수 投資保障協定의 분쟁해결조항들은 일차적으로 분쟁당사자간의 協議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것은 대북투자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합작투자계약 당사자간에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協議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이차적으로 조정·중재 및 재판 등 제3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의 분쟁해결관련 법령은 仲裁機關에서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고 공정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제3국에서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는 바,³⁶⁾ 아직까지 북한의 재판제

36) 「합영법」 제26조 3문은 “쌍방의 승수에 따라 제3국의 仲裁機關에 紛爭問題의 審議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고 동 시행세칙 제71조는 “합영당사자들은 승수에 따라 紛爭問題의 審議를 제3국의 仲裁機關에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법」 제22조 2문은 “분쟁사건은 조선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승수에 따라 다른 나라의 仲裁機關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에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보다 제3국에서의 仲裁나 臨時仲裁(ad hoc arbitration)에 의한 분쟁해결을 희망할 것이다. 합작투자계약 당사자들이 제3국 중재에 대해 事前에 合意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 정부도 우리측 투자가가 북한측 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 체결시 이를 명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體制維持次元에서 주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북한은 北韓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규정한 관련법령을 근거로 북한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길 희망하고 제3국에서의 해결을 명시한 합작투자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이 모든 계약당사자간 투자분쟁을 제3국 중재기관에서 해결할 것을 일괄합의하여 南北投資保障協定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대한 代案으로서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는 남북한의 투자자에게 분쟁해결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 즉 북한의 중재기관에서의 해결과 제3국에서의 해결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북한기업간에 체결되는 합작투자계약에서 제3국의 중재기관 또는 국제중재기관에서의 투자분쟁 해결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합영법 제26조와 외국인투자법 제22조의 「제3국의 중재기관」에는 國際仲裁機關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남북한이 분명히 합의

해 들 필요가 있다.

제3국의 仲裁地로는 ① 스톡홀름, ② 비인, ③ 동경, ④ 홍콩, ⑤ 북경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스톡홀름은 과거 서방국가들이 대소련 투자와 관련하여 중재지로 선정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다. 스톡홀름과 비인은 지리적으로 남북한으로부터 너무 멀고,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비용 등에서 남북한 쌍방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중재지는 동경, 홍콩, 북경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나 仲裁判定部가 준거법을 결정할 경우 자국에게 불리할 가능성을 의식하여 동경이나 홍콩을 중재지로 선정하는 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北京이 남북한의 중재지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³⁷⁾

북한 진출기업은 제3국 중재시 비용과 관련하여 2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소규모 투자의 경우 제3국 중재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규모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투자액에 버금가는 仲裁費用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소규모 투자의 경우 제3국 중재를

37) 한편 1993. 8. 17 필자가 면담한 김형진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大韓商事仲裁院과 중국의 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間에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동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의 신뢰성과 변호사의 조력여부 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北京을 중재지로 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할 경우 남북한간에 상호 신뢰구축 및 협조분위기 조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小規模 對北投資로서 우리가 북한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 가능한 한 協議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중재에 회부할 경우 被申請人主義에 따라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3국 중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제3국이나 기타 國際商事仲裁에 회부하여 해결할 경우, 당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문제가 제기된다. 아직까지 북한은 1958년 「外國仲裁判定の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법적 보장방안으로서 북한에게 조속한 시일내 동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합작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합작투자계약 당사자는 法院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합작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은 물론 裁判管轄條項조차도 없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임의의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소송이 제기된 法院(受訴法院)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비추어 당해 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원에서 소송이 수리·심리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 일방이 受訴法院을 불신하거나 불편을 느낄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는 물론 타방당사자도 현실적으로 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投資契約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측 당사자가 북한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꺼릴 것이다. 반대로 북한측 당사자가 한국법원을 이용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대북투자시 체결되는 합작투자계약의 涉外的 性格을 고려할 때 仲裁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쟁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투자분쟁이 북한 국내법원에서의 해결 또는 북한에서의 중재에 의한 해결중 어느 경우에도 우리측 辯護士의 助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체계상 이러한 취지를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별도로 체결될 紛爭解決에 관한 合意書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韓國側 投資家(또는 企業)와 北韓當局間 紛爭

이러한 類型의 紛爭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쟁의 일방당사자가 북한내에서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합영기업·합작기업 또는 한국인 단독투자기업의 한국측 투자가이고, 타방당사자는 북한당국인 경우이다. 둘째는 북한내의 회사설립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측 투자가가 또는 기업이 북한당국과 직접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天然資源 또는 금강산개발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이다.³⁸⁾

38) 당분간 북한의 폐쇄성을 감안할 때 북한측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은 북한내 합영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이들은 모두 북한법인

남북한간에 이러한 유형의 投資紛爭이 발생할 경우에도 交渉이 제1차적인 해결방법이 된다. 교섭으로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별도의 분쟁해결방식에 합의하지 않는 한, 一般國際法上 國內的 救濟의 原則이 적용되게 된다. 북한도 일차적으로 자국내의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의한 투자분쟁 해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 불법행위가 아닌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한 투자침해의 경우에는 북한 현지의 救濟手段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투자가에게 원상회복은 차치하고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報償 또는 賠償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³⁹⁾

교섭으로 대북투자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차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우리측 투자가 또는 기업은 調停 또는 仲裁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북한당국과 우리기업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投資契約 當事者間 紛爭의 경우와 같이 중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북한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傘下 貿易仲裁委員會와 한국의 大韓商事仲裁院 등 관계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다)에게 개발권을 양허하고, 직접 한국기업에 대해 천연자원 또는 원목의 개발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둘째 유형의 분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9)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pp. 243~244 참조.

남북한의 상설적인 商事仲裁機關에서 중재에 의하여 타방정 부당국과 투자가간의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의사소통에는 별문제가 없으므로 분쟁해결상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선임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임시중재의 경우 中立仲裁人이 제3국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남북한의 계약당사자간에 제3국 중재인 선정에 관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북한의 합영법 제26조와 외국인투자법 제22조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제3국 중재기관에서도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大規模 合作프로젝트에 관해 북한과 양허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의 貿易仲裁機關에서 해결하도록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⁰⁾ 왜냐하면 남북한의 경우 상이한 법체계 때문에 분쟁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이 黨에 예속되어 있어 裁判의 獨立性和 公正한 判決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北韓法과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객관성이 있고 남북한

40)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투자분쟁을 제3국 중재 또는 기타 國際商事仲裁에 의해 해결할 경우에도 당해 중재의 實效性 確保가 문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에 아직까지 加入하지 않고 있는 바, 북한의 협약가입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법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協約 加入後 대북투자를 추진하고 투자분쟁에 따른 해결을 도모함이 法政策上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준거법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나, 그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의 경우 제3국 중재를 허용하는 규정이 南北投資保障協定에 명시되지 않으면, 북한당국으로부터 수용을 당하거나 달리 피해를 입은 한국인투자가 구제를 받는 방법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유념하여 반드시 제3국 중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 경우 ICSID협약의 관련규정이 분쟁해결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바,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이 협약을 원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中·日 投資保障協定 및 韓·中 投資保障協定の 관계규정이 시사하는 바 크다.⁴¹⁾

분쟁당사국인 북한이 主權免除를 포기하거나 또는 主權免除의 制限的 理論에 의거하여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판정될 경우 理論上 타방 분쟁당사국인 韓國의 國內法院 또는 제3국의 국내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방식의 분쟁해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41) 과거 중국은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에 한하여 臨時(ad hoc) 國際仲裁를 허용하였으나, 각기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스웨덴·독일·프랑스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은 追加議定書(additional protocol)에 대한 부속서한(side letter)을 첨부하여 ICSID협약 가입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호주와 일본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서 광범위한 분쟁해결방법의 이용가능성을 시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中·日 投資保障協定은 세계은행 총재를 중립적 지명권자로 하고, ICSID협약을 준거로 하여 설치되는 임시 중재판정부에 의한 투자분쟁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제5조 및 제12조,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11조 참조.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北韓法制下에서의 투자보호의 불확실성 및 민사소송절차상의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북한당국과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1) 국내적 구제를 거치지 않고 直接 제3국 중재 등 국제기관에서의 중재에 부탁하도록 하거나, (2) 투자자에게 분쟁해결방식 선택권을 주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과 체결하는 구체적인 讓許契約에서는 제3국 중재를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이유로 제3국 중재에 반대하여 (1)의 방안 채택이 어려울 경우, 그 대안으로서 한국측 투자자에게 북한에서의 國內的 救濟와 제3국 仲裁 또는 국제중재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國內的 救濟를 거친 후에도 이와 같은 중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2)의 방식이 당분간 보다 適實性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ICSID를 활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하여야 한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이 ICSID協約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이 협약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남북한간 특수관계를 이유로 이 협약의 남북간 적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 ICSID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한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사실상 ICSID의 仲裁를 활용할 수 있음을 북한에게 주지시킴으로써 (1)에 대한 대안을

수락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代案으로는 다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ICSID협약을 준거로 하여 중재규칙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특별중재기관을 창설하는 방안(國際投資紛爭解決本部擬制方案)이다. 이는 ICSID협약을 참고로 ICSID와 유사한 중재기관을 설치하여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⁴²⁾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중재인 선임방법, 중재절차, 준거법 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仲裁人 選任 節次의 결정과 관련, ICSID의 중재절차 또는 UNCITRAL중재규칙을 원용할 수도 있다.⁴³⁾

둘째, 1978년 9월 27일 ICSID이사회에서 승인된 附加便宜規則(Additional Facility Rules)에 따라 ICSID의 중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골자는 ① 분쟁당사국이나 ② 자국민이 분쟁당사자인 國家가 ICSID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ICSID에 관할권이 없는 투자분쟁이라 할지라도 이 규칙의 적용을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동 규칙 제 2조는 ICSID 사무국장이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調停이나 仲裁節次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그 하부조직 또는 기관이고 타방이 다른 국가의 국민

42)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예로는 中·日 投資保障協定 제11조, 中·濠洲 投資保障協定 附屬書 A 제5조, 中國과 벨기에·룩셈부르크 投資保障協定 議定書 제6조 3항 참조.

43)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투자보장협정 모델 A와 B의 공히 제10조, 中·佛 投資保障協定 附屬書 제4조.

인 경우이면서, 동시에 분쟁당사국이나 자국민이 분쟁당사자인 국가중 어느 한 국가가 ICSID협약의 당사국이면 이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 남북한중 한국이 ICSID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이러한 방안이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요컨대 대규모 합작프로젝트의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관에서의 중재를 모색하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大韓商事仲裁院과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 투자분위가 경색될 경우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이용한 政治的 妥結方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쟁해결과 관련, 우리측 변호사의 이용에 관해서 양허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南北韓 政府當局間 紛爭

투자분쟁은 南北韓 政府當局間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주로 남북투자보장협정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① 남북한중 일방이 투자보장협정상의 내국민대우조항에 반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남북한중 일방이 投資保障協定에서 타방측 투자에 대하여 특별히 합의한 보호 및 장려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 타방이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投資紛爭이 발

생하게 된다.⁴⁴⁾ 이러한 분쟁은 당연히 투자보장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게 된다.

본래 한국기업 등 우리측 투자가와 북한당국간 투자분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이 분쟁이 소위 「바텔의 擬制」에 입각하여 政府當局間 紛爭으로 轉化하여 남북투자보장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 의거하여 해결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와 같은 분쟁이라 하더라도 모든 투자분쟁이 남북투자보장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 협정에서 규정한 투자분쟁에 해당할 경우에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본래 남북한 정부당국간 분쟁이 아니었던 투자분쟁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분쟁을 가능한 한 많이 정부차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雨傘條項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을 정부간 차원에서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북투자의 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조심스럽게 대처함이 필요하다.

한편 투자분쟁 해결기구와 관련, 남북투자보장협정에서도 中·日 投資保障協定과 같이 合同委員會를 설치하여 직접교섭

44)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p. 190 참조; 남북투자보장협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이 규정된 경우, 남북한중 일방이 이 조항을 무시하고 제3국의 투자에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남북한 정부당국간에 이와 같은 투자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한간 특수관계에 비추어 북한이 우리측 투자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가능성은 적다.

에 의한 정부당국간 투자분쟁의 平和的 解決을 도모하고, 협정의 실시상황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교섭에 의하여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간 합의에 의거하여 國際仲裁裁判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3자에 의한 해결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特殊關係를 이유로 남북한간 국제법 적용은 물론 남북한 정부당국간 투자분쟁을 국제적 기관에서 국제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國際仲裁裁判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⁴⁵⁾

한편 당사국간 분쟁의 경우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분쟁의 해결, 즉 실제적인 권리·의무관계의 확정과 그 내용에 따른 구체적 실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強制執行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國有財産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소위 主權免除가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주권면제, 특히 집행의 면제를 포기한다는 점을 남북투자보장협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북한의 태도는 당분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45) 북한은 南北關係의 特殊性을 이유로 남북한간 분쟁의 해결에 국제법의 적용 및 국제기관에 의한 해결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기본합의서 제10조 분쟁해결조항중 「유엔헌장에 따라서」라는 구절의 삭제를 관철시켰는 바, 이는 短期的 觀點에서 볼 때 북한이 국제기관 등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의 합의체택에 대한 반대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먼저 北韓의 否定的인 國際法 認識을 지양하는 동시에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이 반드시 南北韓間 特殊關係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북한에게 인식·설득시킴으로써 國際法에 따른 분쟁해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第 V 章 結 論

1. 要 約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 자유經濟貿易地帶를 선포한 후,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월에 걸쳐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법제의 정비보다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채지불연기에 따른 최하위의 國際信用度 외에도 북한의 核問題 解決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방·개혁에 대한 기피 등의 자세는 여전히 대북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행하기에 앞서 투자위험을 줄이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경제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진출기업이 대북투자에 앞서 自救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북한진출기업은 투자형태, 적정 투자규모 책정 및 자금의 다변화, 진출지역 및 투자종목, 합작선, 판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經濟的 妥當性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 대북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대북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투자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經濟的 妥當性 외에도 法的 妥當性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에 앞서 북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 있어서 法的·制度的 裝置가 필수적이다. 즉 남북한 쌍방의 기업들이 상호 투자 등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문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합의는 구체적으로 契約이나 協定 등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구현된다. 대북투자도 이와 같은 문서에 의해 보호될 수 밖에 없다.

먼저 대북투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남북한의 企業間 合作投資契約을 통한 보호를 들 수 있다. 정부차원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대북투자는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북한당국 또는 북한기업과 체결할 계약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합작투자계약 체결방안이 투자보호방안으로서 갖는 일정한 역할 및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이 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북투자 보호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동 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특수성, 역사적 상황, 해외동포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나 독일 등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分斷國들의 선례는 남북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지 못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관계에 비추어 투자보장협정 및 투자보증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南北投資保障協定 체결시 양자를 통합하거나 또는 후자의 핵심적 내용을 전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대북투자에 따른 진출기업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북 간 물자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政府次元의 法制度的 支援이 요구된다. 그러한 지원방안으로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북투자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企業次元의 투자손실을 補填하는 方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대북투자위험은 북한진출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인 바, 정부는 북한측 계약불이행에 의해 야기된 손실보전대책 외에도 1) 위험소지가 큰 합작투자에 대한 사전조정, 2) 물적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對北 陸路시스템의 확보, 3) 구체성이나 투명도가 높은 계약법 제정촉구와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작표준계약서의 지침 설정 등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남북한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대북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의 특성 또는 투자분쟁의 유형에 따른 해결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별 처리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며, 國際慣行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대북투자관련 분쟁발생시 합작투자계약 당사자간의 분

쟁, 우리측 투자가와 북한당국과의 분쟁 및 정부당국간 분쟁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남북 투자보장협정에 명문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投資紛爭解決指針을 제정하여 기업 등 우리측 투자자들의 투자 분쟁해결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등 투자자들은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투자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2. 政府와 企業의 考慮事項

여기서는 대북투자시 정부와 기업이 각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對北投資와 관련, 政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업의 대북투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기업들의 대북거래 창구가 북한의 상사나 기업소가 될 것이나 분권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상 사실상의 창구는 北韓의 中央政府가 될 것이다. 협상의 파트너가 우리의 민간기업과 북한의 정부가 될 경우, 多元化된 窓口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一元化된 窓口를 가지고 있는 북한간에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북협상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우에는 法보다는 黨의 方針이 우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법 자체의 실행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투자협력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현실적으로 법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투자 보호의 차원에

서 북한당국에 대해 외자유치관련 법령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당국이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적용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령의 具體性과 透明度를 제고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업들의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동포의 대중국투자시 優待措置를 명시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에 비해 우리기업을 우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법령의 개정을 북한측에 요구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特例法을 제정,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에 적용하도록 북한당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장기적인 投資戰略下에서 초기 대북진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과소평가하고 불완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불완전한 계약은 북한과의 투자협력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증대 및 북한 개방의 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標準合作投資契約書 締結指針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현단계에서는 합영이나 단독투자방식에 의한 북한진

1) 裴鍾烈, “北韓의 合營法 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pp. 37~40;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 方向,” pp. 34~37 참조.

출이 북한이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 구상과 관련하여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은 개발잠재력은 크나, 관련법령의 미비, 교통·통신시설 등 下部構造 부족으로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일·북한 수교시 배상자금과 관련된 일본자본의 진출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개발은 북한·중국·소련간의 의견조정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대북투자는 合作方式에 의한 북한으로의 진출이라고 판단된다. 합작방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賃加工方式을 포함하므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기존의 교역구조를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합작에 의한 임가공방식의 경우, ① 설비의 낙후, ② 물적유통시스템의 미비, ③ 제품판로의 확보, ④ 경영참여 제한, ⑤ 계약불이행에 대한 대책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북한의 개방의도와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북투자의 초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정부가 채택해야 할 原則은 ① 지원방식에 있어서 가능한 한 政治的 判斷이 배제되어야 하고, ② 대북투자지원이나 손실보전의 정도와 규모는 북한의 개방과 투자조건 개선과 연계되어야 하

며, ③ 지원방식이나 손실보전의 정도가 매력적이어서 우리나라 기업들간에 過當競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부는 北韓進出戰略으로서 다음과 같은 段階的 投資戰略을 수립, 기업들의 투자를 지도·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북한의 개방추세에 맞추어 직교역 → 임가공형의 합작 → 소규모의 합영 → 소규모 단독투자 → 인프라건설과 병행된 대규모 합영 → 대규모 단독투자 등 순차적으로 투자협력을 확대하며, 이에 맞추어 정부가 對北投資支援이나 損失保全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진출기업의 경우, 당분간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그대로 신뢰하고 대북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북한의 법제도와 현실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대북투자를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서는 대북투자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앞으로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심도있는 사전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勞賃이 저렴하다는 점을 의식하여 성급히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경영상 많은 애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은 중국보다 政府의 統制가 심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한 투자비용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북한에서는 경제논리보다도 金日成 主體思想의 論理가 우선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비용보다도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과정속에 숨어 있는 비용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다. 북한의 외채난도 심각한 상황이므로 決濟方式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수준이 현재 간접 교역에서 직교역의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段階的인 北韓進出戰略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대북투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즉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단순임가공에서 設備提供型 賃加工으로, 그리고 합작을 통한 임가공으로 점차 교역구조 개선과 투자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합영과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획득 또는 본격적인 북한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示範事業 내지 小規模 投資를 위주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에서의 자회사 운영을 통한 투자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종의 노우하우(know-how)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상대적으로 법의 구체성이나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북투자시 契約締結方式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명목상 互惠平等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恣意的 適用의 여지가 있고, 북한 내부정세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은 물론 관련 법령도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한다는 자세로 北韓進出計劃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북투자 초기에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체결하는 계약유

형이 앞으로 본격화될 대북투자의 準據契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의 합작·합영에 있어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國內로 搬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을 미국시장 등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美國의 對敵國通商規制法을 포함하여 북한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적용될 경우 대북투자의 결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됨으로써 결국 남북합작투자전략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美國法 體系下에서는 북한상품의 대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남북합작상품의 原產地가 북한으로 판명될 경우 差別關稅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關係改善에 따라 해결될 사안이지만, 그 전에 남북합작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미국과의 불필요한 通商摩擦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²⁾ 이것은 기업의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2) 諸成鎬, “通商法에 비추어 본 南北經濟交流,” pp. 1~35 참조.

參 考 文 獻

1. 單行本

姜二秀. 「駐韓 外國商社의 法的 地位」. 서울: 大韓商事仲裁院, 1981.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中國投資實務」. 서울: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0.

_____ . 「對中國 投資戰略과 實務」. 서울: 國際民間經濟協議會, 1991.

金贊鎭. 「外資導入論」. 서울: 日潮閣, 1976.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 서울: 大韓貿易振興公社, 1993.

獨逸經濟社會統合 研究를 위한 短期調查團. 「獨逸經濟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文興鎬.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民族統一研究院.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 1991~1992」.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서울: 法制處, 1992.

北韓研究所. 「北韓總覽(1945~1982)」. 서울: 北韓研究所, 1983.

_____ . 「北韓의 民事訴訟法 概要」. 서울: 北韓研究所, 1992.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현대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三星經濟研究所, 「1992년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李南基. 「國際契約法」. 서울: 學研社, 1987.
- 李泰熙. 「國際契約法」. 서울: 博英社, 1985.
- 李漢基. 「新稿 國際法講義」. 서울: 博英社, 1990.
- 張孝相. 「國際經濟法」. 서울: 博英社, 1986.
- _____. 「中·蘇·東歐 進出企業의 國際契約」.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88.
- 全洪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制」.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3.
-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2-12-59 서울: 統一院, 1992.
-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의 諸危險과 事例研究」.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82.
- _____. 「輸出保險制度 解說」.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0.
- _____. 「日本의 貿易保險制度 解說」.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88.

-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
制度」.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 _____ . 「北韓經濟와 經濟協力方向」.
서울: 韓國輸出入銀行, 1991.
- 韓國外換銀行. 「北韓의 合作投資 및 外國換管理制度」. 서울:
韓國外換銀行, 1991.
- 金日成·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 東京: チュチ
エ思想國際研究所, 1985.
- 佐藤和男. 「國際投資の法的保護」.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68.
- 櫻井雅夫. 「國際投資法」. 東京: 有信堂, 1988.
- Carreau, Dominique. *Le Fonds Monétaire International*.
Paris: A. Colin, 1970.
- Carreau, D., P. Juillard and T. Flory. *Droit International
Economique*. Paris: L. G. D. J., 1980.
-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
ist Intelligence Unit, 1992.
- Frowein, Jochen Abr., *Das de-facto Regime im Völkerrec-
ht*. Köln: Carl Heymanns Verlag, 1968.
- Jackson, J. H. and W. J. Davey.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 Jessup, P. C., *A Modern Law of Nation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2.
- Kronfol, Zouhair A.,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 Study of International Law*. Leiden: Sijthoff, 1972.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nnual Report 1992*. Washington D. C.: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1993.
- Nwogugu, E. I., *The Legal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Manchester Univ. Press, 1967.
- O'Connell, D. P., *International Law*, vol. 2 London: Stevens and Sons, 1970.
- Shihata, Ibrahim F. I., *MIGA and Foreign Investment* Dordrecht- Boston-Lancast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 Schwarzenberger, Georg. *Foreign Investments and International Law*. London: Stevens and Sons, 1969.
- _____. *International Law and Order*. London: Stevens and Sons, 1971.
- Smith, David N. and Louis T. Wells. *Negotiating Third-World Mineral Agreements: Promises as Prologue*. Massachusetts: Ballinger Publishing Co., 1975.

United Nations Center on Transnational Corpor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London: Graham and Trotman, 1988.

White, Gillian.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London: Stevens and Sons, 1961.

Wortley, B. A., *Expropri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9.

2. 論 文

具忠書. “國際投資紛爭과 ICSID仲裁.” 「國際法學會論叢」, 제 34권 1호 (1989).

김영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의 규제내용과 특징.” 「사회과학」, 제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5.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投資關聯 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 (外交安保研究院, 1993. 4. 28).

김재교. “새로운 자재공급체계하에서 계약제도의 특성과 그 역할.” 「공화국법은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논문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4.

金璨奎. “海外投資保障의 法的 問題.” 「法曹」, 제40권 8호 (1991. 8).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제818호 (1992. 10. 22).

文俊朝. 「對中國 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法學博士學位論文, 1991).

朴鈞炘. “金剛山·雪嶽山 觀光團地 南北韓 共同開發을 위한 公法的 諸問題.” 「유엔加入과 統一의 公法問題」, 서울: 韓國公法學會, 1991.

裴載湜. “個人과 國際法.” 「現代國際法論」, 서울: 博英社, 1980.

裴鍾烈. “北韓 外資法令의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 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3호 (1993. 3).

_____. “北韓의 合營法施行細則 改正과 우리의 對應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5호 (1993. 5).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統一韓國」, 통권 제 12호 (1984. 12).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협력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서울: 건국대학교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1993.

李東馥. “남북대화: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12. 28.

이순우. “南北經濟交流와 紛爭解決.” 「남북교류협력의 실천과

- 제 연구」, 서울: 統一院, 1992.
- 李漢基. “外國人財産의 國有化.” 「서울大學校 法學」, 제10권 제2호 (1968).
- 張孝相. “國際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34권 제1호 (1989).
- _____. “國際讓許契約의 模型에 관한 研究: 海外資源의 開發·收入과 관련하여.” 「國際法學會論叢」, 제24권 제1호 (1979).
- _____. “法的 妥當性의 측면에서 본 남북한 經濟交流와 協力 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제1호 (1990).
- 全洪澤·曹東昊. “南北韓 投資協力の 政策課題.” 「南北韓 投資 協力の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2.
- 諸成鎬. “南北 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 _____. “南北投資保障協定 締結方向.” 「南北交流協力の 實踐 課題研究」, 서울: 統一院, 1992.
- _____.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分析 및 評價.” 「統一 研究論叢」, 제2권 제1호 (1993).
- _____. “通商法에 비추어 본 南北經濟交流.” 國際去來法學會 發表文 (1993. 4. 12).
- 統一院.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評價.” 「統一速報」, 제92-11호 (1992. 12. 28).

韓國輸出入銀行. “미국 海外民間投資公社(OPIC)의 主要支援 制度.” 「海外投資情報」, 제637호 (1990. 4. 14).

_____. “1993年度 南北協力基金 業務計劃.” 「海外 投資情報」, 제775호 (1993. 1. 9).

Adede, A. O., “A Profile of Trends in the State Contracts for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between African Countries and Foreign Companie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vol. 12 (1980).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an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Model Bilateral Agreements on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3 (March 1984).

_____. “China-France : Agreement Concerning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24 (May 1985).

Berger, Klaus Peter. “The New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Globalizing the Investment Insurance Approach Toward Development.”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vol. 15 (1988).

- Buzescu, Petru. "Joint-Ventures in Eastern Europe."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2 (1984).
- Bowett, D. W., "Contemporary Development in Legal Techniques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cueil des Cours*, Tome 180 (1983-II).
- Golsong, Heribert. "China-Japan: Agreement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 XXVIII (May 1988).
- Jaslow, Craig A.,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China."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1 (1983).
- Larson, Arthur. "Recipients' Rights Under 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de." *Journal of Public Laws*, vol. IX (1960).
- Miller, W. O., "Protection of U. S. Investment Abroad: The Investment Guarantee Program of the U. S. Government."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vol. 32 (1964).
- Rubin, S., "The Investment Guarant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e 56th Annual Meeting (1962).

Shihata, Ibrahim F. I., "Factors Influencing the Flow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levance of 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International Lawyer*, vol. 21 (1987).

Trooboff, P. D. and C. A. Goldstein,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Experience to Date in the U. S. Courts."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1977).

Vandavelde, Kenneth J., "The Bilateral Treat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1988).

Voss, Jurgen,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Status, Mandate, Concept, Features, Implication."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 21 (1987).

Yokota, Yozo, "Non-political Character of the World Bank."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vol. 20 (1976).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方案과 南北韓關係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對北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3-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